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통일연구원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스)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 쇄 처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ISBN 978-89-8479-778-9 93340
가 격 ₩11,000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서문	1
제1부 시장화가 식량권과 경제적 계층분화에 미친 영향	5
1.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 식량권 사이의 상관성 연구 김양희 (동국대학교)	7
2. 북한의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55
3.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93
제2부 시장화가 여성 및 아동인권, 인권법제, 인권의식에 미친 영향	125
4. 시장화에 따른 북한 인권법제의 변화 민경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27
5.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김영규 (백석대학교)	165
6.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식(권리의식)의 재발견 김신 (배재대학교)	2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1

〈표 1-1〉 2000년대 전후 북한 주민의 계층구조 변화와 식량접근성 수준	32
〈표 1-2〉 2000년대 전후 북한 주민의 정치·경제적 계층구성	33
〈표 1-3〉 북한 주민의 건강지표 변화	39
〈표 2-1〉 2000년대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 추이	66
〈표 2-2〉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70
〈표 2-3〉 북한 주민의 식량 구득 방식	71
〈표 3-1〉 회령시장권내 구역별 인민반 수 추정	100
〈표 3-2〉 규모별 인민반 구성수 및 세대수	100
〈표 3-3〉 계층별 소비수준	105
〈표 3-4〉 각 계층별 세대수 및 비율	108
〈표 3-5〉 각 계층별 한 가구당 하루 쌀 소비량 추정	109
〈표 4-1〉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145
〈표 4-2〉 유엔 B규약과 관련된 북한 국내법률	150
〈표 4-3〉 유엔 A규약과 관련된 북한 국내법률	154
〈그림 1-1〉 북한 곡물 최소 소비량과 부족량(1995~2013년)	37
〈그림 2-1〉 국가의 공식부문과 민간의 비공식부문과의 관계	60

서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가 ‘책임성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무대의 중요 아젠더로 등장한 한해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한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돼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일관된 북한인권의 의제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요청받게 되었다. 과거 단발적인 정보와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조사메커니즘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사와 책임성을 규명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해 졌다. 한편으로 변화하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환경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실 북한사회는 1990년대 이후 20여 년 넘는 기간 많은 변화를 해 왔으며, 이런 변화는 당연히 인권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의 구도를 읽는 속에서 북한인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진작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는 변화하는 북한사회와 인권환경 사이의 영향관계를 찾으려는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인권정책연구』는 1990년대 이후 20여 년 넘게 진행된 시장화가 북한의 인권환경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시장화가 법·제도, 계층구조 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러한 변화가 자유권이나 사회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사실 시장화는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여성·아동·노인 등의 취약계층 인권 등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권리의식, 정치적 시민의식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시장화가 식량권과 경제적 계층분화에 미친 영향을, 제2부에서는 시장화가 여성 및 아동인권, 인권법제, 인권의식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총서의 기획, 중간·최종 보고 및 심사과정에는 원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다. 중간 및 최종 보고에서 논문 발전을 위해 귀중한 토론을 해 주신 오경섭, 문경연, 현인에 박사님과 한명섭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이금순 소장님, 한동호, 도경옥 박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기획 이후부터 책 발간까지 전반의 진행 과정을 챙겨준 김인숙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열정적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며 좋은 글을 써 주신 6명의 연구자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노력이 북한인권 개선에 작지만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2014년 12월

편저자대표 홍 민

제1부 시장화가 식량권과 경제적 계층분화에 미친 영향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 식량권 사이의 상관성 연구

김양희 (동국대학교)

I.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동향 및 한계

II. 식량권의 국제적 논의와 북한에서의 함의

1. 식량권의 국제적 논의
2. 북한에서 식량권의 의미

III.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과 주민 계층구조의 변화

1.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
2. 북한 주민 계층구조의 변화

IV. 북한 시장과 주민 식량권의 상관성 평가

1. 북한 시장과 주민 식량권
2. 북한 주민인식 변화와 식량권 가치의 인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문제제기

고난의 행군기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식량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식량문제를 정치적 과제로 설정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국가 주도의 식량통제정책을 실시한 북한에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식량문제는 분배의 차별로 해결했다. 이에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신앙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언론·표현, 정보 취득 및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국으로 지목되곤 하지만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부각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권의 통제가 주요 인권침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식량권(right to food)’은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공표됐고 1966년 제안되어 1976년 발효된 유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1조 1, 2항에서 권리의 보장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연구도 시작됐다.¹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식량권은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²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1. 김종덕 외, “식량권 실현과제와 사회복지,” 『비판사회정책』, 제24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 p. 68.

2. 국가인권위원회, <http://edu.humanrights.go.kr/03_sub/body02.jsp?m_link_url=03_sub/body02.jsp&m_id1=96&m_id2=444&flag=VIEW&SEQ_ID=590556>.

1
2
3
4
5
6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식량의 접근성은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북한의 인권지표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식량권의 제한을 논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식량권 제한 여부와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³들은 그러한 논의조차 없이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등 배급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식량접근성⁴이 불평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의 인권보고서에서도 “199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영양부족과 굶주림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아사자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젤 스미스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 및 보건지표 등을 살펴보면 북한의 식량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있어 국제기구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⁶고 주장하는 등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의 식량권 침해 수준이 심각

3. 김석우, “북한 주민의 식량권 확보 위해 강제수용소 폐쇄해야,” 『신아세아』, 제20권 2호 (신아시아연구소, 2013); 윤우, “북한 인권침해의 반인도 반민족 범죄행위론,” 『통일과 법률』, 10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등 참조.

4.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가 제시한 적절한 식량권의 기준에는 적절성(adequacy), 접근성(accessi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을 포함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근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식량 가용량의 감소(Food Availability Decline: FAD)만이 아니라 식량권 부여의 감소(Food Entitlement Decline: FED) 내지 식량획득권(Food Entitlement)의 배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식량 가용성(Food Availability)은 개인의 식량권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태훈, “식량접근권, 계층 및 성분에 따른 차별,” 『UPR, 북한 인권운동의 새로운 교두보』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북한 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자료집, 2009.6.29), p. 25; 이에 이 논문에서도 식량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5. 통일연구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15.

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북한의 식량수급실태는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영양실태 등을 살펴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은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생존에 도움을 줬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에서 시장이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시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주민들의 영양실태가 개선된데 착안, 북한 시장과 주민 식량권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시장과 주민 식량권의 상관성 파악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접근성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시장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식량접근성과 결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북한의 시장과 주민 식량권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 연구동향 및 한계

식량권이 국제사회에 처음 제기된 것은 1948년으로 관련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다. 학계에서도 식량권 연구 역사가 길지 않은 가운데 관련 선행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식량권의 역사, 현황, 전망 등을 연구하거나 세계적인 식량체제 속에서 식량안보를 논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북한의 식량권과 관련한 연구는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알려지면서 연구가 시작됐으나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국제

⁶ 헤이젤 스미스, “북한의 식량권 침해 여부와 반인도범죄 규명,”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인권증진방안』 (KINU 샐시오 인권포럼 자료집, 2013.8.27), pp. 261~278.

1
2
3
4
5
6

사회에서 논의되는 식량권의 의미를 북한에 접목하면서 식량권 문제의 해소방안을 논하기도 했으나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인식하는 식량권의 의미 등은 배제한 채 논의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오승진의 연구⁷는 식량권과 국제사회의 의무, 국제식량 원조체제, 식량원조에서의 정치적인 고려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식량권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인도적인 식량지원과 투명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발생한 기근을 중심으로 인권으로서의 식량권에 관해 분석하고, 북한 식량지원의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오승진의 연구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미치는 역할 등은 논의했으나 실제 주민들의 식량접근 경로 등을 탐색하지 못해 북한에서 말하는 식량권과 실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이 식량획득 장소로 시장을 활용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권 분석을 위해 시장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의 상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강재희⁸는 교양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치원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해 지켜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통해 북한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유치원 교양원이었던 북한 이탈주민 3인을 대상으로 1인당 3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한 연구로 북한 당국이 보장하는 유치원 유아들의 실질적인 식량권을 분석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3인의 교양원들을 대

7. 오승진, “식량권(Right to Food)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1권 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참조.

8. 강재희,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아동과 권리』, 14권 4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치원 유아라는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해 배급제가 불안정하게 작동하는 시기 주민 전반의 실질적인 식량접근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김석우⁹는 북한 당국이 정권에 의한 식량배분의 의도적 통제에 의해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히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 주민식량권 측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학문적인 기여도가 낮은 것이 한계로 꼽힌다.

이 외에도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에서 주민들의 식량권에 대한 논의¹⁰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백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식량권을 비롯, 북한 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해 연간, 격 연간으로 발간하며 최신의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사회전반의 인권상황보다는 수용소 수감자, 취약계층 등 대부분 특정 계층의 인권침해 실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북한 주민 전반의 인권 수준을 추정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9. 김석우, “북한 주민의 식량권 확보 위해 강제수용소 폐쇄해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신아시아』, 20권 2호 (신아시아 연구소, 2013).

10. 이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6~2014』 (서울: 통일연구원, 1996~2014); 대한변호사협회 편, 『2006~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6~2014);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편, 『2013~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3~2014); 좋은벗들 편, 『2006~2007 북한사회변화와 인권』 (서울: 정토출판, 2008), 좋은벗들 편, 『북한 식량난과 북한 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4) 등이 있다.

1
2
3
4
5
6

상관성요인 등을 검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김수암 외¹¹는 북한사회에 만연한 부패행위가 식량권을 비롯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부패는 다층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해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 연구는 북한에서 부패로 인해 주민들의 식량권이 제한 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최근 변화되는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의 식량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보고 분석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인권에 대한 여러 구성요소 중 하나로 식량권을 다룬 것이라 식량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고 북한 주민 식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부패만을 다룬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밖에 김근식¹²은 서구 인권개념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와 북한의 특수성에 입각한 ‘북한식’, ‘우리식’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지만 북한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근거인 식량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회권 측면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근식의 연구는 북한의 인권개념이 서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식량권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을 논할 때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함을 논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식량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논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 해 북한의 시장과 주민들의 식량권 사이의 상관성을 분

11. 김수암 외, 『북한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12. 김근식,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 방향 - 포괄적, 실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동북아 연구』, 18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석해보고자 한다. 식량권의 국제적 논의와 북한에서의 실질적인 식량 권에 대한 의미 등을 검토하고 북한 사회변화로 인한 주민계층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식량권 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의 시장에 식량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어떻게 시장이 확대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장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미치는 효과와 주민들의 식량권이 북한의 시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시장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주민들의 식량권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장 서론에서 문제제기와 기존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고 2장에서 식량권의 국제적 논의와 북한에서 식량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3장에서는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과 주민 계층구조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식량 생산지에 대한 접근성보다 식량유통 접근성이 더 중요한 것에 착안, 북한 주민의 식량권 분석을 위해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민들의 시장행위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 계층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4장에서는 ‘북한 시장과 주민 식량권의 상관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실제 주민들의 식량권에 어떤 영향을 줬고 또 주민들의 식량권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북한의 시장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주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줬으며 이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식량권 가치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1
2
3
4
5
6

II. 식량권의 국제적 논의와 북한에서의 함의

1. 식량권의 국제적 논의

식량권이 국제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1948년 12월 10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으로, 제25조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의식주와 의료, 사회복지의 보장으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1조 사회권의 기본규정, 일반규정, 기아로부터의 자유이다. 1항은 행복한 생활을 확보할 권리로서 사회권의 기본규정으로의 의미와 사회보장 일반규정의 내용이고 2항 기아로부터의 자유는 생존 자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6조)’를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실현시켜야 하고 개인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결국 식량권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식량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¹³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¹⁴고 밝힌다.

¹³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편, 『2013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3), p. 208.

¹⁴ 인권운동사랑방, “세계인권선언 전문,”
<www.sarangbang.or.kr/kr/info/UN/un1_UDHR.html>.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는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고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권리의 국제적 보장을 정한 국제조약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식량권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그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2조는 “국가는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영양 원리의 지식 보급’, ‘농경 시스템의 개발’, ‘제조, 보존 및 식품의 유통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천연 자원의 활용’, ‘세계 식량 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¹⁵ 이는 식량에 대해 단순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개인의 식량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주민들에게 적절한 식량을 보장해주도록 명시한 것이다.

1999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는 일반논평 12호에서 “국제사회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존중을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특히 빈곤으로 인해 잉여 가능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결여해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대해 발표했다.¹⁶

¹⁵-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f 16 December 1966 entry into force 3 January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

¹⁶- FAO, The Right to Adequate Food,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1
2
3
4
5
6

또한 2000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4호에서 “건강권은 다른 인권과 접해 연관되어 있는 권리로 자신 및 가족 모두가 음식,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라며 “식량에 대한 권리는 주거, 업무, 교육, 인간의 존엄성, 생명, 차별, 평등, 고문, 개인 정보 보호 등과 함께 건강에 대한 권리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라고 설명했다.¹⁷

이후 이들을 근거로 2004년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가 식량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식량권이 국제적인 화두로 등장¹⁸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식량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적인 규약이나 선언들이 있었다.¹⁹

이런 가운데 대규모의 아사자와 식량난민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기근의 원인은 식량 총공급량의 감소(Food Availability Decline: FAD)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량권 부여의 감소(Food Entitlement Decline: FED)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빈곤과 기근에 관한 연구에서 ‘인타이틀먼트(entitlement) 접근법’을 발표했다. 센은 기근의 원인이 식량 공급량의 저하보다 식량접근의 상실과 박탈에 있으며 개인들의 식량 획득 능력은 이들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의 크기에 따라 다

Human Rights, Geneva, 2010, pp. 2~3.

¹⁷-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 of the Covenant), August 11, 2000, p. 3.

¹⁸-Chris Downes, “Must the Losers of Free Trade Go Hungry? Reconciling WTO Obligations and the Right to Food,”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7 (2007), p. 624.

¹⁹-Marsha A. Echols, “Paths To Local Food Security: A Right To Food, A Commitment To Trad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0 (2007), pp. 1116~1117 참조.

르다고 주장했다. 개인들의 식량접근지위는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힘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이다.²⁰ 센에 따르면 기근은 자연재해보다 민주주의의 결여 등 정치적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식량접근의 붕괴에서 발생하며 이는 곧 권리박탈을 의미한다.²¹ 따라서 독재정권과 언론탄압이 자행되어 온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기근이 반복됐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는 조건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²²는 설명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식량빈곤으로 인한 기아나 배고픔, 식량 미보장 문제는 더 이상 식량의 생산 및 공급 즉, 식량의 유용성(food availability)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food accessibility)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²³ 빈곤계층의 식량 문제가 좀 더 광범위하게 식량에 대한 접근성, 식량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박탈과 같은 이슈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인 수준을 넘어 가구, 지역, 국가수준에서의 식량 공급에 대한 안정성과 접근성을 포괄하는 식량보장(food security)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²⁴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충분하고 적절한 식품을 얻을 수 있는 소득,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타 자원들, 교역, 시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²⁵ 특히 식량에 대한 접근성은 채집, 생산, 저장, 시장에서의 구입 또는 친척, 이웃, 정부 등으로부터의 양도를 통하여 식량을 얻는 가구의 능력을

20-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pp. 45~51.

21- *Ibid.*, p. 33.

22- *Ibid.*, pp. 142~143.

23- 김기랑 외, “한국 식품 미보장의 현황 및 특성,” 『보건사회연구』, 29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p. 269.

24- 김기랑 외, “식품보장의 개념과 측정,” 『예방의학회지』, 41권 6호 (예방의학회, 2008), p. 387.

25- 김기랑 외, “한국 식품 미보장의 현황 및 특성,” p. 269.

1
2
3
4
5
6

의미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교역이 증가할 때 높아진다. 이에 식량에 대한 접근성은 시장에서 식량의 유용성, 가격, 노동시장, 생산 투자, 신용 등과 같은 시장 구조와 정책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²⁶

2. 북한에서 식량권의 의미

국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필요한 식량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지속가능하고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각국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양이 충분하고, 영양이 알맞으며 안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²⁷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모든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25조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²⁸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 있다”²⁹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주민들의 식량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배급제가 주민들의 식량지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배급제에 따르면 북한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26. 김기량 외, “식품보장의 개념과 측정,” p. 387.

27. FAO, *The Right to Adequate Food*, (Geneva: OHCHR, 2010), pp. 2~3.

28. 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p. 19.

29. 주정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pp. 195~196.

가장이 가족의 배급도 함께 받는데 영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임산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연로연금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 포함) 등이 가정의 직장에서 가정의 배급량에 함께 포함되어 량표를 제공받는다. 또한 요양소 수용, 무의무탁 등 장기요양의 거택보호자의 경우 지역 인민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기관으로 량표가 제공되며 장단기 실업자 및 은퇴한 근로자 등은 연로연금 배급체계에 의해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량표를 받는다. 병원 환자의 경우 환자의 직장에서 증빙 이후 량표를 받고 정신지체 장애인시설 수용자 및 교화소 수용자 등도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관리감독 하에 기관으로 량표가 제공된다. 이들의 배급 역시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인민위원회의 량정국 하에서 관리되며 도인민위원회 량정국에서 시, 군, 구역 량정부, 량정사업소를 거쳐 식량배급(공급소)에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또한 농민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배급을 받는 도시노동자와 달리 1년에 한 번씩 결산분배를 받지만 전 국민이 국가의 식량공급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배급에 있어 국가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 공급품의 질과 양, 공급 빈도 등이 차등화 됐다. 공급품에 대한 ‘차등적 배급제’가 적용되어 1990년대 중반 중앙배급제도가 붕괴되기 전 직급에 따른 배급기준을 명백하게 규정, 식료품은 공급의 빈도에 따라 매일 공급대상자, 1주 공급 대상자, 2주 공급대상자, 인민반 공급대상자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등된 제품과 공급량을 제공했다.³⁰

또한 식량 배급 순위에 있어서도 1순위의 당중앙기관, 각급 당위원회, 평양중심구역(북한 인구 2,050만 명 추산 시 4%인 100만 명), 2순

³⁰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필요와 빈곤의 이중성』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2), p. 64.

1
2
3
4
5
6

위의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기타 군사인원(인구의 6%인 150만 명), 3순위의 군수공장, 특급기업소 종업원과 가족(인구의 20%인 400만 명), 4순위의 일반 기업소와 교원, 의사, 서비스직 노동자(인구의 30%인 600만 명), 그밖에 배급대상이 아닌 농민(인구의 40%인 800만 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³¹ 때문에 배급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도 배급의 순위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좌우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은 4순위의 사람들로 이들의 식량권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북한은 계급과 성분, 지위에 따라 식량분배의 양극화가 국가차원에서 구조화되어 있다.

실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은 평양시 등 극히 일부 지역이나 기업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 정권기관, 검찰소, 재판소, 보위부, 사회안전부, 무력부는 규정대로는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배급이 이루어졌다. 배급은 어떤 경우에는 식량의 전량을 강냉이쌀로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두 입쌀로 보급하기도 하는 등 일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기관 별로 공급 상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³² 그러니까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식량접근성이 높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충성도가 높은 이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면서 체제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7·1조치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혜택인 식량의 무상공급과 저가공급정책을 포기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도 다른 양상을 나타

31. 좋은벗들 편,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8), p. 19.

32. 이승훈 외, 『북한의 사회경제적변화-비공식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 101.

내고 있다.

북한 당국은 7·1조치 이후 “누구든지 자기가 번 돈으로 쌀을 제 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게 된다”며 “지금까지 적용해 온 낮은 가격에 의한 식량공급제는 1946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지난시기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생활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밖에 안되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³³ 이로 인해 식량을 직접 국정가격으로 구매해야 하고 이마저도 모자라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7·1조치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의 지위는 배급제에서 식량의 구매력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도시 노동자 등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은 그들의 소득, 식량가격, 비식량 필수품 소비에 달려있으며 식량을 획득하는 능력은 취업과 임금, 다른 재화의 생산과 그 가격 같은 경제적 상황에 달려 있기도 하다.³⁴

결국 7·1조치 이후 시장이 합법화 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전량을 책임지는 것에서 개개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주민들에게 부여하던 식량접근성의 지위도 개개인의 구매력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³³ 한국개발연구원 편,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 있게 앞당기자,” 『KDI북한경제리뷰』,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3), p. 43.

³⁴ 아마티아 센, 김원기 옮김,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갈라파고스, 2013), p. 250.

³⁵ 북한 당국의 정책 중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통제, 토지소유권 제도 등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접근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임금만으로 쌀값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저임금상태는 주민들의 식량권을 제한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들의 식량권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구매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과 주민 계층구조의 변화

1.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서 식량 생산지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식량유통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³⁶ 이는 특정지역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좌우하는 것은 그 지역의 곡물 생산능력보다 오히려 시장에의 접근 기회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³⁷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에 북한 주민의 식량권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스스로 확보해야했고 이를 위해 사냥이나 낚시, 자가생산 등에 주력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50% 이상이 소토지³⁸에 의존하여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³⁹고 주장하기도 한다.

배급제의 불안정으로 공식·비공식 시장, 자체생산, 선물시스템, 물물

36.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해산은 중국산 쌀이 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에 황해도보다 쌀이 더 많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서 식량 생산지에 대한 접근성보다 식량 유통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78.

37. 이와 관련, 헤이젤 스미스는 황해북도와 황해남도가 북한에서 곡물생산능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은 외국인과의 접촉도 용이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헤이젤 스미스, “북한의 시장화, 불균등, 지역,” 『북한경제리뷰』,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9) 참조.

38. 북한에서 농경지는 크게 2개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중국의 인민공사에 해당하는 집단농장인 협동농장이 있으며, 또 하나는 농민들 집 앞에 당국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30평 정도의 개인텃밭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불법으로 주민들이 평지와 산간지대 사이에 밭을 일궈는데 그것을 ‘꽤기밭’ 또는 ‘소토지’라고 한다. 정은이,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방, 그리고 국제협력,” 『KDI북한경제리뷰』, 14권 10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p. 70.

39. 위의 글, p. 70.

교환 등은 점차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 외에 농장이나 텃밭 등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시장, 야생식량채집, 친척의 지원, 물물교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량에 접근한다. 특히 친척의 지원, 물물교환 같은 비공식 메커니즘은 배급제 의존가계의 중요한 식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⁴⁰ 2000년대 후반 식량의 총공급량(생산량+수입량)은 고난의 행군기와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보다 북한의 식량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식량조달 노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늘기 시작한 소토지는 식량통제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주민들의 식량조달 원천으로써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⁴¹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량은 사적생산물, 공식부문에서 절취·유출된 상품, 중국 등 제3국에서 유입된 상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⁴² 사적 생산물은 주로 주민들의 텃밭이나 폐기밭, 부업밭, 소토지 등에서 생산된 곡물이나 채소 등과 이의 부산물로 기른 돼지, 닭 등 일부 축산물과 가금 등이다. 북한의 소토지나 텃밭에서 재배한 수확물은 자가소비 외에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경작되었으며 시간이 경

40. FAO한국협회 편, 『FAO/WFP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 (서울: FAO한국협회, 2013), pp. 48~49.

41. 정은이,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방, 그리고 국제협력,” p. 70.

42. 양문수는 시장의 물품 유입 경로로 개인차원의 생산물, 기업(농장포함) 차원의 생산물, 중국 등 제3국 유입품, 국제사회의 지원물자 등을 꼽았으나 이 논문에서는 기업차원의 생산물은 공식적으로 배급제로 활용되고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공식부문에서 유출·절취되는 상품이기에 때문에 따로 구분했다. 양문수, “북한 사람은 월급 3천원(1달러)으로 사는가?,” 『평화재단전문가포럼』 (평화재단 10월 전문가포럼 발표자료집, 2006) 참조; 그러나 양문수는 공식기관에서 수입한 상품을 중국 등 제3국 유입품으로 구분한 반면, 이 논문에서는 공식기관에서 수입한 상품도 시장에서 유통을 하는 것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공식부문에서 유출·절취된 상품으로 보고 있다.

과함에 따라 주민들은 소토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잘 활용하여 부수 입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토지는 시장과 연계되고 있어 도시 노동자들에게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출구가 된다고 한다.⁴³ 이는 주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가져다줘 국가에서 배급 주지 않아도 오히려 종전에 쉽게 먹을 수 없는 술도 마시고 돼지고기도 사먹을 수 있는 나름의 유통망 형성⁴⁴을 가능하게 해 주민 식량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식부문에서의 절취나 유출된 상품들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부패현상으로 북한의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배급 식량을 빼돌려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의 부정행위에 비유한 유행어⁴⁵들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특히 간부들은 직위를 이용하여 식량을 빼돌리는데⁴⁶ 그치지 않고 부정부패가 알려질 것에 대비해 주변에 잘 아는 하류층

43. 북한의 소도시급 규모에 거주하는 도시노동자는 간부를 제외하고는 1년분 식량의 60% 정도는 소토지를 통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약간의 배급 외에 밀주, 두부 제조 혹은 가축을 기르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해 보충하고 있다. 정은이,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방, 그리고 국제협력,” p. 298.

44. 위의 글, pp. 293~294.

45. 북한에서는 부정행위에 비유해 ‘공장의 당비서는 차에 탄 채로, 그 아래 공장장은 리어카로 빼돌린다. 직장장은 자전거로, 노동자는 가방에 넣어 물건을 빼돌린다’고 흔히 표현한다. 또한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안전부는 안전하게, 간부는 간단하게 부정유출 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선인민군에 관해서는 ‘군대는 근대적으로 대대는 대대적으로 중대는 중대적으로 부정유출한다’는 말들도 유행한다. 리영화, 『두 얼굴의 조국』 (서울: 시대정신, 2002), pp. 74~75.

46. 북한의 일상 생활용품은 ‘상업성 중앙도매소 → 각 도 출하도매소 → 지역별 지구도매소 → 시·군 상업관리소 → 일선 상점의 매대’를 통해 전달된다. 이런 유통과정에서 중간관료들의 물품 착복으로 인해 80% 정도가 유실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가 물품 분배과정과 교역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횡령과 뇌물은 국가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 등 생활 여건을 낮추는 원격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재진, “북한의 체제위기와 지배엘리트의 행위양식 변화,”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pp. 196~197.

주민들을 내세워 장사를 하기도 했다.

저기 또이 뭐야 제 아래, 저 하부들 좀 데리고 갔단 말이야, 쓱
실어서 딱- 그거는 가져가서 이제는이 제집에다 톱 들여다 놓고
서리, 이제 들고 나가서 팔아먹는단 말이야. 파는 게여 먼저이
내가 말했지만. 이자 그 놈 와이프는 자기가 팔았다가는 눈이 있
잖아. 이 눈이 이게 얼마나 무서워이?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못
팔고 제 와이프 친구를, 나를 시킨단 말이야. 나는 하바닥(하류
층계급)이니까. 내인데다가, “넌 30% 먹고 70%, 암시세가 지금
시장 시세가 딱 있으니까 암 하는 데로(암시장으로), 암 하는 데
에다가 가지고 팔아치워라. 며칠 동안” (중략)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런 방법으로 간부들은 다 먹어요.⁴⁷

이처럼 공식부문에서의 절취나 유출된 상품들은 시장을 발달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모니터링 조사 등이 실시되는 대북지원 식
량들조차 권력에 의해 유용되곤 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대한민
국’이나 ‘세계식량기구’ 등이 적힌 곡물 자루가 그대로 팔리기도 했다.⁴⁸

교양원들은 청소하고 닦고 쓸고 문대고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원장과 회계 보는 경리원은 문건을 맞추죠. 양정부에서 문건이
내려옵니다. 쌀을 얼마 받았다고 알려 주고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합니다. 물건을 싣고 온 배 이름이나 곡물 종류까지 다 외웁니다.
옥수수가 몇 톤, 쌀 몇 톤, 기름 몇 톤 등 그런 것까지 다 외워야

47. 김종균·정진아, 『고난의 행군 탈북자 이야기』 (서울: 박이정, 2012), pp. 372~373.

48. 지원물자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에 대해 『림진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북한에 도착하는 지원미 등 각종 물자가 항이나 국경관문을 벗어나는 데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도시주민의 배급용으로써인데 이것은 순전히 국제 사회에 대한
위장에 불과한 량이다. 다른 하나는 군부나 군수경제 그리고 각 건설장들에 보내는
것으로써이다. 여기에 보내진 적지 않은 량도 중간층 간부의 부정축재용으로 시장에
나간다. 끝으로 외화벌이 회사들이 외화를 내어 사서 싣고 나가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써이다.” 류경원 “장사군들 남조선 상품을 리용하여 적에 대한 환상 류포-07년
시장억제는 특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림진강』, 3월호 (림진강출판사, 2008), p. 94.

됩니다. 경리가 다 외우고 장부를 2가지로 만들어 둡니다. 실질적인 장부와 검열을 받기 위한 장부… 그러니까 유엔 사찰용 장부를 만드는 것이지요.⁴⁹

이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유입된 식량들이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광산의 자원이나 기업소의 기계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절도해 중국과의 밀무역을 시도했다. 식량부족이 심화되면서 국경지역의 검문소에서 불법적으로라도 중국에서 식량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막지 않았다고 한다.

광산이 있어서 광산에서 광석을 중국에다 막 넘겼어요. 그냥 헐값으로 진짜, 그때는 그냥 이 두만강 쪽으로 어떤 무산광산에 광석이 넘어간다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넘어가면 뭐가 또 먹을 것이 넘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진짜 통곡할 일이드라고요. 그거 지하자손(지하자원)을 그냥 공짜로 다 주고 막, 중국에서 소나 돼지가 먹는 짱앙을 넘기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이제, 근데 노동자들 다 먹지 못하면 일을 못하니까 광산 간부들도 진짜 어쩔수가 없죠 뭐.⁵⁰

무역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북한 내부로 식량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외국과의 거래는 정치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해외의 물자들이 전국의 시장에 확산되었다.⁵¹

49. 김석향, 『회령 사람들, 기억 속 이야기를 들려주다!』 (서울: 국민대학교출판부, 2013), p. 129.

50. 김종균·정진아, 『고난의 행군 탈북자 이야기』, p. 503.

51. 립진강출판사 편,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립진강』, 11월호 (립진강출판사, 2007), p. 55.

2. 북한 주민 계층구조의 변화

배급제가 흔들리자 북한 주민 대다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식량을 얻으려면 시장으로 가야하고 시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거래가 되니 북한 주민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이야말로 식량접근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법과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행위를 단속하고 통제했다. 이 같은 무역, 장사행위, 단속 등 시장에서의 여러 행위들은 북한 주민들의 계층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김일성 정권 하의 북한에서는 정권에 대한 지지와 김일성 민족주의에 대한 옹호가 지위와 사회계층에 있어 특권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및 김정은 정권에서의 사회적인 계층과 특권은 선대에 만들어지고 체계화된 기초적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⁵² 북한에서 2000년대 이후 식량권은 사회적 계층 내의 지위만큼이나 시장에서의 상업적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배급제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구매력의 문제’로 성격이 전환된 것이다.⁵³ 결국 고난의 행군 이전 사회주의적 권한부여 체계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위나 직업에 근거한 특정형태의 사회적 계층을 따랐으나 이후에는 식량에 관한 권한이 점차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2000년 이후 북한 주민의 경제적 계층은 상류층, 중간층, 하류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⁵² 헤이젤 스미스, “북한의 식량권 침해 여부와 반인도 범죄 규명,” p. 343.

⁵³ 허만호,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 96.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상류층 중에서 최상류층을, 하류층 중에서도 최하류층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계층 분포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2005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상류층 5~15%, 중간층 30~40%, 하류층 50~60% 정도, 농촌 지역에서는 상류층은 극소수, 중간층 20~30%, 하류층 70~80% 정도의 분포를 나타낸다.⁵⁴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 이전에는 배급제에 의한 식량 공급으로 상위 1% 정도의 최고위층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것이 권력이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⁵⁵

이는 북한 주민의 계층을 상류층, 중간층, 하류층으로 구분할 때 정치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이었던 주민이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상류층의 권위를 누릴 수 있지만 중간층이나 하류층으로 계층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정치 우위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권력과 밀착할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가진 자가 부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권력과 손잡은 새로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상류층을 형성하게 된다. 권력과 부가 연계된 집단이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식량난 이후에도 고위간부들은 권력을 활용하여 뇌물수수나 횡령 등 부정행위를 하기 쉽고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상류층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⁵⁷ 또한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 중에도 상행위를 통해

54- 조경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266.

55-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 218.

56- 위의 글, p. 218.

상류층의 삶의 수준으로 진입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⁵⁸ 북한의 정치적 신분체계가 중류층이나 하류층인 이들은 장사를 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인 이들과의 결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치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인 이들은 대부분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상류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치적 신분체계가 중간층인 주민이 2000년대 이후 상류층으로 진입하거나 중간층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신분체계가 하류층인 주민이 2000년대 이후 상류층이나 중간층으로 상승하거나 하류층에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2000년대 이후 신분이 하락하고 실제 식량접근성이 떨어진 계층은 2000년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봉대의 연구⁵⁹에 따르면 면접조사 대상자의 수적 한계와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류층은 자료원への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을 진행한 가구들 모두 경제적 신분체계가 정치적 신분체계보다 수준이 높아지거나 동등했다.⁶⁰ 특히 정치적 신분체계상 하류층이나 최하층에

57. 사회주의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특권을 바탕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조한범 외,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86.

58.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p. 218~219.

59. 최봉대,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기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8) 참조.

60. 최봉대의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계층을 상층, 중간층, 하층, 최하층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정치적 신분계층이 최하층이어도 경제적 신분계층은 중간층이나 하층으로 상승한 경우도 있다. 이는 “돈 없는 서민들은 하다못해 폼팔이, 그러니까 쌀장사들이 붓다리가 많은데 그런거 옮기는 거 해서 돈을 받거나 산에 있는 나무도 팔면서 차단된 상황에서 하다못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 너도나도 시장으로 몰려갔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발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1
2
3
4
5
6

비해 단연 유리한 중류층 이상이 경제적 상층가구의 다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⁶¹ 또한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류층은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과정에 경제적 잉여의 생산적 참여자가 아닌 약탈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생적으로 의존하고 있다.⁶²

● 표 1-1 2000년대 전후 북한 주민의 계층구조 변화와 식량접근성 수준⁶³

정치적 신분체계 (2000년대 이전)	비공식적 연결망 자원 (시장활동 등)	경제적 신분체계 (2000년대 이후)	신분체계 변화 수준 (정치적 → 경제적)	식량접근성 수준
상류층	⇒	상류층	유지	안정적
		중류층	하락	안정적
		하류층	하락	불안정
중류층	⇒	상류층	상승	안정적
		중류층	유지	안정적
		하류층	하락	불안정
하류층	⇒	상류층	상승	안정적
		중류층	상승	안정적
		하류층	유지	불안정

* 화살표(⇒)의 의미는 시장활동 등 비공식 자원망 활동을 거친다는 의미임.

김양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 140 참조.

⁶¹ 최봉대,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p. 71.

⁶² 위의 글, p. 72.

⁶³ <표 1-1>에 있는 정치·경제적 계층에 포함되는 직군의 사람들을 통일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해 다음 <표 1-2>에 정리했다. 다만 이 기준이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런 가운데 아직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북한체제에서 부의 규모와 생활수준에 따른 구분으로 첫째, 식생활을 기준으로 둘째, 의생활에 따라 셋째, 주생활에 따라 사회계층을 재구성할 수 있다. 2008년 통일연구원이 2006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4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식생활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했다. 이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상류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낙지(오징어),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며, 중류층은 “쌀밥을

표 1-2 2000년대 전후 북한 주민의 정치·경제적 계층구성

정치적 계층구분 (2000년대 이전)	구성	경제적 계층구분 (2000년대 이후)	구성
핵심계층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8·15 이후 양성된 인텔리,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 가족, 영예 군인 등 12개 부류	상류층 (화폐개혁 이전: 10~30%, 이후: 10~20% 추정)	보위부에서도 급수가 높은 부장, 부부장, 정치부장, 보안부서인 김철과, 수사과의 법관, 국가에서 투자해주는 기업을 관장하는 당비서, 국경지역에서 중국과의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간부 등
동요계층 (48%)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接客업자, 중산층接客업자,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제2, 3부류),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 이전 양성된 인텔리, 접대부 및 미신송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안일, 부화 방탕한 자 등 18개 부류	중류층 (화폐개혁 이전: 30~50%, 이후: 15~30% 추정)	개인장사(보안원, 보위부원과 결탁해 조금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 등
적대계층 (27%)	8·15 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 관료배, 천도교 천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월남자 가족, 자본가 등 21개 부류	하류층 (화폐개혁 전후 모두: 50~70% 추정)	소규모 하루살이 장사를 하는 사람, 권력자도 없고 집안에 나라의 주요직에 있는 사람이 없어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사람(평백성), 지방에서 농사짓는 사람 등

출처: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211~231 참고 재구성.

1
2
3
4
5
6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 데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하류층은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⁶⁴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전 배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일반 주민들에게 쌀과 잡곡을 혼합한 배급이 이루어졌음을 미루어볼 때 배급의 수준은 경제적 신분체계의 중류층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적어도 경제적 신분체계의 상류층은 물론 중류층도 고난의 행군 이전 배급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큼 식량접근성의 수준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정치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인 이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도 상류층에 자리 잡으면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식량접근성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신분체계가 중류층인 이들 중 경제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으로 상승한 이들은 물론 중류층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도 안정적인 식량접근성을 보장받고 있다. 다만 일부 정치적 신분체계가 중류층인 이들 중 경제적 신분체계가 하류층으로 하락한 이들만 식량접근성이 떨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신분체계가 하류층 중 경제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이나 중류층으로 상승한 이들은 이전과 달리 식량접근성이 개선된 이들이며, 여전히 하류층에 남아있는 이들은 식량접근성이 동일한 수준인 것이다. 결국 식량접근성이 불안정

⁶⁴ 통일연구원의 연구에서 이처럼 식생활에 따라 계층을 구분한 이유는 북한의 식량가격이 계속 크게 변동하고, 비공식 달러 환율도 시기마다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식생활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심층면접 대상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식생활을 중심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어 이후 북한 사회계층에 한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80.

한 이들은 상류층, 중류층의 정치적 신분체계가 하류층의 경제적 신분체계로 하락을 했거나, 하류층의 정치적 신분체계가 하류층의 경제적 신분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치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인데 경제적 신분체계가 하류층으로 하락하는 이들은 거의 없고, 정치적 신분체계가 하류층인 인원들 중에서는 상류층이나 중류층으로 진입을 하기도 해 기존의 정치적 신분체계에서의 하류층 인원보다 경제적 신분체계에서의 하류층에 남아있는 인원은 축소되었다. 또한 그나마도 식량접근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식생활 내용면으로 보더라도 고난의 행군기 이전 북한의 신분별 식량공급기준을 살펴보면, 배급 1~2순위가 경제적 계층분화 이후의 상류층에 해당하고 3~4순위가 중류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계층분화 이후의 상층은 특별공급대상인 정무원 총리 이상의 수준으로 식생활을 영위하지만 당중앙위원회 과장 이하부터는 배급순위가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쌀과 곡물을 7:3으로 혼합한 것을, 육류도 제한된 양을 배급받고 있어 상류층의 식생활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 1순위 이외의 다른 순위 계층들도 전반적으로 경제적 계층분화 이후보다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⁶⁵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식량문제의 부분적인 완화와 악화 속에서도 전반적인 식생활 수준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나아가 그 이전 배급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와 비교할 때도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쌀밥을 먹는 북한 주민들이 크게 늘어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잡곡밥은 별로 안 먹으려하고 이밥을 먹겠다”고

⁶⁵ 북한의 신분별 식량공급기준은 조명철, “북한의 자유시장가격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논총』, 3권 (북한경제포럼, 1997), pp. 204~206 참조.

1
2
3
4
5
6

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⁶⁶ 이는 주식을 놓고 보았을 때 주민 식생활에 있어 고난의 행군기 이후 경제적 신분체계 중간층 정도가 이전 정치적 신분체계 상층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IV. 북한 시장과 주민 식량권의 상관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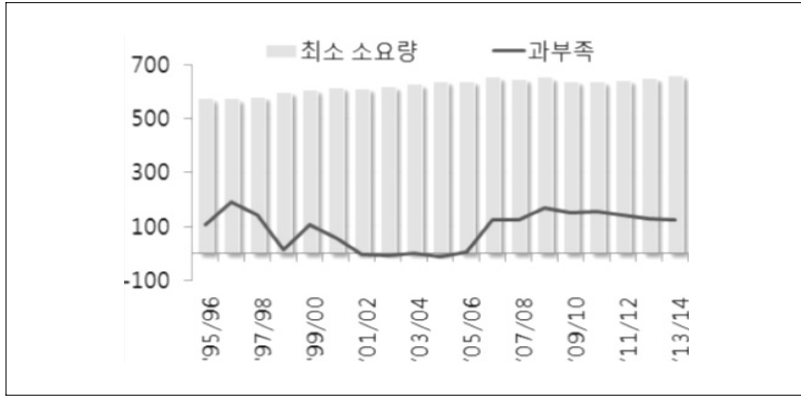
1. 북한 시장과 주민 식량권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불만을 해소시켜 체제유지에 긍정적인 측면과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등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양면성은 주민들의 식량권에 미치는 효과도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 모두 갖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의 식량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배급제가 불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북한의 시장은 북한의 주민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⁶⁶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배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점차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고 이는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식생활 개선 효과와 쌀밥 선호로 특히 혜산이나 청진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절반 정도는 쌀밥을 먹는 생활을 한다고 한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59, 67;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들은 2005년 전까지는 잡곡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쌀밥을 먹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잡곡밥은 소화가 되지 않아 잘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 78.

● 그림 1-1 북한 곡물 최소 소비량과 부족량(1995~2013년)

(단위: 만 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편, “북한 식량수급현황과 과제,” 『현안과 과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4), p. 1.

이는 최근 북한의 식량 상황이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함에도 이전과 달리 아사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의 시장이 주민 식량문제의 개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⁶⁷ 2000년대 이

67. 고난의 행군 시기 아사자의 수에 대한 각계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이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세종연구소, 2004), pp. 119~120에 정리가 잘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에버스타트(Eberstadt)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수와 1998년 대의원 선거결과, 1987년의 북한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300만명의 인구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한국통계청(1999)은 북한의 공공의료분야에서 중사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취합해 1995~1998년간 총 27만명의 기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와 로빈슨(Robinson, Lee, Hill and Burnham) 등은 중국에 기거하는 북한 식량난민 조사를 통해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사망자수가 총 35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굿카인드와 웨스트(Goodkind and West)는 중국 기근시기 사망률 패턴을 북한에 적용해 1995~2000년간 60만~100만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석은 북한의 공식인구통계를 북한 기근의 존재와 기간, 심각성,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분석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총계는 25만~69만명에서 넓게는 25만~117만명의 기근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세종연구소, 2004), p. 141; 그러나 <그림 1-1>에서 보듯, 최근 북한의 가용 식량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량 아사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1
2
3
4
5
6

후에는 시장이 제도화되어 북한 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은 협동농장 생산분 중 초과분, 사적 경작에 의한 생산물, 기타 중국 등에서 수입 혹은 밀수된 식량 등으로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에게 새로운 식량공급 루트로 작용하고 있다.⁶⁸

북한의 1990년대 대량 아사사태는 식량 공급의 감소만이 아니라 붕괴한 배급제를 대체할 새로운 식량공급 루트가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시장의 제도화로 식량공급이 감소하더라도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고난의 행군 직후 식량난으로 국경을 넘어와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난민 5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장마당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식량난이 해결된 후에도 장마당이 존속되기를 원한다’는 결과가 각각 100%로 나오기도 했다.⁶⁹ 2000년대 이후에도 시장을 통한 주민활동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 북한 주민의 70~80%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주민이 10% 정도로 추정⁷⁰될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생계활동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 달리 2000년대 후반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 지표가 개선된 것도 북한의 시장이 주민 식량문제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헤이젤 스미스는 “빈곤을 측정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

68. 임수호,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시사점,” 『Issue Paper』, 2009.10.6. (삼성경제연구소, 2009), pp. 11~12.

69. 좋은벗들 편,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북한 난민 1027명, 남한 주민 500명 설문조사』 (서울: 정토출판, 2001), p. 24.

70.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사연구소, 2013), p. 171.

는 지표 등을 살펴보면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아시아 내의 민주주의 국가 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의 아동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⁷¹며 “북한의 식량, 영양상태 및 보건 관련 자료들은 정부의 정책이 식량권에 대한 고의적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⁷²고 밝혔다.

표 1-3 북한 주민의 건강지표 변화

보건지표	1995~1996년	1999~2002년	2000년대 후반
인구	22,114,000명	23,149,000명	24,050,000명 (2008년)
기대수명	70.1세	67.13세	69세 (MoPH, 2006년)
사망률	6.8/1,000명	9.3/1,000명	8.8/1,000명 (MoPH, 2006년)
영아 사망률	186.6/1,000명	23.5/1,000명	14.9/1,000명 (MoPH, 2006년)
5세 이상 사망률	39.3/1,000명	48.8/1,000명	38.7/1,000명 (MoPH, 2007년)
극심한 영양부족	16.8%(1998년)	8.1%(2002년)	7%(MoPH, 2007년)
모성 사망률	105/100,000명	103/100,000명	90/100,000명 (MoPH, 2008년)
전문가에 의한 출산	87.1%	97% (3지역 표본조사)	99% (MoPH, 2007년)
저체중 출산	10.9%	6.7%(MICS 2002년)	6.2% (MoPH, 2007년)
임신빈혈	33.1%(1997년)	23%	
의사 수	29.7/10,000명	29.7/10,000명	32/10,000명

71. 헤이젤 스미스, “북한의 식량권 침해 여부와 반인도 범죄 규명,” p. 328.

72. 위의 글, p. 344.

1
2
3
4
5
6

보건지표	1995~1996년	1999~2002년	2000년대 후반
병상 침대 수	136.3/10,000개	136.3/10,000개	187.6/10,000개 (MoPH, 2007년)
호당 의사 수	134가족/의사	134가족/의사	
MV 접종률	60%	91.5%	99.2% (EPI, 2008년)
OPV 접종률	90.66%	96.0%	99.3% (EPI, 2008년)
BCG 접종률	60%	81.5%	96.9% (EPI, 2008년)
DTP 접종률	58%	81%	91.7% (EPI, 2008년)
TT 접종률	61.8%	83.6%	96.5% (EPI, 2008년)
TB 환자수	50/100,000명	220/100,000명	
말라리아 환자수	100,000명(1999년)	243,000명	9,353명 (MoPH, 2007년)
필수의약품 공급	60%	46%	
장비 개선 주기	7년	10년	

출처: 임강택 외,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전략: 쟁점과 제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1), p. 15.

<표 1-3>의 영아사망률과 극심한 영양부족, 모성사망률 등의 지표를 보면 주민들의 식량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사망률은 1990년대 중반 1000명당 186.6명이었으나 1999~2002년과 2000년 후반 각각 23.5명과 14.9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극심한 영양부족도 1998년에 16.8%에서 2002년 8.1%로, 2007년에는 7%로 감소했으며 모성사망률도 1990년대 중반 10만 명 중 105명에서 1999~2002년 103명으로, 2000년대 후반 90명으로 줄었다. 이는 북한의 시장이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북

한 당국은 정상적인 배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시장을 주민들의 식량 공급 공간으로 허용하면서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먹는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이 주민들의 식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계획영역에 수용하기 위해 합법화를 선언했으나 비사회적인 요소의 확산을 견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며 배급제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이거나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실제 북한 당국은 2002년 7·1조치 직후 농민시장을 폐쇄하는 등 일체의 사적 매매 행위를 금지시켰고 2003년 3월 시장을 공식영역으로 수용했지만 2005년 배급제를 정상화 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통제했다. 특히 2007년 10월에는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저지하자’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지시문을 내리고 시장을 억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장 통제에 북한이탈주민들은 판매 물품을 몰수당하거나 폭력 등에 노출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이래두 세계 했으문 사람덜이 고통 덜 받겠는데...(중략) 장에 나가문 물건 다 빼뜰구, 장에 물건 개지구 나오문 물건 다 빼앗구 회수하구. (중략) 백성들 자꾸 못살게만 구니까. 거 길바닥에 두 장 줌 세문, 장에 나가서 뭐 줌 팔구 남는 돈으루 생활에 보태 쓰문 거 생활이 좀 낫겠는데.⁷³

1

2

3

4

5

6

실제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지속될 때는 쌀 가격 등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쌀이 줄어들고 정부가 쌀값을 규제할수록 가격은 더 뛰는 것이다.⁷⁴ 북한 당국의 통제 외에도 곡물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인 국제곡물가 상승 등도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을 상승시켜 주민들의 식량권을 제한하고 있다.⁷⁵

아울러 식품의 위생문제⁷⁶ 역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북한은 가공식품 등의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수준도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⁷⁷ 또한 시장에서 파는 식품들 중 유

73. 림진강출판사 편, “백성들 점뎨 더 미워진다-시장억제로 증가되는 고통, 고조되는 불만,” 『림진강』, 3월호 (림진강출판사, 2008), pp. 100, 102.

74. 한영진 “북한의 시장단속과 약화된 주민생활 - 외부 지원을 주민통제 발미로 이용 물자부족에 시장통제까지 연초부터 격정만 앞서,” 『북한』, 1월호 (북한연구소, 2008), p. 132.

75. 북한의 시장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내 변수로 곡물 생산량과 수입상황, 식량배급제 등이, 외부 변수로 국제곡물가격, 북한의 대중국 수입총액 등이 있다. 북한 시장의 쌀 가격 변화요인과 관련해서는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7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는 식량권의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식량의 적절성’, ‘접근성’,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식량의 ‘적절성’은 ‘개인의 먹을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양 면에서 적당한 양과 질, 안전한 식품, 문화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접근성’은 ‘얼마나 쉽게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접근성, 존엄성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은 ‘지속적이고 인권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접근성’으로 생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런 가운데 ‘해로운 물질이 없다’는 의미는 식량이 불순물 및 불량한 환경위생이나 여러 단계의 공급 과정 중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자연발생적 독소를 검출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UNCESCR,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05/12/1999. E/C.12/1999/5; FAO, *The Right to Adequate Food*, (Geneva: OHCHR, 2010), pp. 2~3; 이를 미뤄볼 때 시장과의 상관성 측면에서 북한의 식량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77. 김인호, “북한의 식품위생과 감독 실태,” 『통일한국』, 293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p. 70.

통 기한이 지나 변질되는 게 많아 대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⁷⁸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음식을 판매하다보니 음식이 쉽게 변질이 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식품위생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에 제한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시장화와 주민 식량권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식량권이 시장화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배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탈해야 했고, 북한 당국은 시장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풀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급격한 시장 확대 현상을 가져왔다 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의 질서를 담당하는 ‘단속원’들도 있으나 결국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라 할 수 있는데 구매자는 식량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을 찾았고 또 판매자도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 마련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 활동을 영위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식량권은 북한 시장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 주민인식 변화와 식량권 가치의 인식

북한 시장과 주민들의 식량권에 대한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배급제의 중단으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주민들의 식량문제의 해결에 대한 인식이 실제 주민 식량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관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⁷⁸ 좋은벗들 편,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p. 32.

이는 북한의 시장이 계획영역에 포함되면서 일부 정권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것에 근거할 때 북한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면서 변하게 된 시장을 대하는 인식에 의해 시장의 역할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역할이 주민들의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영향으로 형성된 주민들의 인식이 주민 식량권의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의 식량을 책임지던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가가 보장하던 식량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전가했다.⁷⁹ 이에 국가의 배급에만 의지해서 살아오던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버티기도 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하는 주민들이 급속하게 늘었다. 특히 기존의 사회 통제력이 무너지면서 부정부패와 위법행위가 확산되고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이면 뭐든 된다는 심리가 자리하게 됐다.⁸⁰

실제 식량배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만 해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상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수준이 높았으나 배급 중단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를 가져와 고난

⁷⁹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서는 다음의 김정일 연설에서 엿볼 수 있다. “지금 도·시·군당 책임비서나 공장, 기업소 당비서, 리당비서들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리고 있는 식량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식량문제를 책임지고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자체로 해결하라고 내리먹이기만 하니 술한 사람들이 쌀을 구하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4월호 (조선일보사, 1997), p. 310.

⁸⁰ 김양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 p. 148.

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급격히 물질주의적으로 변했다. 즉, 배급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에는 정치적인 인식이 중요했으나 배급이 중단되고 스스로 식량을 구해야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인식은 중요하지 않고 ‘돈이 최고’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⁸¹ 이 같은 인식변화는 계층 간 불평등이나 식량접근성에 대한 차별도 주민 스스로 감수하도록 했다. 실제 배급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특권층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먹는 수준이 비슷했다고 하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계층이 분화되면서 소위 잘사는 사람들은 잘 먹는 게 당연하고 못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옛날에는 저 집에서 이밥 먹는다든가 우리집에서 강냉이밥 먹는데 저 집에서 이밥 먹으면 고발하고, 저 집은 잘 사는데, 밤에 감시하고 이런데. 지금은 사람들 머리 상태가 많이 깨 가지고. 니 능력껏 잘사는데 날 건드리지 않는데. (날 건드리지만 안으면 된다.) 지금은 그런 거 같아요.⁸²

이 같은 인식변화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의한 식량접근성의 차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배급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식량접근성도 안정적인데 반해 시장으로 인한 계층화로 배급제에서보다 일부 식량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서 식량권이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보편적 권리에서 개인적인 권리로 바뀐 것을 보여

⁸¹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통일부 용역보고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0), p. 66.

⁸² 위의 글, p. 70.

1
2
3
4
5
6

주고 있다.

이 같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국가의 식량보장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평등한 식량 접근 권리를 갖는다”는 식량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자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장화로 인한 계층 차이에 대한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원칙을 망각하기 쉽다.

특히 북한 당국은 시장을 계획영역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통제정책을 취했으나 매년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펼치는 통제 정책은 북한 당국이 통제할 때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었음을 방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자기 확대성이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은 반복적으로 새로운 통제기제를 고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자기 확대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물질주의 현상을 확산시키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켜 식량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전체에 대한 관심은 가족 등 개인적인 관심으로 축소되고 평등한 식량접근성이라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평등한 식량권에 대한 인식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 시장화가 주민 식량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배급의 불안정으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주민 계층분화로 여전히 식량접근성이 낮은

계층도 있지만 그 외의 주민들의 실질적 식량접근성을 개선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평등한 계층화는 식량권의 보편적인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식량권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식량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북한의 주민 식량권 보장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근의 원인이 식량 공급량의 저하보다 식량접근의 상실과 박탈에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식량접근성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배급제 등을 통해 모든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식량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배급제가 주민들의 식량지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그동안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혜택인 식량의 무상공급과 저가공급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도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당국의 7·1조치로 인해 식량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해야 하고, 이마저도 모자라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의 지위는 배급제에서 식량의 구매력으로 바뀌게 되었다.

1

2

3

4

5

6

특히 배급제가 불안정하자 북한 주민 대다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식량을 얻으려면 시장으로 가야하고 시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거래가 되니 돈을 버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장사행위가 사회주의 법과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당국은 상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통제했다. 이 같은 무역, 장사행위, 단속 등 시장에서의 여러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계층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권력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했으나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경제적 가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고난의 행군 이전 사회주의적 권한부여 체계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위나 직업에 근거한 특정형태의 사회적 계층을 따랐으나 이후에는 경제적 가치에 의해 사회적 계층이 재편되었고, 식량에 관한 권한도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결국 7·1조치 이후 시장이 합법화 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전량을 책임지는 것에서 개개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주민들에게 부여하던 식량접근성의 지위도 개개인의 구매력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권리인 식량권이 북한에서는 과거 보편적인 권리였지만 식량난과 시장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 권리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인 이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도 상류층에 자리 잡으면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식량접근성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신분체계가 중간층인 이들 중 경제적 신분체계가 상류층으로 상승한 이들은 물론 중류층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도 안정적인 식량접근성을 보장받고 있다. 다만 일부 정치적 신분체

계가 중류층인 이들 중 경제적 신분체계가 하류층인 이들만 식량접근성이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은 더욱 안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이 주민들의 식량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북한의 시장이 주민들의 생존에 도움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은 당국의 통제 등으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지속될 때는 쌀 가격 등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통제 외에도 급격한 곡물가격의 상승과 식품의 위생문제 역시 북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아울러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의 중단으로 식량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주민 계층분화로 여전히 식량접근성이 낮은 계층도 있지만 북한의 시장은 그 외의 주민들의 실질적 식량접근성을 개선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평등한 계층화는 식량권의 보편적인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

2

3

4

5

6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명세. 『북한 인권지표 및 지수개발 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2011.
- 김석향. 『회령 사람들, 기억 속 이야기를 들려주다!』. 서울: 국민대학교출판부, 2013.
-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종균·정진아. 『고난의 행군 탈북자 이야기』. 서울: 박이정, 2012.
- 리영화. 『두 얼굴의 조국』. 서울: 시대정신, 2002.
- 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 북한인권정보센터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편. 『2013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3.
- 아마티아 센. 김원기 옮김.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갈라파고스, 2013.
- 이승훈 외. 『북한의 사회경제적변화-비공식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풍요와 빈곤의 이중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 임강택 외.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전략: 쟁점과 제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1.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조한범 외.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좋은벗들 편. 『북한 난민 1855명 증언-사람답게 살고 싶소』. 서울: 정토출판, 1999.
- _____.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 _____.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8.
- 주정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통일부 용역보고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0.
- 통일연구원 편.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허만호.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서울: 명인문화사, 2008.
- FAO한국협회 편. 『FAO/WFP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 서울: FAO한국협회, 2013.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FAO. *The Right to Adequate Food*. Geneva: OHCHR, 2010.

2. 논문

- 김기량 외. “식품보장의 개념과 측정.” 『예방의학회지』. 41권 6호 (예방의학회), 2008.
- _____. “한국 식품 미보장의 현황 및 특성.” 『보건사회연구』. 29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사연구소), 2013.
- 김석우. “북한 주민의 식량권 확보 위해 강제수용소 폐쇄해야.” 『신아세아』. 제20권 2호 (신아시아연구소), 2013.

1
2
3
4
5
6

- 김양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인호. “북한의 식품위생과 감독 실태.” 『통일한국』. 293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4월호 (조선일보사), 1997.
- 김종덕 외. “식량권 실현과제와 사회복지.” 『비판사회정책』. 제24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
- 김태훈. “식량접근권, 계층 및 성분에 따른 차별.” 『UPR, 북한 인권운동의 새로운 고두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자료집, 2009년 6월 29일.
- 림진강출판사 편.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림진강』. 11월호 (림진강출판사), 2007.
- _____. “백성들 점점 더 미워진다-시장억제로 증가되는 고통, 고조되는 불만.” 『림진강』. 3월호 (림진강출판사), 2008.
- 류경원. “장사군들 남조선 상품을 리용하여 적에 대한 환상 류포-07년 시장억제는 특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림진강』. 3월호 (림진강출판사), 2008.
- 서재진. “북한의 체제위기와 지배엘리트의 행위양식 변화.”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 양문수. “북한 사람은 월급 3천원(1달러)으로 사는가?.” 『평화재단전문가포럼』. 평화재단 10월 전문가포럼 발표자료집, 2006년 10월 19일.

- 오승진. “식량권(Right to Food)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1권 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윤 우. “북한 인권침해의 반인도 반민족 범죄행위론.” 『통일과 법률』. 10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 이 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세종연구소), 2004.
- 임수호.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시사점.” 『Issue Paper』. 2009.10.6.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정은이.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방, 그리고 국제협력.” 『KDI북한경제리뷰』. 14권 10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조명철. “북한의 자유시장가격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논총』. 3권 (북한경제포럼), 1997.
- 최봉대.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이카데미, 2008.
- 한국개발연구원 편.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 있게 앞당기자.” 『KDI북한경제리뷰』.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한영진. “북한의 시장단속과 악화된 주민생활 - 외부 지원을 주민통제 빌미로 이용 물자부족에 시장통제까지 연초부터 걱정만 앞서.” 『북한』. 1월호 (북한연구소), 2008.
- 현대경제연구원 편. “북한 식량수급현황과 과제.” 『현안과 과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4.
- 헤이젤 스미스. “북한의 시장화, 불균등, 지역.” 『북한경제리뷰』.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9.
- _____. “북한의 식량권 침해 여부와 반인도범죄 규명.” 『유엔

1
2
3
4
5
6

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인권증진방안』. KINU 샹이오 인권포럼
자료집, 2013년 8월 27일.

Chris Downes. “Must the Losers of Free Trade Go Hungry?
Reconciling WTO Obligations and the Right to Food.”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7, 2007.

Marsha A. Echols. “Paths To Local Food Security: A Right To
Food. A Commitment To Trad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0, 2007.

3. 기타자료

국가인권위원회.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f 16 December
1966 entry into force 3 January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 of the Covenant),
11, August, 2000.

북한의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 연구목적

II.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특징

III. 북한 주민의 식량권 평가

1. 식량권 평가 지표
2. 북한의 식량 상황
3. 북한 주민의 식량권 평가

IV.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V.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I. 연구목적

북한에서 시장이 가시화 된 지 20년 가량이 되었다. 처음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배경으로 북한의 계획경제체계 밖에서 음성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장은 북한 정부의 단속, 묵인, 합법화 등 일련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이제 계획경제를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의 실체이자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기득권층이 시장화를 주도하면서 부패를 동반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 시장화는 달러화, 민영화 현상을 동반하면서 역진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해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할 정도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 주민의 삶, 특히 일반 주민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시장화는 체제전환, 혹은 북한정권의 정책방향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되어 왔다. 물론 북한 주민의 생존권, 특히 식량권과 관련해 식량 수급 상황에 대한 논의는 관련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에서 계속되어 왔다. 그런 논의 속에서 시장이 주민의 식량권과 맺는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단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주민의 생존수단의 획득에 시장이 주는 유용성은 여러 차례 확인되어왔으나, 그것이 주민의 식량권 증진 차원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이 글은 북한의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을 국제인권기구에서 통용되는 식량권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분석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의 추세와 특징을 시장화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북한의 식

1
2
3
4
5
6

량 사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식량권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시한 인권 측정 틀¹을 이용해 평가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본 논의의 목적을 반영해 북한의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을 긍·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어 결론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고 북한의 식량권 개선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볼 것이다.

II.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특징

시장화(marketization)란 다양한 차원인 동시에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계획화(planning)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화를 상정한다면, 이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 시장의 발생 및 확대, 시장요소라고 부르는 제도적 특징들의 연결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²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시장화 현상들은 주로 암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형태의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국가가 이러한 활동 중 일부분을 묵인하거나, 종종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함에 따라서 소위 합법적 2차경제의 영역이 형성되기도 하고, 공식적인 1차경제 내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기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화 요소의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계획경제 내부에도 시장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합법적인 부문과 비합법적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³

¹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HCHR),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Geneva and New York, 2012), p. 89.

² 양문수,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pp. 1~3.

³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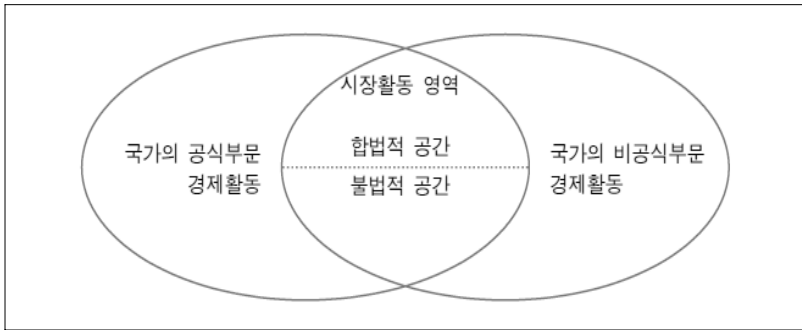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유형화 하면 ① 국가 공식경제 내의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② 국가 공식경제 내의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 ③ 국가 공식경제 밖에서의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④ 국가 공식경제 밖에서의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 등으로 나뉘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첫째,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부문과 비공식부문이 시장화 현상을 통해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둘째, 공식적인 계획부문에서의 시장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시장 현황을 살펴볼 때 북한의 경우에도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 북한경제에서 국가는 내각경제부문의 시장 활용, 당·군기구(일명 특권경제부문)의 외화벌이사업 등에서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은 아래 <그림 2-1>과 같이 구분되면서도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 북한 시장화 현상의 구조적 특징을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과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합법적 공간은 공생적 협력관계, 불법 공간에서는 경쟁적 기생관계를 보인다. 둘째, 내각경제, 특권경제, 민간(비공식)경제 등 경제 부문 간 관계면에서 볼 때 특권경제가 타 경제부문에 대해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수탈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기생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⁴

1
2
3
4
5
6

⁴ 위의 책.

● 그림 2-1 국가의 공식부문과 민간의 비공식부문과의 관계



출처: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75.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북한 시장화의 특징으로 시장화의 장기화 및 정착, 시장화의 대외의존적 성격과 함께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 및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꼽힌다. 시장에 대한 단속과 통제의 본격화는 주민들의 상행위 비용을 증가시키고 상층부 상인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하게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시장의 낮은 제도화 수준,⁵ 국가재정 부족, 반시장화정책 등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시장의 불법화, 시장 진입장벽의 강화와 같은 정부의 반시장화정책은 시장을 둘러싼 부패를 일으켜 생계추구형 상행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⁶

북한의 극심한 식량위기 시기인 1995~1997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배급식량에 의존하는 경우는 고위층 가족에 국한되고 대다수는 시장 거래와 야생 대용식품에 의존하였다. 주민들의 시장을 통한 식량난 극

⁵ 북한 시장의 제도화 추이에 대한 논의는 정은이, “북한시장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분석: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전을 기반으로,” 『북한경제리뷰』,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 41~47.

⁶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61~68.

북 노력은 북한 정부의 통제와 목인 가운데서 비공식적이지만 시장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현상이다. 첫째, 자영업의 목인이다. 재산이나 후견이 있는 개인이 국영공장, 기업소, 무역회사, 인민반의 이름을 빌려 자영업을 행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자영업은 물물교환, 상품유통, 음식업의 범위를 넘어 가내수공업까지 확대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형식상 매대의 소유권은 기업소 등에 있지만 사용권, 수익권은 개인에 속하면서 소유권의 분화가 일어난다. 둘째, 장세의 징수이다. 규모가 큰 장마당에서는 농민시장관리소가 설치되고 거기에 속한 관리인들이 상인들에 일종의 영업세 명목으로 장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관리인들은 밀수품 단속도 하지만 장마당에서의 합법적 시장활동에 대해 거래 품목에 따라 장세를 징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 정부가 시장활동을 새로운 국가수입 원천으로 삼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자금조’의 등장이다. 자금조는 일정 기간의 계약을 통해 사적 상행위를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조는 기업소 등 국영기관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자금조는 국가기관과 개인이 합작해 시장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공생관계에 들어선 사회주의 국가기관과 자본주의적 상인은 이윤을 3:7의 비율로 배분하는데, 상인은 70%를 운영자금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장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국가가 인정한 전문 비즈니스맨, 즉 외화벌이꾼의 등장이다. 자금조가 아무리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법의 보호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에 비해 외화벌이꾼은 국가기관의 합

1
2
3
4
5
6

법적 상행위이다. 이들은 특산물 판매에서 시작해 임가공을 통한 경제 활동, 나아가 자금 유통 및 노동력 확보 등 사적 경제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에서의 시장화 현상은 국가의 암묵적 승인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자연발생적인 관행으로 성립된 것도 있다.⁷ 이상과 같은 배경과 추세 속에서 주민들의 장사 경험은 비공식 수입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수입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비공식적 경제활동에 의해 규정되는 소유관계의 변동과 시장화 추세는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을 침식해왔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시장화는 소비재,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자체 영역을 확대해나감은 물론 계획경제의 보완재로서도 기능하며 그 양적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⁹ 2014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시장가격과 환율에서 안정을 보였는데, 이는 식량 증산에 따른 곡물가격의 안정과 함께 북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 중단 혹은 장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 이제는 시장화의 양적 확대가 질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상품화·화폐화의 진전은 시장화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시장화를 촉진한다. 동시에 시장화도 상품화·화폐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도로변 편의시설에서의 주차비 징수, 개인 운송업 및 각종 수리소의 등장 및 확산은 돈을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상품)이 늘어난다는 것, 즉 상품화의 확대를 의미한다. 아울러

7.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서울: 시대정신, 2005), pp. 162~163, 166~172.

8.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2008~2011,”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사연구소, 2012), p. 52.

9. 북한에서 시장화의 전개과정과 그 추세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김병연,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이석,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참조.

10. 이석, “2014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관찰, 분석, 그리고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pp. 3~11.

오토바이의 보급 확대는 교통의 발달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상품 유통, 나아가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이제 경제위기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화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¹¹

Ⅲ. 북한 주민의 식량권 평가

1. 식량권 평가 지표

식량(권)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는 북한의 식량권 상황은 물론 그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제적 기준을 제공해주는 의의가 있다. 200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빈곤감축전략을 지지하는 인권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12에 의존해 적정 식량권의 핵심 범주로 ① 만성적 기아로부터의 해방, ② 식량접근에 있어 성불평등 근절, ③ 식량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④ 충분한 영양이 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 ⑤ 안전한 식량에 대한 접근 등 5가지로 제시하고 각각의 범주에 따라 지표를 덧붙이고 있다.¹²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위 작업을 더 발전시켜 전반적인 인권 실태 측정과 그 이행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가이드북을 출간했다.¹³ 이 가이드북은 주요 인권 이행을 측정하는 작업을 공약, 노력, 결과 등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세 측면의 인권 측정은 구조적, 과정적,

11. 양문수, “2014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p. 32.

12. OHCHR, *Draft Guidelines: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Geneva, 2002.

13. OHCHR, *Human Rights Indicators*.

결과적 지표로 가능하다. 이 가이드북은 식량권과 관련해서도 이행 측정 지표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식량권을 영양섭취,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식량 가용성, 식량 접근성 등 네 영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식량권 이행 지표를 구조, 과정, 결과 등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세부 측정 지표를 식량 가용성, 식량 접근성에 관해서만 예시한다.

먼저, 식량 가용성 영역에서 이행 지표이다. 1) 구조적 지표는 영양 영역에서 언급하는 △헌법상 식량권 발효 및 적용 시점, △식량권 이행 국내법 발표 및 적용 시점 등 네 지표 외에 △농업생산 및 식량가용성 정책, △자연재해관리 정책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식량 접근성 영역에서도 구조적 지표로 이용된다. 2) 과정 지표는 영양 영역에서 언급한 지표 외에, △법적으로 농토를 가진 여성가장 가계 혹은 대상인구의 비율, △1인당 경작지 크기, △농사조사기관을 이용하는 농민 수, △농업생산증진에 지출되는 공적예산 비중, △주요 식량에 대한 1인당 가용성 비율, △곡물 수입의존도 등 여섯 가지가 더 포함된다. 3) 결과 지표는 소비를 위한 주요 식량의 1인당 가용성이다.

둘째, 식량 접근성 측면에서 이행 지표이다. 1) 구조적 지표는 위 식량 가용성에서의 구조적 지표와 같다. 2) 과정 지표는 영양 영역에서 언급한 지표 외에, △대상집단의 주요 식량에 대한 가계소비 비중, △대상 노동력의 실업률 혹은 평균임금, △빈곤선을 상회하는 대상집단의 비율, △성, 대상집단별 노동참여율, △가계내 적정식량에 여성의 접근 수준, △자원에 대한 대상집단의 접근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적용범위 등의 여섯 가지 지표가 추가된다. 3) 결과 지표는 △영양공급이 절대 부족한 인구 비율, △십분위 최저 세 집단의 식량구매를 위한 평균 가계비용이다.

2. 북한의 식량 상황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2014년 6월 발간한 ‘세계식량안보 상황 평가, 2014-2024’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가장 식량안보 상황이 열악한 나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작황이 저조했고, 단지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고서는 2014년 북한 주민의 70%가 식량 불안에 처해있고, 2024년에도 40%의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¹⁴

위 연구소는 세계 76개국의 식량안보 상황을 1980년부터 34개 항목에 걸쳐 매년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다. 이 자료는 해당국의 식량안보 상황 추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여기에는 북한 자료도 있다. 1990년 북한 주민들의 식량안보는 1980년은 물론 2000년대보다 나았다. 인구는 1990년대 후반 대량 아사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곡물/채소 생산량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가용성은 1990년이 가장 좋았던 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과 2013년 상황을 비교해보면 곡물수입은 줄어든 반면 곡물/채소 생산량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가용성은 2013년이 2000년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에서 개혁적 조치의 도입, 시장화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식량가용성에 있어 2000년과 2013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식량권의 측면에서 두 시기의 상대적 차이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상 북한 식량안보 실태의 중장기적 개괄을 전제로 2000년대 상황을

¹⁴ Stacey Rosen, Birgit Meade, Keith Fuglie and Nicholas Rada,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14-2024*, GFA-25, Economic Research Service/USDA (June 2014), p. 16.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역시 위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의 ‘세계 식량안보 데이터 셋(data set)’을 이용해 2000~2013년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을 곡물수입량과 1인당 식량 가용성을 지표로 삼아 살펴보자.

표 2-1 2000년대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 추이

(단위: 1000MT, kg/명/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곡물 수입량	1772	1659	1405	1079.8	1336	674.2	866.2
곡물/채소 가용량	163.601	169.846	167.850	168.989	169.355	164.556	163.556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곡물 수입량	903.3	514.6	379.6	471.5	712.8	398.6	340.1
곡물/채소 가용량	144.591	159.703	158.455	158.415	173.577	160.505	171.399

출처: Economic Research Service/USDA, “International Food Security Data Set,” 2014년 7월 1일 업데이트.

http://www.ers.usda.gov/data-products/international-food-security.aspx#U8ZaHpR_syH (검색일: 2014년 7월 16일).

<표 2-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전체 곡물수입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00년 1772MT에서 2013년 340.1MT으로 변한 것이 뚜렷한 증좌이다. 2005년부터 곡물수입이 크게 줄어들더니 2007년 903.3MT으로 증대하다가 그 이후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대남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파상적 대북 제재와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식량지원 감소, 그리고 북한의 곡물수입 능력 하락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가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곡물

생산량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곡물수입량 감소를 곧 식량안보 상황의 악화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로 주목할 현상은 식량권과 직결되는 1인당 곡물/채소 가용량은 약 158.4kg과 173.5kg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물론 2000년에 비해 2013년에 약 8kg 증대해 식량 불안전 상태가 서서히 호전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지만 전체 북한 주민의 70%가 식량이 부족한 실정¹⁶을 감안할 때 북한 정부의 단속적(斷續的)이거나 제한적인 농업개혁은 한계가 있다. 그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적정 식량권 확보를 위해 시장에 더 의존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3. 북한 주민의 식량권 평가

가. 전반적 평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에 2005년 이후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침해(식량배분 불공정 항목)는 전체 침해 사안들 중 3위로 11.5%를 나타냈다.¹⁷ 또 2012년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NKDB 통합인권 DB'에 수록한 북한 인권침해 사건 42,408건 중 인간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61.4%, 이주 및 주거권 침해 12.8%, 생명권 10.5%에 이어 생존권 침해가 4.3%를 차지하였다.¹⁸ 위 북한인권기록

¹⁵ <표 2-1>에서 2007년 곡물/채소가용량이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은 '7·1 경제개선조치'로 물가양동이 일어나 주민들의 식량가용성이 갑자기 낮아졌기 때문이다.

¹⁶ Stacey Rosen et al.,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14-2024*, p. 16.

¹⁷ 김태훈, “북한의 인권정책,” 대한변호사협회 편,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pp. 42~47.

¹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2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2), p. 223.

보존소는 10여 년 간의 북한 인권 침해사례 수집을 통해 생존권, 곧 식량권의 발생 빈도가 2000년대(240건)에 들어 침해 발생 비율이 낮은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생존권,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분야에서 일정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런 추세 평가를 북한의 사회권이 양호한 것으로 오독해서는 곤란하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사회권은 자유권과 함께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 및 신념의 자유 등이 악화된 상태에서²⁰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사회권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조사 분석한 북한의 식량권 실태에 시기, 지역 등을 대입시켜 살펴볼 경우 일률적이지 않다. 시기별로 볼 때 식량권 침해는 1990년대가 75.4%로 가장 많았고 2000년대 15.6%, 미상 6.1%, 2010년 이후 1.2%, 1980년대 0.8%의 순이다. 2000년대 들어 아사를 비롯해 식량권 침해가 1990년대의 1/5로 감소하며 개선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시장 확대와 중국과의 교류 증대로 식량 사정이 다소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별로 볼 때 주민들의 식량권 침해 사례는 함경남·북도가 77.8%로 가장 많았다. 그에 비해 황해남·북도, 평안북도, 그리고 평양시의 경우는 크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측은 증언자들의 출신 지

¹⁹ 윤여상,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와 향후 북한인권 변화전망,”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공동주최 토론회, 2012. 9. 5), p. 133.

²⁰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2 북한인권백서』, pp. 9, 14~16.

역과 함께 북한 내 지역별 차이를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해남·북도
와 평양시의 식량권 실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그 지역이 북한
내 곡창지대이고 북한 정부의 차별적 식량분배정책이 작용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²¹ 식량권의 지역적 실태에 관해서는 다른 분석도 나오
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팀은 최근 황해도의 식량사정
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을 황해도가 몇
해째 흉년이며 군량미로 식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과 장사 등 거래가 활발한 양강도 혜산시를 비롯한 북·중 국경지
역에 비해 오히려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식량사정이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²²

나. 분야별 평가

(1) 영양상태

식량권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영양상태는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관
심사이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안전하지 못한 음식 섭취
로 질병에 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220만 명이 음
식과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³

²¹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2 북한인권백서』, pp. 223~226.

²²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352, 428.

²³ Michael Moss and Neil Goughjuly, "Food Safety in China Still Faces Big Hurdles," *New York Times*, July 23, 2014.

표 2-2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영양상태	응답자 수	비율(%)
매우 호전	0	0
호전	12	10.0
보통	31	25.8
악화	69	57.5
매우 악화	8	6.7
합계	120	100

출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 355.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는 2000년대 이후에도 열악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2013년 통일연구원이 201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영양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다.(<표 2-2>)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식사량은 물론 위생, 의료 등에 걸쳐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영양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의 영양 부족에 따른 식량권 침해는 건강권 침해와 함께 나타나고, 극단적인 경우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특히, 각종 교정시설(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등)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 침해와 생존권 침해가 결합돼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극단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식량권은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위 통일연구원의 백서가 제시하는 식량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것들이지만, 이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 사정이 특정 집단에 국한돼 있다기보다는 그 중 극단적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는 ‘선군정치’를 주창하는 가운데 군인들에서도 양호하지만은 않다. 일반 사병들은 식량난 때는 물론 2000년대 들어서도 식량부족에서 벗어나지 못

해 민간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

(2) 식량 가용성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식량난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러나 불법적으로 나타난 장마당은 식량 가용성에 숨통을 트는 역할을 했다.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장마당에 나와서 생존을 추구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출근을 하여도 할 일이 없고 배급이 중단되어 먹을 것이 없자 공장 내 진료소에서 식결증을 발부 받아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²⁵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시장에 의해 주민들의 식량권, 특히 식량 가용성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통일연구원이 201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60.3%의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하여 식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3〉 참조)

표 2-3 북한 주민의 식량 구득 방식

식량구득방식	응답자 수	비율(%)
장마당구입	91	60.3
배급소	2	1.3
국영상점	0	0
연로보장	0	0
친척 및 지인도움	12	8.0

24. 이에 대한 군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교덕·정규섭·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참조.

25. 차문석,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인민의 생활,”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 2007. 6. 18), p. 34, ‘식결증’이란 식량을 구하러 가기 위해 3일 동안의 합법적 결근을 보장하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식량구득방식	응답자 수	비율(%)
농사(소토지 경작)	8	5.4
기타	38	25.0
합계	151	100

출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 342.

그럼에도 시장이 식량 가용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했다. 또 식량 가용성은 식량 수요량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 증대를 강조하여 왔다. 2013년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식량평가단(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CFSAM)을 파견하여 실시한 식량생산 조사에 따르면 2013~14년 양곡년도 총생산량은 2012년 573만 톤보다 5% 증가한 598만 톤이다. 그리고 2013~14년 곡물수급전망에 따르면, 도정할 경우 가용 식량생산량이 503만 톤, 수입예상량이 30만 톤으로 총 수요량 537만 톤 중 약 4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로 볼 때 총량적 식량 가용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북한 내 식량 가용성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북한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 대외교역의 제한, 자연 재해 등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일차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식 ‘주체농법’의 비효율성에 따라 식량생산이 정체되고 있다. 또 ‘선군정치’와 이에 따른 국방공업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자원이 식량 충당에 우

²⁶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p. 339~340, 417.

선적으로 배정되지 못하여 국가 전반의 식량 가용성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²⁷ 개인 차원에서라도 식량 가용성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다. 최선의 경우, 가령 배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소에 비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식량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은 장마당에서 구입하여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²⁸ 여기에 계층별,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도 일어나고 있다.

(3) 식량 접근성

차별과 불평등한 구조는 식량 공급 시스템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지역 간 차이다. 북한 식량생산량은 약 60%가 서해안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동서 간의 전체 생산량의 차이는 약 4배 정도이다. 이것은 식량 생산량의 시도별 구성에도 확인된다.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4도가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지역적 특성에 의해 서해안지대에서 동북지대로의 지역 간 식량수급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이는 식량 가용성의 지역별 차이를 말해주지만, 만일 비곡창 지역의 생산량 변동이 바로 기아로 연결된다면 결국 그것은 식량 접근성의 문제로 변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별전략에 의해 동북부에 대한 모든 식량보조를 박탈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 증거로 ① 동북부에 식량을 할당하는 WFP의 계획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대, ② 최초로 홍수가 발생하였던 1995년 8월부터 WFP 간부가 동북부를 방문한 1997년 5월까지, 외국 혹은 WFP의 인도적 식량지원, 상업 수입품이 동북부의 도(道)나 동해 항구에는 배급되지 않은 사실, ③ 동북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무상원조 식량을 받아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는 증언

²⁷- 위의 책, p. 339.

²⁸- 위의 책, p. 346.

1
2
3
4
5
6

등을 꼽을 수 있다.²⁹

중앙배급체계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식량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주민들의 식량 접근상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엘리트 집단과 일반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급 차별이다. 둘째, 일반 주민 사이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 심화이다. 대부분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못해 장사 등을 통해 자체 식량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식량 접근성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³⁰

식량 가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의 출신성분에 따른 북한 당국의 식량배분 정책은 식량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성을 양극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가에 의해 식량 접근이 보장되고 있다. 국가에 의한 배급체계의 혜택을 받는 엘리트의 경우에도 충분히 식량을 배급받는 상층 엘리트와 정량을 지급받지 못해 일부 부족량을 뇌물 등을 통해 채워야 하는 하층 엘리트 사이의 식량 접근성 차별도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업소의 여건에 따라 식량 접근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탄광, 수출기업, 군 관련 특수공장의 근로자들은 배급 사정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도 식량을 배급받더라도 생활에 충분하지 못하게 소규모를 비주기적으로 배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지역은 식량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농장원의 경우도 충분한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²⁹ 정광민, 『북한기근의 치경제학』, pp. 187, 190; 차문석,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인민의 생활,” pp. 70, 71에서 재인용.

³⁰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 341.

농촌지역의 생활이 어렵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최근 농민들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공출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동농장의 경우 국가에서 군량미를 지나치게 공출하는 것이 농장원의 식량사정이 나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출로 인해 농장원의 식량 가용성과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³¹ 이런 과정에서 식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하층 주민, 배급체계에서 가장 소외받은 노인과 아동은 식량 접근성이 낮은 집단이다. 군부의 식량 사정은 일반 사회보다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고 해서 모든 군인들이 넉넉하게 배급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군인들 사이에서도 계급과 복무지역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³²

이상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상황을 세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시한 네 영역 중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위 세 영역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영역에서 식량권도 양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식량권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결국 유엔 인권이사회 의 결의로 2013년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9개 ‘반인도적 범죄’ 목록에 식량권 침해를 포함시켰다. 조사위원회는 2014년 3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식량권 침해를 언급하며 그것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주민들의 굶주림을 불필요하

³¹- 위의 책, pp. 342~348.

³²- 위의 책, pp. 358~359.

게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경제 생산방식과 자원에 대한 차별적 분배 체계의 유지,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식량 사용,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식량을 몰수 강탈하여 다른 계층에게 제공하는 현상 등을 꼽았다.³³ 물론 이 보고서와 기존의 유엔 인권기구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상의 식량권 관련 내용이 정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³⁴

앞에서 영양상태, 가용성, 접근성 등 세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권 상황을 각각 살펴보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세 측면은 상호 긴밀히 맞물려 하나의 식량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셋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식량 가용성+접근성+a=영양상태’로 본다면 가용성이 2010년대에 들어 다소 호전되고 있어 일부 계층과 지역에서 영양상태의 부분적 호전을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자연재해의 감소와 북한 정부의 식량 증산정책의 결과 식량 생산이 증대하고 대외원조 요청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이 결과 지표상의 식량 가용성, 곧 소비를 위한 주요 식량의 1인당 가용성이 얼마나 증대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가용성 증대를 가져온 식량공급 증대가 안정적인지 지속적일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유무형의 차별이 초래하는 낮은 접근성,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의 농지 상태 등이 겹쳐 주민들 전반의 영양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다는 관찰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은 각 측면별 개선은 물론 측면들 사이의 관계까지를 고려한

³³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uncil, Twenty-fifth session, A/HRC/25/63 (7 February 2014)

³⁴ 헤이즐 스미스,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국가인가: 식량권 침해에 대한 ‘상식’화된 가설 분석,” 『창작과비평』, 161호 (창작과 비평, 2013) 참조.

종합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IV.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

1. 긍정적 영향

1990년대 대규모 북한 주민의 아사는 계획경제의 문제, 대외적 상황 변화만이 아닌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그 일환으로서 시장화가 북한경제의 회생과 주민의 식량권 회복에 주요 관건으로 부상함을 알 수 있다. 경제개혁과 시장화는 계획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식량권 증진 의지와 조건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1990년대 이래 계속된 식량 부족은 북한 주민의 이탈과 함께 시장화 현상을 가져왔고, 그 시장을 통해 주민들은 생존을 추구하였다. 시장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은 △생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 획득의 장, △시장화가 낳은 새로운 경제·사회생활양식의 원천 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

먼저, 곡물생산의 절대부족과 분배체계의 붕괴로 시장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존 공간으로 다가갔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장터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식량을 얻을 수 있고, 공장보다 더 많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³⁵ 주민들은 공안기구의 감시 속에서도 일차적으로 생존을 위한 ‘식량 찾아 나서기’를 지속할 것이며, 이윤의 획득 및 확대를 위해 공장·기업소·관료기관의 출근은 요식행위에 그치

³⁵ 김중욱, “북한의 정치 변화와 주민의 생활: ‘김정일체제’ 이후,”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 2007. 6. 18), p. 25.

고 시장교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장에 일정 정도의 현금만 바치면 출근의 의무를 면제받는 ‘8.3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생존수단 획득이 훨씬 많은 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³⁶ 그곳이 바로 시장이다.

배급체계가 작동하는 평양의 경우에도 식량이나 돈 걱정 없이 사는 소수의 상위 계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배급받은 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대신 옥수수쌀로 바꾸어 먹는 형편이다. 도시지역이란 소토지 개간이 어렵기 때문에 밥 외에 반찬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다. 특별 공급으로 나오는 고기는 보관해두었다가 팔거나 생일에 먹기도 한다. 과일을 공급받을 경우 살림이 넉넉한 아는 집에 찾아가 시장가격보다 싸게 팔기도 한다.³⁷

이처럼 시장이 생계수단의 구입, 교환, 판매 등의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특히 식량권 개선에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시장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학습하고 이익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이윤을 남겼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선 등을 함경북도 청진에서 구매한 후 가격이 비싼 무산 등지에서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는 증언은 그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³⁸ 이런 증언은 여러 곳에서 재확인된다.

둘째, 시장은 주민들에게 급박한 생계수단을 구할 장소는 물론 새로

36. 양문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p. 89.

37. 좋은벗들 편,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서울: 정도출판, 2006), p. 21.

38. 강철,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식량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 자료.” 미발표자료, 2014년 7월 24일.

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장이기도 하다. 물론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도 주민들의 생활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주민들의 시장활동을 통한 정보 습득에 비해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북한 관영방송은 ‘새로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 역부족이고 불법적인 방송 청취나 영상 시청은 위험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시장은 그곳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주민들이 경험하거나 대면 의사소통(face-to-face communication)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직접 생산, 유통해 그 진실성과 현장성이 높다. 여기에 보다 많은, 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 경쟁까지 일어난다.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시장이 확대되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남보다 정보 선점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다. 특히 쌀 가격이 모든 시장 물가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대외지원에 대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얻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진다. 시장은 물물교환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³⁹

주민들이 시장에서 습득하는 정보는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있다. 북한의 대도시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최신 전자 제품들이 상당히 유통되고 암시장을 통해 농촌에서도 돈만 있다면 DVD플레이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정보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자제품과 기록물 등에 대한 검열·단속을 전담하는 ‘109상무’가 생겨났다고 한다.⁴⁰ 이는 소위 외부 정보가

³⁹ 장철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침해 실상과 방안,”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동주최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자료집, 2011. 2. 23), p. 8.

⁴⁰ 백승구, “북한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자제품 현황,” 『일간조선』 8월호 (조선일보사, 2011); 서운환,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실태,”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2012. 9. 5), p. 41에서

1
2
3
4
5
6

북한에 유입되어 북한 주민들이 비사회주의적 생활문화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⁴¹ 이런 현상도 시장화, 특히 북한 주민의 시장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 및 소통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셋째, 시장을 통한 생계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시장을 바탕으로 주민의 새로운 생활양식이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있다. 정보유통, 사회적 관계 재형성, 경제적 사고의 증대, 개인 및 체제 미래에 대한 대중여론 형성 등 시장이 사회변화의 주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의 경제생활에서 장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적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장사, 빈부 차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직업과 노동에 대한 심성 변화가 그것이다. 이런 점들은 시장화의 확산 이전까지 주민들이 북한사회에서 거의 경험하지 않았던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 주민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 세 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삶을 강제하였다. 국가의 배급체계와 사회보장 속에서 부족하지만 가계경제를 유지하던 주민들에게 1990년대 식량난과 배급 중단, 공장 가동 중단은 주민들의 기존 생활 방식을 파괴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로 나타난 시장화는 새로운 경제관념들—이익 우선주의, 개인주의, 경쟁의식 강화 등—을 심어주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긴급한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장터에 나가 장사에 뛰어들면서 거래와 교환 행위가 생계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장터, 교환, 거래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상행위가 ‘생계윤리’ 차원에서 정당한 행위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은 생계를 국

재인용.

41.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pp. 69~105.

가에서 보장해 주던 시절의 도덕적 행위준칙이 더 이상 주민의 일상에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고난의 행군 초기 생계 수단에서 출발했던 사적 경제활동이 공식 직장보다 더 중요해졌다. 공식 직장에서의 노동은 국가규율의 틀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되, 실제 먹고 사는 문제는 장터 활동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나 갔다. 이점은 시장이 계획을 보완(혹은 대체)하며 주민의 생계문제에 뚜렷한 대안으로 부상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주민들의 이중 경제 활동, 특히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추세가 자리 잡아 가면서 직장을 통한 국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⁴²

이렇게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에 긍정적인 것만 아니라 정보 공유 및 시장친화적인 경제생활양식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시장에서 정보 공유 및 신 경제생활양식의 체득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식량권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정적 영향

시장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긍정적, 부정적 양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경험적 차원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주민의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시장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은 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부패는 시장의 활성화 속에서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 즉 정치자본의 형성과 그 영향력을 통해 발생하고

⁴² 홍민,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의 생활: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의 변화,”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 2007. 6. 18), pp. 88~89, 93.

있다. 북한 관료들은 1990년대 이후 정치자본을 활용하여 시장에 개입 하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은 기존의 사회적 권력 관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의 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태도는 묵인, 단속, 합법화 등 불규칙적이었지만 수요의 자체 해결능력의 한계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다. 당·정·군 기관들의 외화별이사업 회사들, 그 밑에서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무역 활동을 하는 ‘돈주’들, 도·시·군당 및 인민위원회, 보안서 등 지역 권력기관들과 현장 일꾼들, 그리고 생계차원에서 시장 활동을 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연계된 피라미드형 시장 구조는 여러 유형의 상호 결탁과 배제의 방식으로 부패와 시장을 동시에 확대시켜 나갔다.⁴³

이런 시장 부패구조가 시장을 통한 식량권 개선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4중 피라미드 위계의 최하위에 놓인 일반 주민들은 3중의 압력 속에서 생계를 위한 시장활동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당·정·군 각급 조직의 무역회사들의 외화별이는 국정 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를 늘려 그 차익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당·정·군의 외화별이는 시장세력과 결탁하거나 스스로 시장세력이 되었고, 시장가격의 양등은 일반 주민들의 식량 및 생필품 구입을 어렵게 하였다. 그들은 독점적 상품 공급, 시세차익, 단속과 뇌물 요구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익, 곧 지대를 추구한다. 이들 시장세력들의 결탁 아래 만들어지는 부패는 주민들의 합법적인 시장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통한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단속을 피하거나 상행위를 허용 받기 위한 뇌물 상납, 수입품과 유통비용의 상승 등이 그 예이다.

⁴³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63~72.

한편, 시장 부패가 식량권에 미치는 원인(遠因)으로는 배분과정의 왜곡을 들 수 있다. 국가물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착복한 물품을 암 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점취하는 부패행위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일상생활용품은 상업성 중앙도매소 → 각 도 출하도매소 → 지역별 지구도매소 → 시·군 상업관리소 → 일선 상점의 매대를 통해 전달된다. 그런 유통과정에서 중간관료들의 물품 착복으로 인해 상당 부분이 유실된다. 이와 같이 국가 물품의 분배와 교역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횡령과 뇌물은 국가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결국 북한 주민의 식량권 등 대중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⁴⁴

둘째, 시장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단속도 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한다. 시장을 통제 관리하는 안전원, 규찰대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단속, 그리고 신소를 무시하는 태도는 시장이 주민들의 식량권에 주는 부정적 현상의 일부이다. 연로한 상인의 상품에 대한 무상몰수와 신소를 단념케 하는 취조행위, 그리고 안전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상인들과의 차별은 그 단적인 예이다.⁴⁵ 이처럼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을 허용하면서도 장사가 가능한 구역과 연령을 제한하고 벌금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런 제한과 차등이 뇌물을 낳기 마련이다. 생계의 대부분을 시장에 의존하는 주민들의 상행위에 대한 단속은 식량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단속원과 그 윗선이 불법 착복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판매(혹은 구매) 물품이나 시장활동의 수익을 빼앗아가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순찰대들의 장마당 단속은 명절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 그런 물품 단속과 함께 장마당 장사를 일정 기한 중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더 많은 뇌물이 필요하게 된다. 북

⁴⁴ 위의 책, pp. 163~164.

⁴⁵ 좋은벗들 편,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44.

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순찰대가 장마당을 단속할 때 ‘매탁중지’라는 것이 있는데 짧게는 10일, 길게는 30일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된다. 이때 장사를 재개하기 위해 5,000원 규모의 뇌물이 쓰인다고 한다.⁴⁶ 시장의 부패가 주민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시장의 확산과 함께 상인들 사이의 소득 양극화도 시장이 드러낸 그림자이다. 북한에서도 상인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거래에 관여하거나, 물품 유통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거나, 돈주와 같이 권력의 보호 아래 장사를 하는 소수 계층만이 이익을 늘려갈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상인들에게는 장세와 판매대 사용세도 부담스럽다고 한다. 장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거리 곳곳에서 노점상을 펼쳐놓고 인민보안원의 단속에 시달리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⁴⁷ 말하자면 북한에서 시장은 상인들을 생계형과 이윤형으로 분화시켜 이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형 상인은 가내 편의옷 수리상, 의복 수선업자, 연탄 유통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윤형 상인들은 식용기름 밀매, 그물 생산 및 판매, 가루비누 상인, 얼음과자 생산업자, 나아가 연탄 생산업자, 무역업자, 대규모 유통업자들이다. 이윤형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윤의 크기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장마당에서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과 목돈이 없이 상행위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시장에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권 위협이 시장화의

⁴⁶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pp. 147~148.

⁴⁷ 좋은벗들 편,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64.

부정적 영향인가 하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직면하는 식량권 위협은 시장화가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화폐개혁이 물가양등, 식량 수급 격차의 증대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일반 주민들이 적응하면서 식량에 대한 최악의 접근 상황은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화폐개혁 이후,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사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하였다.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최하층의 경우 극단적으로 현물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⁴⁸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시장화는 낙오자를 낳고, 시장에서 배제된 주민은 시장화가 낳은 식량권 침해의 희생자가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화가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식량 및 생필품을 기존 배급체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상, 시장이 주민의 생존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관찰자의 분석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이 주민의 식량권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계획의 부족을 보충하며 계획과 공존하는 북한의 시장은 부패를 동반하고 있다. 시장의 부패를 잉태시키는 피라미드 구조는 그 최하층에서 생계형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의 식량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 시장활동 주민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물론 시장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도 시장과 식량권의 관계를 논할 때 소외시킬 수 없는 영역이다.

1
2
3
4
5
6

⁴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272.

V. 요약 및 평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 유지해왔지만 계획의 불완전성과 부족경제로 인해 시장의 보완적 역할은 처음부터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분배시스템이 붕괴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시장은 국가의 규제와 묵인, 대중의 강력한 필요에 의해 꾸준히 성장해왔다. 북한경제는 이제 시장 없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시장 없이 통치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북한에서 시장은 계획을 보완 혹은 대체하며 미래 예측의 강력한 변수로 부상하였다. 북한의 지배세력 입장에서 시장은 통치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은 속성상 그런 제한을 뛰어넘는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시장은 생존의 구조선(救助船)이었고 이제는 대안적 삶의 안내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시장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연구는 이런 의의를 갖고 있다.

연구 결과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은 그 빠른 발전과 함께 주민들의 식량권에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뚜렷한 영향을 미쳐왔다. 대중의 영양 상태, 식량 가용성, 식량 접근성 등 식량권의 구성 요소들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은 2010년대에 들어 식량증산의 영향으로 가용성에 있어 이전에 비해 일부 호전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 식량정책 인프라 등 고질적 문제들과 맞물려 주민들의 전반적인 식량권은 큰 진전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물론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부족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북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현지 조사 및 보고로 식량권 전반에 대한 평가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유엔이 제시한 식량권 측정 지표를 북한의 사례에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 한계도 지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런 지표를 적용해 추상적이고 심정적인 식량권 논의를 극복할 방향을 제시한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의 목적, 즉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치는 관계는 논의 결과 양면적으로 나타났다. 계획경제의 배급체계의 붕괴가 가져다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시장은 이탈과 죽음과 같은 극단적 선택지를 제외하면 유일무이한 생존 공간이자 수단으로 작용했다. 북한 주민들이 절대적 식량부족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상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이 식량권 증진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리는 이를 북한의 경우만이 아니라 남한과 같은 시장경제체제 하의 국가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 시장화는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시장‘화’는 상품화, 달러화, 민영화 등을 동반하면서 그것이 주민들의 전반적인 식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은 관찰이 요청된다. 식량권의 측면에서 관건은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권력과 결탁하느냐의 여부이다. 이미 북한에서 급속한 시장화는 부족의 보충, 생존의 버팀목을 넘어 정치자본과 경제자본의 결탁을 촉진하면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이 절대적 식량부족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시장은 주민의 식량권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통제되지 않은 시장은 탐욕스러운 인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 주민의 식량권 증진을 위해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크게 보면 배급체계의 정상화를 통한 식량권 보장, 시장을 통한 보장, 두

1
2
3
4
5
6

길이 있을 수 있다. 현실가능성을 고려해 전망해볼 때 후자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부패와 권력이 작동하는 시장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식량권 침해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식량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적 시장’ 혹은 ‘책임있는 시장’을 구상해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선택은 북한 사람들에게 있다. 거기에 남한과 국제사회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남한은 시장경제를 채택해오며 그 양면을 경험해왔고 또 통일을 준비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식량권 신장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수암·이금순·김국신·홍민.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2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2.
- 이교덕·정규섭·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이 석.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서울: 시대정신, 2005.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4.

2. 논문

- 강 철.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식량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 자료.” 미발표자료. 2014년 7월 24일.
-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2008~2011.”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사연구소), 2012.
- 김종욱. “북한의 정치 변화와 주민의 생활: ‘김정일체제’ 이후.” 『북한사회변화와 주민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 2007년 6월 18일.

1
2
3
4
5
6

- 김태훈. “북한의 인권정책.” 대한변호사협회 편.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0.
- 백승구. “북한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자제품 현황.” 『월간조선』. 8월호 (조선일보사), 2011.
- 서윤환.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실태.”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 인권 변화 전망』.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2012년 9월 5일.
- 양문수.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_____.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_____.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2014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윤여상.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와 향후 북한인권 변화전망.”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공동주최 토론회, 2012년 9월 5일.
- 이 석. “2014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관찰, 분석, 그리고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장철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침해 실상과 방안.”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동주최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자료집, 2011년 2월 23일.
- 정은이. “북한시장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분석: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전

- 을 기반으로.” 『북한경제리뷰』.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차문석.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인민의 생활.”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 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 2007년 6월 18일.
-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 문제연구』. 제23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 헤이즐 스미스.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국가인가: 식량권 침해에 대한 ‘상식’화된 가설 분석.” 『창작과비평』. 161호 (창작과 비평), 2013.
- 홍 민.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의 생활: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의 변화.”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 2007년 6월 18일.

3. 기타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wenty-fifth session. A/HRC/25/63. 7 February 2014.
- Moss, Michael and Neil Goughjuly. “Food Safety in China Still Faces Big Hurdles.” *New York Times*. 23 July, 2014.
- OHCHR. *Draft Guidelines: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Geneva: OHCHR. 2002.
- OHCHR.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Geneva: OHCHR, 2012.
- Rosen, Stacey, Birgit Meade, Keith Fuglie, and Nicholas Rada,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14-2024.” Economic Research Service/USDA. GFA-25. June 2014.

1
2
3
4
5
6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대상 및 범위

II. 회령시장권 주민가계(家計)조사 및 계층분화

1. 주민세대 조사: 인민반
2. 계층분류: 9개 소비지표

III. 소비와 시장의 주체

1. 소비의 주체: 계층별 쌀 소비량 추정
2. 순환 '밀천'의 생성 메커니즘과 회전을

IV.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

1. 의식주 수준의 향상
2. '기회'의 확대와 '자기개발의지'의 확대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북한에서 시장의 확대에 따른 주민 간 경제적 격차가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¹ 아울러 이러한 인권변화가 북한 주민의 삶, 나아가 체제이행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인구감소의 주 원인이 식량난에 따른 기근이었다는 데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² 심지어 인육(人肉)을 먹었다는 증언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³ 그만큼 1990년대 북한 주민은

¹ 이 연구는 경제적 계층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를 전개하므로 별도로 시장화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시장화와 관련된 논의는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현상』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박형중, “북한시장화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4호 (한국정치학회, 2012); 이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김석진,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개념적 검토,”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 산업과 기업: 회복실태와 작동방식』 (서울: 산업연구원, 2010);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4)를 참조.

² 1990년대 북한의 식량문제에 관해서는 A·S·나치오스, 『北朝鮮飢餓の眞實』 (東京: 株式會社 扶礎社, 1999);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서울: 시대정신, 2005); Smith, Heather,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Stasis or Reform?,” *Brookings Discussion Papers in International Economics*, No. 133 (July 1997), <<http://www.brookings.edu/views/papers/bdp/bdp133/bdp133.pdf>>; Noland, Marcus·Haggard Stephan “Famine, Market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December 2005), <http://www.aeaweb.org/annual_mtg_papers/2006/0107_0800_1502.pdf> 참조.

³ 기근에 직면했을 때 인육을 먹었다는 증언은 중국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대약진 시기 5천만 이상이 기근으로 사망했으며, 인육을 먹었다는 증언이 있다. 이는 헤ッカー·ジャスパー, 川勝貴美 역, 『餓鬼—秘密にされた毛澤東中國の飢饉』 (東京: 中央公論新社, 1996)를 참조.

1
2
3
4
5
6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었다.⁴ 반면에 2000년 이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이와 상반된 증언을 한다. 가령 아사자는 ‘머저리’⁵취급을 당한다. 학생의 등교율이 90%를 넘는다. 시장에서 파는 품목이 쌀을 비롯해 원단, 가구, 건축자재 등 다양해졌다.⁶ 각 가정에서는 컬러TV, 랩톱기(냉장고), 록화기(녹음기),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을 소유한 소비계층이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토바이가 주민의 이동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살던 집을 개조하는 등 이른바 ‘집수리(remodeling)’ 붐이 일고 있다.⁷ 바꿔 말하면 2000년 이후 주민 중에는 ‘먹는(食)문제’와 ‘입는(衣)문제’를 넘어 ‘주거(住)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물질적 수준이 향상된 소비계층이 생겨났다. 이 변화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재 범위가 ‘비내구재(non-durable goods)’에서 ‘내구재(durable goods)’로 확대됨과 동시에 주민이 가용할 수 있는 유동(flow)자본의 크기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구매력(consumer purchasing power)’ 향상과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의 증대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부의 기준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⁸ 1990년대만 해도 일제 자전거가 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대에 300달러 넘

4-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자체조달을 위해 소토지 경작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관해서는 정은이,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燒)토지 경작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4) 참조.

5-‘머저리’는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6-이에 관해서는 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9권 1호 (비교경제학회, 2012), pp. 264~265 참조.

7-이에 관해서는 정은이, “북한에서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2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3), pp. 268~270 참조.

8-이 내용은 북·중 접경지대 단동에서 대북무역업자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2014.07~2014.09.01 조사).

는 겐츠키⁹조차 대중화되어 적어도 자가용 정도는 보유해야 부자에 속한다. TV도 평면TV수준을 넘어 LCD나, 가전제품도 컴퓨터나 아이패드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계층을 달리했다. 심지어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을 파는 다방도 등장했다. 즉 시장의 확대·팽창은 주민의 물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격차도 발생시켰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시장의 확대에 따른 계층분화현상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의 삶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며 나아가 주민의 인권변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는 첫째,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시장의 확대에 따른 계층분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이러한 계층분화현상을 바탕으로 주민의 인권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병행했다. 첫째, 심층면접 방법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치밀한 묘사방법(thick description)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했다. 여기서 ‘치밀한 묘사’란 연구자가 면접대상자와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세밀한 의견교환을 하고 그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내면세계를 총체적으로 그려내는 연구방법이다. 둘째, 북한 ‘연고자(緣故者) 활용법’이다. 여기서 ‘연고자’는 남한과 북한, 중국과 북한 등 양측에 이산(離散)되어 북한 측 가족 등을 부양하는 일종의 디아스포라(Diaspora)로, 이들은 전화 등을 통해 북한 내외부와 실

1
2
3
4
5
6

⁹ 原付き(겐츠키)는 원동기가 달린 소형 오토바이를 말한다.

시간 통신을 유지하는 유일한 혈연관계자다. 따라서 ‘연고자 활용법’은 연고자가 주체가 되어 북 내부 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연고자 활용법을 적극 수용하여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다. 셋째, 영상자료의 활용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영상자료는 연구자가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지원 NGO·NPO, 저널리스트 및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현지인이 직접 북한내부를 촬영한 녹화물이다. 그 외에도 북·중 접경지대 조사 및 위성자료, 북한에서 출판한 공간문헌자료¹⁰를 활용하여 필자가 연구자로서 현지방문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3. 연구대상 및 범위

연구대상으로 회령시를 선택한 배경에는 첫째,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와 자료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즉 이 지역은 접경지대이므로 사람·물건·돈·정보 등 왕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2014년 현재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 중 회령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게다가 중국 쪽에서 관망할 수 있어 자료검증이 가능하다. 둘째, 청진과 같은 도(都) 소재지급 도시는 규모가 너무 크고 군(郡)급 도시는 너무 작다. 이런 의미에서 회령은 인구 15만 명 내외의 중소규모 도시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중국의 동북지역과 북한내륙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중요한 지역이다. 일제침략시기 회령에 길림을 연결하는 길회선(吉會線) 철도가 구축된 점을 통해서도 회령의 지리적 중요성

¹⁰ 공간문헌자료로는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평양: 도서교육출판사, 1989);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엮음, 『조선향토대백과』(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등을 참조.

을 알 수 있다. 넷째, 또한 회령은 회령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륙으로 관통하는 청진과 직접 연결된 철로와 육로를 구비하고 있다. 더욱이 두만강의 폭도 넓지 않고 도문이라는 중국의 비교적 큰 접경도시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로써 북한의 도시 가운데 회령이 지역연구로서 현재 최적의 위치에 자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 범위를 회령시 중에서도 회령 시장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며 시기는 2000년에서 2009년 화폐개혁 이전으로 국한한다. 물론 회령은 소규모 시급 규모의 탄광도시여서, 북한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계층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고려된다.

II. 회령시장권 주민가계(家計)조사 및 계층분화

1. 주민세대 조사: 인민반¹¹

회령시 주민의 가계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우선 회령시를 구역별로 나누고 각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수(世帶數)를 파악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이 연구는 우선 회령시 주민지역을 회령 시장권내로 한정했다. 회령 시장권내에 해당하는 구역은 조사결과, 오산덕동, 성천동, 동명동, 망양동, 세천동, 산업동 외에 대덕리, 금생리, 오봉리 등 총 9개 구역이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구역별로 인민반수를 조사했다. 이때

¹¹ 회령시장 반경 내 인민반에 대한 1차 조사는 2010년 6~7월, 2차 조사는 2012년 8월에 실시되었으며 주로 북·중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연고자 활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의 연고자는 이 기간 동안 회령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전화를 걸어 회령시 및 회령시의 인민반에 대한 조사를 상세히 실시하였으며 필자는 이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회령시 인민반 및 인민반 내부의 경제적 격차의 상황에 대해 파악·조사 분석하였다.

1
2
3
4
5
6

인민반수를 구역별로 하나하나 조사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방법보다는 회령시 Google 위성지도를 펼쳐 놓고 주민이 밀집된 구역과 덜 밀집된 구역으로 분류한 후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민반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오산덕동의 인민반수는 42개, 성천동은 30개, 동명동은 40개, 망향동은 30개, 금생리는 21개, 오봉리는 30개, 세천동은 20개, 대덕동은 30개, 산업동은 20개로 예측되어 9개 구역의 인민반 수는 총 263개로 추정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회령시장권내 구역별 인민반 수 추정

(단위: 개)

지역	오산덕동	성천동	동명동	망향동	금생리	오봉리	세천동	대덕동	산업동	합계
인민반 수	42	30	40	30	21	30	20	30	20	263

출처: 탈북자 인터뷰 및 북·중 접경지대 조사를 근거로 작성.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인민반에 속한 세대수를 각각 조사했다. 이때 각 인민반별로 세대수를 하나하나 조사하기보다는 각 구역의 인민반을 규모별로 세 부류로 나눈 후 세분화 작업을 시도했다.

표 3-2 규모별 인민반 구성 수 및 세대 수

한 개 인민반 구성 세대 수 (가구)	20	25	30	총 합계
인민반 수(개)	72	121	70	263
세대 수(가구)	1,440(20×72)	3,025(25×121)	2,100(30×70)	6,565

출처: 탈북자 인터뷰 및 북·중 접경지대 조사를 근거로 작성.

즉,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인민반 하나당 세대수가 20가구, 25가구, 30가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 법칙을 적용하여 인민반 수를 규모별로 세 부류로 나누어 조사했다. 조사결과, 회령시에는 20가구로 구성된 인민반 수가 약 72개이므로 이 경우 세대수는 총 1,440가구로 추정되었다. 또한 25가구가 모여 1개 인민반을 구성하는 경우는 총 121 가구로, 이 경우 세대수는 총 3,025가구가 되었다. 한편, 30가구가 모여 1개 인민반을 구성하는 경우 인민반 수는 총 70개로, 이 경우는 세대수는 총 2,100가구가 존재하여 결국 9개 지역의 세대 수는 총 6,565개가 되었다.

2. 계층분류: 9개 소비지표

한편 가계(家計)의 ‘소득(income)’과 ‘지출(outcome)’은 주민 간 경제적 격차(gap)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다. 그러나 북한 주민세대의 ‘소득’을 조사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많다. 무엇보다 배급제가 실질적으로 붕괴된 상황에서 주민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시장 활동의 많은 부문이 여전히 비(非)사회주의적 요소로 간주되어 회색지대에 속한다. 이러한 연유로 주민은 소득의 원천을 밝히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다. 반면에 ‘소비’는 소득의 표현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 외부에서도 제한적이거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소비패턴을 중심으로 회령시 9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가계조사 결과, 다음 9개 지표, 즉 직업, 주택, 가구 및 인테리어, 통신 및 이동수단, 의생활, 식생활, 자금보유액 등에 따라 계층이 상·중·하·극빈층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회령시에서 상층으로 분류되는 가계 세대주(世帶主)의 직업은

1
2
3
4
5
6

외화벌이, 무역업, 개인장사꾼¹² 및 화교였으며 이들 부인들은 주로 집에 앉아 세대주의 물자를 시장판매원이나 단골에게 도·소매로 넘기는 형태로 장사하여, 부인직업 또한 상층에서는 가계의 형편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은 시가 5천 달러 이상으로 좋은 위치에 입지한 새로 지은 현대식 고급아파트에서 살았다. 전기·수도는 100% 자체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TV용 전원 배터리 등 조명·전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도는 펌프를 사용해 해결이 가능했다. 통신수단으로는 집전화의 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휴대전화를 대부분 소지했다. 이동수단은 자가용 또는 국가 기관명칭인 전용차 혹은 편의차량으로, 이러한 차량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 옷차림은 자유로운 ‘돈주(錢主)’¹³ 취향이 풍기는 중고 일본제 또는 한국산 옷을 입었으며 최신유행을 추구했다. 식생활은 세 끼 쌀밥은 물론 매일 고기반찬을 먹었으며, 배급은 기관배급이 있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여서 팔거나 주변에 선심을 썼다. 가전제품은 컴퓨터가 있으며 TV도 평면 TV 및 전기 가마, 고압 밥가마(압력전기밥솥) 등을 일본제나 한국제로 보유하고 있었다. 소파나 침대 등의 가구 역시 보유하고 있었으며, 외화 보유액과 내화(이전)는 각각 약 5만 위안 이상의 금액과 수천만 원 이상을 보유했다. 주로 영어 등 자녀의 과외비용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다음 중간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의 직업은 안전원, 보위원 등 중간 간부계층으로 이들은 직위를 이용해 벌어들인 뇌물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인 또한 공무원으로 좋은 직책에 있거나 시장 또는

¹² 여기서 개인장사란 집에 앉아서 하는 장사를 가리킨다.

¹³ ‘돈주’에 관해서는 홍민·박순성 공편,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의 사이에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를 참조.

집에서 도매장사나 8.3입금 가내반원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집은 새로 지은 아파트 혹은 단층 독집이었으며, 집값은 3,000~3,500달러 수준이었다. 수도설비를 보면, 자체 수도펌프를 보유하고 있어 물 해결이 가능했으며 전기는 자체조명 및 TV용 배터리를 보유했다. 이동수단은 주로 ‘일제’ 중고자전거로 보급률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집전화도 50% 정도는 보유하고 있었다. 옷차림은 상층부의 자유로운 옷차림과 달리 사회주의 문화양식을 준수하는 정복차림이었다. 식생활은 하루 두 끼 정도는 백미이며, 나머지 한 끼는 강냉이 국수지만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¹⁴ 기관배급도 존재했다. 가전제품은 상층부가 주로 일본제나 한국제품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제가 많은 부문을 차지했으며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는 컴퓨터 외에도 전기발삼, 채가마¹⁵ 등을 쓰고 있었으며 현대식 인테리어를 갖춘 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구도 중국에서 수입한 침대, 소파를 보유했다. 외화보유액은 1만 위안 정도, 내화 보유액은 수백만 원 정도였다.

반면 하층부는 직업이 공장기업소 노동자 이외에 교원, 의사 등 일반적으로 비(非)권력기관의 사무원으로 부인이 90% 이상 사직을 하고 시장판매원(소매장사) 또는 인민반 여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주택은 30만 원(100달러)정도로, 대부분 하모니카주택 및 일부 낡은 아파트였으며 50%가 수동펌프 겸용 수도를 사용하였다. 가정용 승압변압기의 보급률은 100%가 넘으며, 이동수단은 50% 이상이 중고자전거를 보유했다. 의복은 중국제 기성복 또는 국내에서 생산한 옷을 입었다. 옷은 남녀구별 없이 국산 ‘장군님 잠바’ 또는 단체복이었다. 식생활은

¹⁴ 함경북도 주민의 경우, 세 끼 쌀밥을 먹을 수 있어도 식생활 습성상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국수로 먹는 것을 선호했다.

¹⁵ 여기서 ‘채가마’란 야채를 의미하는 채소와 솔이라는 가마가 합쳐진 말로 중국어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른바 전기후라이팬이다.

배불리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두 끼 이상은 먹었다. 밥은 쌀밥 또는 시라지(시래기)+비지+강낭쌀, 죽은 국수 죽이며 고기는 1년에 몇 번 기억날 정도로 먹었다. 가구는 옷장, 이불장, 찬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로 낡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TV, DVD 등도 함께 보유했다. 장판은 중국제 비닐레자(바닥장판제)를 깔고 있었다. 특별한 보유액은 없었으나 돈주나 화교 집에서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 오고 정기적으로 입금시키는 신용장사의 형태로 장사했다.

다음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은 독거노인, 노인부부, 병약자, 장애인 등 주로 노동력을 상실한 계층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폐품을 수집하거나 탄광에서 석탄을 수집, 또는 공장에서 코크스 흘린 것을 주워 팔아 연명하고 있었다. 주택은 도시 주변부에 나가 거주했다. 이곳은 전기도 없으며 식수 또한 강물이나 우물을 길어 충당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으로 구분되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젊은층이 거의 살지 않으며 조직생활도 없었다.¹⁶ 옷은 장마당의 누더기 매대에서 국산 중고 옷을 주로 사 입었다. 식생활은 매일 죽(국수+시라지+콩두부찌개)으로 하루 한 끼 겨우 연명하고 살고 있으며, 부인의 직업은 의미가 없었다. 가구 또한 별로 없으며 보유한 자산은 몸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층 간 소비패턴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¹⁶ 한때 빈민촌이 생겼다가, 김정숙 꾸리기로 비정치적으로 추방되기도 하였다.

표 3-3 계층별 소비수준

		상층	중간층	하층	극빈층
비율		1%	2%	87%	10%
직업	세대주	무역, 외화벌이, 개인장사꾼 (얇은장사), 학교	중간간부, 안전원, 보위원	대부분 노동자, 공장기업소 기술자, 평교사, 일반 의사 등 보통(비권력기관) 사무원들	무직, 독거노인, 노인부부, 병약자, 장애인 등 노동력 상실자, 폐품수집, 탄광에서 석탄 수집, 공장의 코크스 출린 것 줍기
	부인	남편 물자를 집에 앉아서 시장과 단골에게 도, 소매	공무원 좋은 직책에 있거나 시장 or 집에서 도매 장사, or 83입금 가내반원	90% 이상이 직장 사직하고 시장판매원 (소매장사), 인민반 여맹원	의미 없음.
주택	가격	5천 달러	2천5백~ 3천 달러	100달러	도시의 주변부로 밀려남, 빈민촌이 생겼으나 김정숙 꾸리기로 비정치적 추방꾼이 됨. 젊은층 및 조직생활 없음.
	연식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단독 주택	하모니카 주택 ¹⁷	
수도		자체동력펌프 (100%)	자체동력펌프 (50%)	수동펌프 검용수도	강물이나 우물 물을 길어 음 열악한 생활환경

17. 하모니카는 직사각형의 틀에 조그마한 칸을 여러 개 만들고, 칸마다 쇠붙이 서를 끼워 만든 작은 관악기이다.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집은 바로 이러한 하모니카 모양에 빗대어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집들은 한 칸에 4명 정도가 살지만 간혹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도 있다. 그럴 경우 집 중앙에 칸막이로 벽을 만들고 출입문과 부엌도 따로 내어서 산다. 남에게 세를 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돈을 받고 빌려준다. 이 아파트는 옷방, 아랫방 등 방 2칸에 부엌이 하나, 문(門) 하나로 복도도 없으며 문을 열면 바로 방이 보이는 구조다. 이에 관해서는 정은이, “북한에서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p. 249 참조.

		상층	중간층	하층	극빈층
비율		1%	2%	87%	10%
전기		자체 조명, TV 전원 배터리 ○	자체 조명, TV 전원 배터리 ○	가정용 승압변압기(100%)	X
가 구 및 인 테 리 어	가 전 제 품	컴퓨터, 평면 TV, 전기밥솥(일본, 한국제품)	컴퓨터, 현대식 인테리어 (50% 이상), 전기밥솥 (중국제)	흑백TV (10% 이상), 절반 이상 없음.	거의 없음.
	가 구	소파, 침대 등	소파, 침대 등	옷장, 이불장, 찬장 등 낡은 것, 장판은 중국제 비닐레저(바닥에 까는 비닐 장판)	거의 없음.
통신		집전화, 휴대전화 대부분 보유	집전화 (50% 정도 보유)	대부분 없음.	없음.
이동수단		국가 기관명칭 전용차 or 편의차량	일본 중고자전거 보유(50%)	중고자전거 보유(50% 이상)	없음.
의생활		중고 일본, 한국제	사회주의 문화양식 준수, 정복차림	남녀 구분 없이 국산 “장군님 잠바” or “단체복”	누더기 매대의 국산품 중고옷을 구입
식생활		매일 고기, 매끼 쌀밥, 무시 있어도 그냥 팔거나 선심 씀.	두 끼 백미, 강냉이 한 끼 배불리 먹음, 기관배급 있음.	두 끼 이상 먹음 쌀, 시라지(시래기) +비지+강낭 쌀, 국수죽, 명일에 입쌀, 고기는 1년에 한 두번 기억날 정도임.	하루 한 끼 겨우 식사 매일 죽(국수+시라지) +콩두부찌개
화폐 보유 액	외 화	5만 위안 이상	1만 위안	특별히 없음. 장사 밀친 물건은 돈주나 화교집에서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정기적으로 입금시키고 신용유지	없음.
	내 화	수천만 원 이상	수백만 원		

출처: 탈북자 인터뷰 및 북·중 접경지대 조사를 근거로 작성.

Ⅲ. 소비와 시장의 주체

1. 소비의 주체: 계층별 쌀 소비량 추정

2장에서 회령시 주민에 대한 가계조사 결과, 북한에서 현재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계층이 상·중·하·극빈층으로 분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서 소비계층을 구분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의·식·주 중심이며, 국민경제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의식주’ 그 중에서도 ‘식’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바꿔 말하면 회령시장에서 ‘식’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는 주체가 하층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보다 첫째, 회령시 주민세대를 상·중·하·극빈층으로 나누고 그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 하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먼저 한 개 인민반이 20가구로 구성된 경우의 세대수는 총 1,440가구였으며, 이 세대를 다시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상층이 15가구, 중간층이 30가구, 하층이 1,251가구, 극빈층이 144가구였다. 한편 인민반 하나가 25가구로 구성된 경우의 세대수는 총 3,025가구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층을 분류하면 상층이 30가구, 중간층이 60가구, 하층이 2,635가구, 극빈층이 300가구였다. 또한 인민반 하나가 30가구로 구성된 경우의 세대수는 총 2,100가구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상층이 21가구, 중간층이 42가구, 하층이 1,827가구, 극빈층이 210가구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각 인민반에 속한 세대들을 계층별로 합산하면, <표 3-4>와 같이 상층이 66가구, 중간층이 132가구, 하층이 5,713가구, 극빈층은 654가구가 된다. 바꿔 말하면, 상층은 전체의 1%, 중간층은 전체의 2%, 하층은 85% 이상, 극빈층은 전체의 10% 이하를 차지하여 하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가족구성원의

1
2
3
4
5
6

수로 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부각된다. 극빈층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부부 및 자녀 1~2명으로 이루어져 한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층부는 가족구성원이 노부부, 부부, 자녀 2~3명으로 이루어져 평균 가족 수는 6.5명이었다. 중간층은 부부와 자녀 3명 정도로 가족 수는 평균 5명이었다. 상층부는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져 가족 수가 평균 4명으로 극빈층 다음으로 적은 가족 수를 보유했다. 이에 근거하여 회령시 주민세대 가족 평균치를 추정하면 한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6.145명¹⁸이 된다. 이는 하층부의 가족 구성원 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서 기인된다.

표 3-4 각 계층별 세대수 및 비율

(단위: 가구)

계층구분	20(세대 수)	25(세대 수)	30(세대 수)	합계(세대 수)	비율(%)
상층	15	30	21	66	1
중간층	30	60	42	132	2
하층	1,251	2,635	1,827	5,713	87
극빈층	144	300	210	654	10
총 합계	1,440	3,025	2,100	6,565	100

출처: 탈북자 인터뷰 및 북·중 접경지대 조사를 근거로 작성.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계층별 주민의 쌀 소비 총량을 추정해 본 결과, 상층부의 한 가구당 쌀 소비량이 아무리 많아도 하층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기여도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물론 한 가구당 평균 1일 쌀 소비량의 관점에서 보면 상층부가 8.4kg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이었다.¹⁹ 이는 1인당 1일 쌀 0.6kg을 소비했으며, 쌀 소비

¹⁸ 한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5명×10%+6.5명×87%+5명×2%+4명×1%)/100=6.145명이 된다.

구성원 또한 가족구성원 4명을 포함하여 1일 평균 손님을 10명 정도 치러야하므로 가구당 소비량이 많았다.²⁰ 그러나 한 가구당 하루에 쌀을 소비하는 한계 소비량이 정해져 있어 상층부의 쌀 소비량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적었다. 즉 상층부는 66가구에 불과해 1일 쌀 소비 총량은 55kg이었다.²¹ 반면에 하층부는 한 가구당 1일 쌀 소비량이 3.25kg이다.

이는 상층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²² 세대수가 상층부보다 86배나 많아 1일 쌀 소비 총량 또한 상층부의 337.6배나 많은 18,568kg이었다.

표 3-5 각 계층별 한 가구당 하루 쌀 소비량 추정

	한 가구당 1일 쌀 소비량(kg)	세대 수 (가구)	계층별 1일 쌀 총 소비량(kg)	비율(%)
상	8.4	66	55	0.27
중	4.8	132	634	3.25
하	3.25	5,713	18,568	95.30
극빈층	0.35	654	229	1.18
합계	16.8	6,565	19,486	100.00

출처: 탈북자 인터뷰 및 북·중 접경지대 조사를 근거로 작성.

따라서 상층부의 1일 쌀 소비 총량은 전체 회령시 주민 소비량의 0.27%에 불과한 반면, 하층부는 95.3%를 차지해 회령시장에서 거의

¹⁹ 소비 구성을 보면 네 식구에 하루 손님 인원수가 10명 정도이다. 이들의 하루 소비량은 평균 1인당 0.6kg이다.

²⁰ 따라서 상층부의 한 가구당 하루 쌀 소비 구성원은 총 14명이 된다.

²¹ 8.4kg×66세대=55kg.

²² 소비자 구성: 식구(6.5명); 0.4(입쌀)+0.1(강냉이)=0.5kg/일×인.

대부분을 소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중간층은 쌀 소비 총량이 상층부보다는 많지만 역시 비율이 낮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즉 한 가구당 1일 쌀 소비량은 평균 4.8kg지만²³ 총 세대수는 132가구에 불과해 이들의 1일 쌀 총 소비량은 634kg에 머물렀다.²⁴ 이는 회령시 주민의 하루 쌀 총 소비량의 3.25%였다. 마지막으로 극빈층은 상층 다음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1일 쌀 소비량 자체도 0.35kg으로 가장 적을 뿐 아니라²⁵ 세대수 또한 654가구에 불과해 하루 쌀 총 소비량은 229kg으로 전체의 1% 정도의 비율이었다.

2. 순환 ‘밀천’의 생성 메커니즘과 회전을

2장의 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민가계 소비의 기본은 의식주며, 그 중에서도 쌀은 대표 소비품목 중 하나다. 그런데 회령시장에서 1일 쌀 소비 총량을 계층별로 조사한 결과, 하층부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상층부는 회령시의 쌀 소비 총량에 대한 기여도가 1%에도 못 미쳤다. 반면에 하층부는 한 가구당 쌀 소비량은 적지만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 기여도가 95% 이상을 넘었다.

이는 회령시장에서 하층부의 소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논거가 된다. 물론 소득창출 메커니즘을 보면 하층부는 주로 주민계층의 소수에 불과한 상층부로부터 ‘외상’으로 상품을 받아 시장에 소매로 판 후 판매총액에서 원금 이외에 이윤의 일부를 다시 상층부에게 돌려주고, 또 다음 장사를 위해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오는 형태로 장사를 하며 밀천을 보전(補填)하고 생계를 유지했다.²⁶ 그런데 여기서

²³ 소비자 구성: 식구 5명+하루 손님 3명; 0.6kg/인×일.

²⁴ 4.8(kg)×132(세대).

²⁵ 소비자 구성: 식구 3.5명; 입쌀 환산으로 0.1kg/일×인.

간과하기 쉬운 측면은 하층부는 다음 장사를 위해 ‘신용’이라는 장사 ‘밑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회전시키면서 장마당 경제를 순환시키고 있다는 점이 극빈층과 극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이었다. 이에 대해 탈북자 S씨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부자의 경우, 화폐가 외화로 사장되고 있으며 밑천 없는 극빈층은 집도 없는 꽃제비, 방랑자 수준이다. 반면에 주민 대부분은 하층민으로, 이들은 돈이 조금 있거나 또는 돈의 담보물이 있다. 여기서 담보는 집이라든가 사유재산이다. 1990년대부터 이미 집은 담보물이 되었다.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 그렇지 않으면 앓은 장사들이 돈이나 물건을 선불로 주지 않는다. 처음에 장마당에서 떡을 좀 팔고 싶다면 앓은장사들은 한 소랭이를 주고는 얼마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려면 미리 담보물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다. 며칠 그 집 가서 일 하면 된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제 없는 사람은 신용이 없는 꽃제비다. 자기 몸이 어지러워 음식물을 줄 수가 없다. 집도 없는데 달아나면 어떻게 물건을 선불로 줄 수 있겠는가?”(S)

그런데 하층부는 이 밑천을 보전하기 위해 매일같이 노동력을 재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消費)’가 필요하다. 소비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소모(消耗)’하는 행위다. 즉 이들은 장사해서(노동해서) 벌어들인 이윤 중 일부를 매일 생활에 필요한 쌀, 옷 등 소비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더욱이 식량은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모성이 높아 회전율도 빠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층부는 상대적으로 상층부에 비해 경제적 여유는 많지 않지만 자기 ‘밑천’을 가지고 노동력을 부가해 상품을 화

26. 2010년 현재 가계 총수입에서 남성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인 반면, 여성의 수입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하층민은 70% 이상의 소득을 시장에서의 장사를 통해 충당하고 있었다.

폐로, 화폐를 다시 상품으로 순환하는 민간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밀천에 의한 자립적 생활을 행하는 주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이윤으로 주민 속에 축적되는 것이다. 꽃제비는 밀천이 없는 계층, 돈의 담보물이 없는 계층, 신용이 없는 계층이며 상층 또한 직접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층은 자기 노력으로 이윤을 창출하며 이 이윤의 일부를 소비하며, 이 소비량은 절대적으로 많은 부문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다음 탈북자 D씨의 증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그냥 밥이나 먹으면 잘 산다고 한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 밥은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보통 국수장사하고 뭐해도 그런 집들조차 밥은 먹고 사는 것 같다. 나는 북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왜 사탕장사라도 못하는가? 왜 못사는가? (당국에서)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풀어놓으면 그 다음은 제 머리로 해야 한다. 풀어놓았다는 것은 장마당도 세워주고…… 사실 내가 제일 처음 장사 시작했을 때는 장마당이라는 것 활용하지 않고 했다. 나는 진짜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장사를 시작 했다. 한 3, 4년 정도 그렇게 힘들게 장사를 했다. 그래서 안전부 취조도 많이 받고 어렵게 장사를 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풀어놓았다. 무엇을 하든지 해서 살아라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왜 사람들이 굶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게으르니까 죽는 것이다. 사탕장사라도 해야지.”(D)

이러한 사실은 국내시장에서 상층부가 유통하는 화폐량보다 일반대중이 유통하는 화폐량이 훨씬 크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IV.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

1. 의식주 수준의 향상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주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징후를 여러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4가지 근거에 의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식’생활 측면에서의 변화다. 즉 2000년 이후에는 기존에 죽이나 국수 죽을 먹어왔던 주민들조차 ‘우리는 죽을 안 먹는다’에서 ‘죽을 어떻게 먹니?’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는 쌀 소비 총량의 측면에서 식생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지금은 밥을 큰 사발에 먹는 대신 작은 공기에 담아 우아하게 먹는 식기 문화가 중국에서 유입되어 주민 간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이는 주식 섭취량을 줄인 대신 육류나 채소 등 다른 부식물의 섭취량을 상대적으로 늘려 총열량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 식생활의 질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둘째, ‘의’생활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5장 6기 중 하나로, 부의 상징이면서 주요 혼수품목 중 하나인 제봉기가 사라지고 있다. 주민들이 시장에서 옷을 직접 주문해 입거나 기성복을 구입해 입으면서 더 이상 가정에서 옷을 기워 입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입는 부문에도 소비한다는 의미는 그 만큼 주민의 구매력(購買力)이 향상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셋째, 그러나 무엇보다 물질적 생활향상의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주’생활의 변화다. 즉 ‘주’와 관련된 재화(財貨)는 식 및 의와 관련된 재화보다 화폐유통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주거와 관련된 소비는 가전제품에서

1

2

3

4

5

6

인테리어, 주택구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북한에서 집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새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집 수리 이른바 ‘리폼(reform)’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또한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더 좋은 재화를 소유하기 위한 노력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만 해도 인민반 하나에 20가구가 거주했다면 TV보유세대가 2~3가구에 불과했으나, 2000년 들어 거의 모든 세대가 TV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전기를 이용해 밥할 수 있는 밥가마(전기밥솥), 전기로 채소를 볶는 ‘채가마’ 등도 각 가정에 구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전화보급률이 저조했으나 현재는 인민반 하나당 25~50%가 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이나 마루제품을 보아도 ‘레자’라 불리는 중국 수입장판을 깔았는데, 이는 평방미터에 얼마 하는 꽤 비싼 품목에 속했다.²⁷

이와 같이 주민소비의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유재산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민의 소비행태를 보면 종전과 달리 1세대 당 매일 쌀밥을 먹을 정도로 유통 가능한 밀천이 생겼다. 이는 부자와 같은 재산축적의 수준은 아니지만 저축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2. ‘기회’의 확대와 ‘자기개발의지’의 확대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에는 국가가 주민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배급 이외에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종의 세금처럼 무상으로 흡수해 개인의 사유재산 축적이 어려웠다. 따라서 주민 간 경제적 격차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²⁷ 물론 지금도 레자 대신 종이를 까는 가구가 있지만 이는 꽃제비 가구에 한정된 사례다.

1990년대 배급체계가 마비되고 공장가동률이 저하되자 유희 노동력이 대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활동이 활발해지고, 시장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그대로 개인에게 재분배되면서 구매력을 가진 주민계층이 생겨났다. 특히 밑천이 없어도 정보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간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특히 지역 간 상품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서 더 비싼 값으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거간에서 집 거간에 이르기까지 거간의 형태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부를 축적한 상인계층이 등장하고, 부의 재분배 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빈부격차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주민 간 격차는 주민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꽃제비와 같은 극빈층이 생겨났는가 하면 시장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새로운 시장계층이 생겨났으며 이들을 거울삼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주민들도 생겨났다.²⁸

“300세대가 사는 마을이다. 계획경제시대에 이 사람들은 모두 못 살았다. 그러나 못 살던 사람이 돈을 쥐면서 위치가 달라졌다. 당 비서는 자전거를 털털 거리며 타고 다닐 때 돈 있는 주민은 차를 몰고 다닌다. 이렇게 위치가 역전되었다. 이 사람이 300세대 안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 못한다. 머슴이 지주가 된 것이다. 그러면 우선 당 정책이 먹혀 안 들어간다. 우리사회주의 사상을 지키자고 하면 사람들은 ‘저건 무슨 소리야 밑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데’ 한다. 우리 북한에서는 이를 일컬어 사상이 허수아비 되었다고 한다. 기본 실권은 시장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고 ‘초상화 잘 닦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어’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단적인 실례다.”(P)

²⁸ 이금순은 식량난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 경제적 권리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서술했다. 이금순,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
2
3
4
5
6

따라서 개증에는 다음 탈북자 R씨의 사례와 같이 군중재판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경우도 생겨났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군중재판이 열렸다. S시 역 앞에도 독을 쌓아 놓았는데 거기서 군중재판이 벌어졌다. 아직도 생생한데 주민에게 공포를 주자는 의도로 벌인 것이다. 그런데 보니 내 친구가 뜻밖에 재판에 올라서 있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충격적이었다. 대체로 군중재판하면 강도처럼 승냥이를 회상했는데 너무도 내가 잘 아는 게다가 나와 근성이 같은 친구가 올라서 있었다. 재판내용은 이랬다. 집에서 약을 만들어서 10년간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상당한 흥미가 갔다. 저게 대체 뭘까? 왜 정부에서 단지 약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윤을 보았다는 것을 범죄 항목으로 넣었을까? 그때 나는 힌트를 보았다. 이 혼란의 시기에 나도 뭔가 먹고 살 전환의 계기를 잡아야 하는데 여태껏 공장에 나가 일만 했는데 무의식중에 군중재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갑자기 내 친구가 시장의 선각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3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다 나도 약장사를 하자, 제 친구처럼 모험적이지만 막대한 이윤이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하다 저의 어머니가 화학 기사였으니, 알약을 찍으려면 원료를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R)

무엇보다 주민 간 경쟁의식이 싹텄으며 북한에서 주택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빈부격차의 상징이다. 이는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생각하기 어려운 계층 간 수직 이동을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이는 다음 탈북자 K씨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제는 북한에서 인력을 모집할 때 성분을 보지 않는다. 시장 능력과 재정이 있으면 만사오케이다. 내 사장도 나를 보더니 당연히 합격시켰다. 우리 외화벌이 기지는 탄을 캐서 중국에 수출해 그 이윤을 인민무력부에 넣으면 무력부가 군부대 피복을 산다.

일종의 자금 마련 기지인데 이 외화벌이 기지를 관리하는 경영 일꾼들은 모두 나 같은 사민(일반 주민)이다. 하지만 일종의 시장에서 터를 잡은 사람들이다. 나도 이들을 통해 외화벌이 운영 방식을 배우고서는 직접 운영해 보고 싶었다. 뭐 외화벌이 기지라는 게 무역이라는 게, 아주 큰, 어떤 정부적인 어마어마한 것인 줄 알았는데 역시 이것도 사기업의 한 형태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중국에서 대방을 잡아보자고 2008년도에 중국에 나왔다.”(K)

즉 외화벌이나 무역일꾼은 특수계층이지만 시장능력이 있으면 일반 주민도 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 간 수직 이동은 기존에 특권층에게만 부여되었던 많은 ‘기회(opportunity)’들을 일반 주민 계층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함축한다.²⁹

“돈을 쥐고 나니 나에게 잠재된 욕구가 나타났다.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계기를 당 비서가 제공했다. 내가 일하는 H도 화학연합기업소 당 비서는 300명 정도 노동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한번은 나에게 2천 원만 쥐달라고 왔다. 그때 기쁨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다. ‘아 권력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구나’ 황송했다. 아니 ‘세상이 별나게 되어 가는구나’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보아온 ‘노예로부터 장군으로’라는 중국영화가 있는데 이것을 보며 항상 나는 노예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당 비서가 손을 내미는 순간 돈을 잃었다 기보다 갑자기 노예가 장군이 된 것과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것을 얻게 된 기분이었다. 내가 그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예전에 올려다 볼 수 없었던 권력이 시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때 나는 ‘아! 이게 계급이로구나, 계급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하고 깨달았다. 어쨌든

1
2
3
4
5
6

²⁹ アマルティア・セン은 민주주의와 개발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기회의 균등을 강조했다. アマルティア・セン(Amartya Sen), 石塚雅彦 역, 『自由と経済開発』(東京: 日本経済新聞社, 2000).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주민이 정치적 관심을 그렇게 해서 갑자기 가지게 된 것이다. 그때는 이미 권력관계가 아니고, 시장 관계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침없이 2천원을 당 비서에게 주었다. 상당히 잇을 수 없는 계기여서 기억한다.”(R)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민은 주어진 기회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동적 주체’에서 스스로의 삶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당 비서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보채지 않았다. 우리 친구 중에 간부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후에 받지 못해 그 아내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그걸 오히려 즐겼다. ‘아 이게 사회적 인맥이 되겠구나’했다. 돈 벌었다고 생각했다. 석 달쯤 지나니 당 비서가 먼저 나한테 찾아와서 ‘야 안 되었다. 돈을 제때 줘야하는데 미안하다’고 했다. 그 이후로 당 비서 부인이 명절 때마다 나에게 뭘 자꾸 가지고 찾아왔다. 그걸 받아든 순간 내가 일전에 간부 집에 보냈던 뇌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기서 큰 것을 보았다. 3년 전만 해도 명절 때 고기 1kg에 술, 담배를 가지고 당 간부집에 찾아갔고 이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다. 누가 지주고 머슴인지 분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1년쯤 지나니 나같이 사회적으로 성장해 돈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판 양반전이 벌어진 것이다. 나라고 이렇게 살겠나, 나도 사회적으로 한몫하고 싶었다.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욕구가 솟구쳤다. 이렇게 해서 당 비서에게 돈 대신 자리 하나를 요구를 했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져 걸끄러운 게 없다. 당 비서는 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R)

“그래서 이때부터 모르게 당증도, 대학졸업증도 매매가 되었다. 매매라는 것이 내가 당 비서에게 돈을 준다. 대신 당 비서에게는 권력을, 자리를 하나 달라고 요구한다. 일종의 매매다. 당 비서는 그 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나한테 자리만 하나 주면 되니 얼마나

이득이겠는가? 그때 내가 느낀 것이 가만 보니 앞으로 아!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발전성이 있겠다. 어쨌든 내 단순한 머리 상식으로는 권력을 쥐고 나도 시장을 해 보자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내가 권 것이 부동산 시장, 주택지도원 자리를 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를 손쉽게 손에 넣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 하니 대학졸업증, 부기자격증이 필요했다. 내가 갑자기 대학을 어디 다니는가, 1년을 통신으로 공부했지만 언제 공부할 시간도 없어 대학 학장을 찾아갔다. “저 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하니 학장님도 살아가야 하니 권력을 팔았다. 다 해주겠다. 문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해서 대학졸업증을 손에 쥐고, 부기 재정부 간부학교에서 부기졸업증을 쥐고, 결국 합법적으로 주택지도원 자리를 얻었다.”(P)

즉 기존의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제도를 향유하는 계층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하층의 적극적 요구는 권력을 가진 계층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권력도 어떤 권력이냐에 따라 다르다. 당중과 관련해 입당펀트라는 것이 있다. 펀트라는 것은 여기가 K대학이라 하면 K대학에 1년 입당할 사람들 2명 펀트 플러스를 주는 것이다. 즉 시·도 당에서 너희 K대학에 1년에 2명을 입당시키라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학장은 각 부서에다 생활 잘 하는 사람 10명을 올려 보내라고 하고 거기서 2명을 또 추려 입당시키는 것이다. 이걸 펀트라고 하는데 당 비서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즉 기존에는 정말 충실한, 성실한, 근면한 사람들 순서대로 입당을 시켰지만, 지금은 조직 비서가 부분당 비서들을 쫓 모여 놓고 ‘어디 입당 할 사람 한명 없어?’ 한다. 이때 분당 사람이 아주 고 지식하여 초상화 잘 닦고 일 잘 하는 성실한 사람을 추천하면 이 사람은 불합격이다. 이 사람은 ‘아 내가 왜 조직 비서의 의도를 몰랐을까?’ 하고 후회한다. 그 의도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펀트가 잘린 것이다. 일도 안 나오고 8.3돈으로 간부에게 돈을 잘 내는 사람이 이제는 입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당중 매

1
2
3
4
5
6

매형식으로 구도가 잡혔다. 이런 데서 같은 당 일꾼이라도 시장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잘 살고 이제처럼 아주 모르는 아직도 당성만 강조하는 사람은 못 산다. 같은 권력을 가졌지만 이렇게 분리가 된다.”(M)

이와 같이 시장 참여는 경제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라는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자립적이고 자생적 권리의식을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스스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냈다.

V. 결론

이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 북한 연고자 활용법, 북·중 접경지대 조사에 근거한 회령시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계층을 분류한 결과, 상·중·하·극빈층 등 4개의 계층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유재산의 축적이 주민 간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종전과는 달리 그만큼 북한에서 시장이 발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는 노동의 대가가 배급 이외에 국가로 전부 무상으로 몰수되었으나 현재는 시장을 통해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주민의 전반적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동시에 소득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소비에서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990년대 시장의 확대·팽창은 주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수준에 따른 새로운 계층분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어 꽃제비

와 같은 극빈계층이 생겨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생각하기 어려운 계층 간 수직 이동을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 되어 하층에서도 수직상승한 계층이 생겨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개발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즉 적극적인 존재로 변모하도록 하는 계층도 생겨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시장 신세대’, ‘장사꾼 세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은 성장과정에 형성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국가에 의존하는 배급문화가 아니라 ‘내가 내 돈 번다’는 시장경제의 주체로 또렷하게 자리매김하여 시장의 신용과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반면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통제만을 강화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주민의 충성도와 신뢰도를 약화시켜 불만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사회구성원에 침투되어 조직생활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의 일원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경제적 요인에 따른 계층분화는 향후 기존의 평등주의 교육과 무상제도를 운영하였던 사회에서는 더 큰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

2

3

4

5

6

참고문헌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엮음. 『조선향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 평양: 도서교육출판사, 1989.
- 김수암·이금순·김국신·홍민 공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현상』.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 이금순.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이 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 _____. 『1994~2000년 북한 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기근』. 서울: 시대정신, 2005.
- 홍민·박순성 공편.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의 사이에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 ヘッカージャスパー, 川勝貴美 역. 『餓鬼—秘密にされた毛澤東中國の飢饉』. 東京: 中央公論新社, 1996.
- A・S・ナチオス. 『北朝鮮飢餓の眞實』. 東京: 株式會社 扶礎社, 1999.

アマルティア・セン(Amartya Sen). 石塚雅彦 역. 『自由と經濟開發』.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00.

2. 논문

김석진.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개념적 검토”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
산업과 기업: 회복실태와 작동방식』. 서울: 산업연구원, 2010.

박형중. “북한시장화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4호 (한국정치학회), 2012.

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
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9권 1호 (비교경제학
회), 2012.

_____. “북한에서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
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2호 (한국동북
아경제학회), 2013.

_____.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
역의 소(燒)토지 경작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
권 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4.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
제연구』. 제2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4.

Noland, Marcus, Haggard Stephan. “Famine, Market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December 2005.

Smith, Heather.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Stasis or
Reform?.” *Brookings Discussion Papers in International
Economics*. No. 133, July 1997.

1

2

3

4

5

6

〈인터뷰 조사명부〉

이름	출생년도	학력	탈북시기	직업	출생지
A	1973	고등중학교	2008	탄광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B	1974	기능공 전문학교	2006	악기공장 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C	1959	고등중학교	1998, 2006	직포공장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D	1971	고등중학교	1998, 2004	악기공장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E	1981	고등중학교	2002	농장원	함경북도 회령
F	1974	고등중학교	2008	벽돌공장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G	1979	고등중학교	2008	탄광기업소 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H	1967	고등중학교	1998	체육단원	함경북도 회령
I	1974	고등중학교	2005, 2007	제지공장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J	1957	고등중학교	2009	구두공장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K	1967	고등중학교	2009	탄광노동자	함경북도 회령
L	1982	고등중학교	2003	돌격대	함경북도 회령
M	1956	고등중학교	2009	군대	함경북도 회령
N	1940	전문학교	2003	탄광노동자	중국 왕청현
O	1971	고등중학교	2009	군대, 영예군인	함경북도 회령
P	1954	전문대졸	2011	상업관리소사무원 (부기)	함경북도 회령 유선
Q	1988	중졸	1998	협동농장노동자	함경북도 유선

제2부 시장화가 여성 및 아동인권, 인권법제, 인권의식에 미친 영향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시장화에 따른 북한 인권법제의 변화

민경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 시작하며

II.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의 변화

1. 북한의 시장화
2. 사회적 구조와 의식의 변화

III. 시장화에 따른 북한의 인권환경 변화

1. 대외의존도 심화
2.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
3. 사유화 확대와 계층구조 변화
4. 외부정보와의 접촉 확대

IV. 시장화에 따른 인권법제 변화

1. 시장화와 인권법제
2. 국제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
3. 인권 관련 헌법조항의 변화
4. 시민·정치적 권리의 개선과 한계
5. 사회권에 대한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

V. 마치며

참고문헌

I. 시작하며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화와 체제유지를 위한 계획정상화라는 상반된 힘이 작용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여파로 나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가속화된 북한의 시장화는 허용 또는 억제라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확대와 위축을 번갈아 경험하지만, 2010년 이래 시장은 허용되고 있다. 시장화는 북한체제의 근간이었던 주민의 집단주의 의식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배태시키고 아울러 사유화의 확대와 상인계급의 등장으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계층의 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시장화에 따른 북한 주민의 개인적 공간 확대는 자연히 새로운 인권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획일적인 북한 지배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화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자생적인 시장의 구조화에 맞춰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은 이미 정착된 시장화의 허용 혹은 억제는 수단을 통해 다양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법제도적 대응을 해왔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길고 지루한 대립과 갈등은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조성한 핵심적인 요인들 중 하나이다. 향후 시장화의 확대 및 대외 교류·개방에 의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은 대북압박과 그에 따른 북한정권 위기라는 작금의 정치적 환경을 쇄신하게 되면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시장화, 나아가 체제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6

북한의 시장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화의 심화는 결국 대외 교류와 개방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개혁·개방은 세계화의 수용을 강제하고 세계화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는 결국 인권환경과 그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중국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¹ 북한 시장화의 진전과 구축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의 확실한 방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대북 경제 교류와 협력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는 우리의 지혜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집단주의 가치관이 점차 이완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개인주의 확산과 계층구조 변화 등과 같은 시장화의 위력이 북한의 인권환경과 법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시장화의 의미와 발전 및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시장화가 북한의 인권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화에 따른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실태를 헌법,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에 상응하는 법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A규약)에 상응하는 법제 등으로 각각 분석한다. 결론으로 북한 시장화의 구축과 발전이 결국 북한인권과 관련 법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¹ 이에 대해서는 민경배,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의 변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363~411.

II.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의 변화

1. 북한의 시장화

가. 시장화의 의미

시장화(marketization)는 계획화(planning)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확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단위의 경제적 활동과 거시 경제 차원에서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이와 달리 북한에서는 시장을 ‘상품이 교환되는 영역’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열강들 간에 ‘대외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불러오는 것으로 달리 인식하고 있다.³

여기서 시장은 이러한 사전적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일탈하여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⁴이며, 시장화란 시장지향적인 요소들이 확산되어가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이미 북한의 농민시장에서는 불법적인 암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와 2003년 5월 ‘종합시장운영에관한조치’에 따라 지역시장(종합시장)으로 합법화하였다. 종합시장은 계획경제의 한 영역에 제도적으로 편입되면서 국가의 공식적 경제체계 내에서

2.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교육원, 2013), p. 34.

3. 사회과학출판사, 『경제학 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20.

4.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9.

이루어진 합법적인 시장화의 결과물이었다. 이 조치는 그 후 일시적 그리고 부분적으로 정책적 후퇴의 모습도 보였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현 단계의 북한 시장화는 개혁기의 현상과 체제전환기의 현상이 혼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⁵ 북한에는 동일한 대상을 시기와 주체에 따라 달리 부르고 있지만 농민시장, 암시장, 종합시장 등이 존재하고 있다.⁶

나. 시장화의 출현과 심화

농업의 집단화 작업을 완료한 1958년 기존 인민시장을 ‘농민시장’으로 개칭하여 채소나 부식물 등으로 거래품목을 제한하였으나, 이는 이미 시장화의 잠재적 출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1969년에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장을 폐지하고 10일장으로 전환하였으며 1군에 1개소만 설치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사적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의 소비재 공급부족과 국영상업유통망의 기능 저하는 농민시장의 활성화를 야기하게 되면서, 1982년에는 농민시장이 상설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 당국은 경제상황에 따라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 완화

⁵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p. 13.

⁶ 농민시장은 이미 합법적으로 존재한 소규모 소비재시장이다. 1958년부터 농민들이 텃밭이라 불리는 소규모 사적 경작지 등에서 개인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주민들 간에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에 농민시장이라 하여 10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농산물 중 쌀·옥수수 등 식량은 제외된다. 즉 농민시장에서는 쌀·옥수수 등의 식량과 공산품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 농민시장이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거대한 암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2002년 7·1조치에 따라 2003년부터 암시장으로 바뀐 농민시장이 합법화되면서 한국에서 종합시장이라 부르고 북한에서는 지역시장이라 하고 있다.

하는 정책을 반복했으나, 1993년 농민시장이 결국 매일 장으로 상설화 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⁷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체계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식량과 공산품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북한은 1998년부터 암시장 창궐에 따른 경제·사회적 질서의 동요를 수습하고 체제 및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지면서 대내적으로는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웠고 대외적으로는 외부세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공식제도 내에 일부 수용하면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2002년 7·1조치가 등장했다.⁸ 그 후 2003년 5월 ‘종합시장운영에 관한 조치’로 종합시장이 새로이 도입되면서 유통물자도 종전 농토산물에서 탈피해 식량 및 공업제품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소비재시장이 공식 허용되었다.

그러나 시장화에 따른 기존질서의 동요, 배금주의 및 개인주의의 확산 등 정치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당의 반발로 2007년부터 시장억제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부터 주민들의 반발 속에서 종합시장은 농민시장으로 환원되었다. 2009년 1월 전국시장의 농민시장으로 개편 방침 발표와 11월 화폐개혁을 통해 보다 강화된 시장억제 정책을 시도했다.⁹

⁷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pp. 102~104.

⁸ 북한의 시장에 대한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에 대해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북한 시장이 정치와 권력 양상을 반영하여 위계적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정치적 분석을 제시하며 통치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시장은 극 구조가 끊임없이 정치적 간섭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재편성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pp. 207~221.

⁹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pp. 46~55.

1
2
3
4
5
6

화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환율 및 물가 폭등 등 많은 부작용으로 시장을 억제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 2010년 5월 ‘5·26 지시’를 통해 마침내 시장억제 정책이 철회되면서, 북한에서 시장은 다시 합법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 당국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시장화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은 7·1조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⁰

2. 사회적 구조와 의식의 변화

북한의 시장화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리고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북한 주민은 더 이상 시장 없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장화에 의한 북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국가기관이나 인민경제부문의 기업소들도 이미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강제력 행사가 시장 활성화와 시장 주도세력의 형성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주체인 지배인 등 책임간부의 개인적 축재나 잠재적인 사적 자본축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시장화가 더욱 진전될지라도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관리되는 시장화의 진전이 아니라면 국가 통제를 벗어나 기존 정치적 지배질서의 변화를 견인할 시장화로의 발전 가능성은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¹¹

¹⁰ 양문수,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p. 11.

¹¹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4), pp. 190~191.

사실상의 배급제 폐지 및 공식적인 상업과 유통 체계의 기능 상실로 나타난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인권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대외의존의 심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안전망의 와해와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요인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장화는 북한사회의 대외 의존적 경향의 심화를 구조화시킬 수 있다. 북한에서 시장의 발달은 뚜렷한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대외무역의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소비재시장의 발달은 주로 국경지역의 도시들이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¹² 또한 시장화의 진전으로 개인이 경제행위의 주체가 되면서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급격히 이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장화가 점진적으로 사유화를 확대시키게 되면서 북한사회의 계층분화를 불러오게 할 수 있다. 그밖에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북한 주민의 외부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빈번해지게 되었다. 시장화에 따른 다양한 북한사회의 변모는 결국 북한 인권환경의 변화를 견인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시장화에 따른 북한의 인권환경 변화

1. 대외의존도 심화

북한 시장화는 국내 자원이 대부분 고갈되고 국내의 산업연관이 거

¹²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63.

의 다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되다보니 뚜렷한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통을 통한 자연발생적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대외무역을 통한 시장화의 진전이 뚜렷하다. 특히 대외무역의 증가가 시장화를 선도한 측면이 강하다. 무역확대를 위해 1997년 무역법¹³을 제정하였고, 대외무역주체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무역의 국가독점권을 탈피하여 무역의 자유화와 분권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쟁시스템을 헌법차원에서 마련했다. 즉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 등 개별 경제단위에 독자적인 대외무역 권한을 부여했다.¹⁴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외무역은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현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지역적으로 소비재시장의 발달은 주로 도시, 특히 국경지역의 도시와 내륙지역의 대도시들이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⁵ 대외무역의 확대로 북한 시장화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노출되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 인권환경이 조성되었다. 대외의존도 심화는 점진적으로 국제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가 결국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고조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유엔인권레짐으로부터 국제인권규범 준수에 대한 압력은 대외의존도의 심화에 비례하여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간의 포괄적인 조사를 근거로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

13. 1997년 제정된 무역법은 1998년의 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1999년, 2002년의 7·1조치의 ‘실리’와 ‘분권화’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대폭 개정된 2004년 그리고 제43조의 ‘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조항만 보완한 2007년 등 세 차례의 부분적 수정 보충을 하게 된다.

14.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공법학연구』, 제36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8), pp. 189~190.

15.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p. 63.

(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⁶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권환경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마냥 거부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점증하는 관심과 압력을 예상하고 2000년대에 들어 주요 국제인권조약, 즉 2001년 1월 여성차별철폐협약,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헌법적 차원에서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한 제8조의 인권 존중과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시장화는 북한사회가 국제사회에 조금씩 노출되면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북한 인권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제도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

2.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

북한헌법 제63조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집단주의 가치관은 본래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줄곧 북한 주민들에게 내재화되어 왔다. 즉 사회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되어 왔다.¹⁷ 경제난과 그에 따라 생성된 시장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주의 가치관에 회의를 품게 했다. 특히 7·1조치로 경쟁원리와 차등분배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인권과 관련한 두 가지 대비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즉 집단주의 인식의 급격한 약화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개인의 공간이 확대되면

¹⁶ 민경배,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p. 121.

¹⁷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p. 457.

서 인권환경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시장화의 결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가구는 후생복지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여 사회적 권리 보장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체험을 통해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인 집단주의적 가치관보다 개인의 생존과 행복이 더욱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점점 경도되고 있다.¹⁸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시장화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행위가 개인적 동기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경제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이 증대되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집단주의적 사고의 약화는 정신적인 인센티브보다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권리보다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⁹

또한 개인주의 가치관 발현과 개인 역할의 증대로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시장화의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가치체계의 변화로 집단 의식에서 개인의 의식으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의사소통 방식과 내용 또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비공식 수준에서나마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화는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집단주의적 가치체계를 전적으로 대체하였다기보다는 일정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¹⁸ 김창희,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한국동북아학회, 2009), p. 95.

¹⁹ 이금순·김수암,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50.

판단된다. 여전히 노동당이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북한의 시장화가 인 권환경 변화에 기여한 또 다른 역할은 북한 주민들이 향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사유화 확대와 계층구조 변화

1972년 헌법 이래 북한 현행헌법까지 사유화의 범위는 소비재,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 상속재산에 한정되고 있다(제24조). 그러나 시장화 과정에서 화폐 및 경제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부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적인 부의 획득을 위한 거래와 교환 행위가 세계에서 중요한 수단임을 터득하게 된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념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학습되어 왔던 ‘부의 축적’에 대한 인식에서도, ‘부의 축적’에 대한 도덕적 시선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²⁰ 즉 7·1조치, 특히 시장화의 허용은 북한 경제의 사유화를 촉진시켰다.

개인집은 건축과 매매가 사실상 허용되지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공식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암암리에 살림집이나 아파트도 사용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개인소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¹ 개인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단체나 기관의 명의를 빌려 개인이 회사

20. 홍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의 사회적 구성,”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p. 123.

21.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사연구소, 2013), p. 189.

를 운영하는 개인위탁경영 형태로 소규모의 사유화가 확대되고 있다.²² 이처럼 시장화는 북한 주민의 사적 경제활동 공간을 확장해 주면서 사유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개인위탁경영 형태라는 사실상의 사유화는 장사로 돈을 번 신흥자본가를 포함한 상인 집단이 새로운 사회계급을 형성하면서 북한사회의 계층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화 확대와 사회적 계층구조 변화가 사유화를 통해 성장한 신흥계급과 국가 간에 향후 상호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을 벌리는 상황을 불러오는 미래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 신흥계급은 자신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영업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이들을 활용하여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면서 기존 통치체제를 활용하여 이들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적 부문에서 고용수준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에 의해 유지되던 사회안전망은 시장화를 통해 이완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는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4. 외부정보와의 접촉 확대

국경지역에서의 무역확대에 따른 시장화 진전으로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바깥 세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연관된 새로운 개념과 가치 체계를 형성

²² 탈북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추론한 사유화는 식당, 상점, 서비스업체 무역회사의 경우 사유화 수준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식당은 50%, 상점과 서비스업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pp. 26~29.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수행하면서 특히, 외부정보와의 접촉이 일상화 되어있는 외화별이꾼들의 점증하는 외부 소식은 북한 주민, 즉 시장화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돈주, 중간상인, 소매상인 및 사재업자는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전달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에 대한 이들의 기존 인식을 혼란 내지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시장화의 진전을 조절하는 정책을 통해 북한체제를 유지 내지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비판에 대응해 직접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인권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²³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른 외부접촉의 불가피성과 그에 따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고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향후 인권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외부정보 접촉의 확대와 그 외에 시장화에 의해 새롭게 출현한 인권환경 변화의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인권법제의 대응, 인권 보장적 법제와 인권 통제적 법제를 활용하여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법제도적 체계를 운용해오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북한의 시장화로 북한 인권법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한다.

²³ 최근 북한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면서 소극적인 법제도적 방법 외에 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인권의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北, 직접 작성한 ‘인권보고서’ 발표, 국제사회와 인권 대화 나설 것” 『조선일보』, 2014년 9월 13일,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40913095003324&clusterId=1278656>> (검색일: 2014. 9. 11).

1
2
3
4
5
6

IV. 시장화에 따른 인권법제 변화

1. 시장화와 인권법제

시장화에 따라 북한은 한편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권 관련 국제협약 등에서 점차적으로 대외친화적인 법제도적 변화를 보이는데, 특히 A규약과 관련한 국내법제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화의 구조화에 의해 나타나는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 사유화 확대와 계층구조 변화, 외부정보와의 접촉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제 이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국의 단속과 감독이 강화되면서 사회통제에 맞춘 법제화가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 및 사회 범죄에 대한 법제, 관료부패에 대한 법제 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시장화를 억제하기보다 시장화의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과 주민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체제를 혼란 또는 위협할 수도 있는 시장화 현상은 철저한 확인과 경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 후계계승 과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독특한 법체계에는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유일사상 10대 원칙’과 ‘노동당규약’이 존재한다. 2013년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개정에서 제10조에 ‘백두혈통’의 단어를 추가하여 2010년 9월 당대표회의에서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정당화시켰다. 또한 노동당규약의 개정을 통해 서문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계승성을 강조하여 사전에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의 통제력 약화에 의한 김정은 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려는 규범적 장치로 판단되지만 인권개선을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

근거로 파악된다.²⁴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 및 시장화와 인권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 인권법제는 자유권보다는 사회권 영역에서의 법제적 관심과 변화가 상대적으로 우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에 엄연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이 북한의 인권실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 시장화에 따른 북한 인권법제의 변화를 국제인권법제, 헌법, B규약과 관련한 법제, A규약과 관련한 법제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2. 국제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

북한은 국제인권법제가 지니고 있는 권고적 성격을 근거로 삼아 국가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한편,²⁵ 시장화에 따른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제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고려하여 수용하는 등 선택적으로 거부와 수용의 이중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가. 거부와 반발

북한은 자신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압력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2004년 이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북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 오고 있으며, 또한 유엔과의 인권분야 대화와 기술협력마저도 수용하

24. 한명섭,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 실태,”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4), pp. 54~55.

25. 한영서,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5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pp. 132~136.

지 않았다.²⁶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²⁷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협잡행위’로 규정하여 전면 배격한다는 주장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인 반공화국인권결의 채택놀음에 중지부를 찍고 세계 도처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주권유린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장화에 따른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점증하는 국제적 대북압력이 체제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인권규범에 일정하게 순응하는 협력적 대응을 병행하게 된다.

예컨대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북한에 대한 1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수검하였고,²⁸ 2014년 5월에 실시된 2차 UPR²⁹을 위해 제출한 북한의 국가보고서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26.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pp. 344~355.

27. 2013년 3월 21일 유엔 차원의 첫 공식기구인 출범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조사대상은 식량권 침해,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 침해, 아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등이었으며, 이 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www.ohchr.org 그리고 한글번역본은 통일연구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참조.

2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68.

29. 2차 UPR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68개 권고 중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조치 등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진화산피해방지구조법 제정, 국가재난기구 설치 등 재난 및 안전을 중요한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건강·교육·식량 권과 문화생활권리까지 포함함으로써 인권 개념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선별적 수용

북한은 이미 1981년 7월 B규약 및 A규약에 가입하였고,³⁰ 1990년 8월 23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01년 2월 8일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을 하였다.³¹

북한은 위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가입국의 의무인 협약의

³⁰ 북한의 유엔 A규약, B규약 가입은 국내문헌들이 적시한 1981년 9월이 아니라 1981년 7월 30일로 2014년 9월 13일 발표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이하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의 가입일자는 이 보고서에 따른 것임을 밝혀 둔다.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평양: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p. 188.

³¹

표 4-1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조약	채택일/발효일	북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12. 16/1976.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1981. 7. 30 • 발효: 1981. 9. • 유보: 없음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12. 18/1981.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2001. 2. 8 • 발효: 2001. 3. 29 • 유보: 제2조, 9조2항, 29조1항
아동권리협약	1989. 11. 20/1990.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준: 1990. 9. 21 • 발효: 1990. 10. 21 • 유보: 없음
장애인권리협약	2006. 12. 13/2008.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2013. 7. 3 • 비준: 검토중

출처: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pp. 188~189 참고.

이행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 A 규약위원회에는 1984년, 1989년, 2002년 세 차례, B규약위원회에 1991년, 2003년 두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아동권리위원회에는 1998년 1차, 2004년 2차, 2009년 3차와 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주목되는 변화는 북한이 유엔 차원의 기술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즉 2001년 5월 북한 관리들이 제네바의 유엔 난민고등판문관실 본부를 방문하여 유엔난민협약과 유엔 난민고등판문관실의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난민법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2005년 11월 북한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유엔의 각종 협약과 난민 및 국적상실자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위해 유엔 법률가 2명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³²

이처럼 북한은 유엔 인권법제에 대한 대응에서 과거와 달리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화의 진전에 의해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환경변화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유엔 인권규범과 그에 기초한 의무를 체제위협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 제한적이거나 선별적으로 수용하였고, 동시에 인권 관련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유엔 인권법제의 내용을 수렴하는 전향적인 노력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최대한 인권 관련 국내법의 개혁을 도모하여 국제사회로 부터 보다 많은 지원과 협력을 받으려는 의지로 판단된다. 당면한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건설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나 선진 국가들의 개발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들의 지원과 협력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주요 조건들

³²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p. 348~349.

중에는 일반적으로 인권개선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상응하여 인권관련 국내 법제의 변화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개혁개방에 적극 활용하였던 사례가 북한 인권관련 법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³³ 그러나 시장화에 따른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이완되면서 체제결속을 위한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등 인권개선에 역행하는 법제 구축도 병행되었다.

3. 인권 관련 헌법조항의 변화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주체가 기존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사회단체가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전속 소유대상을 축소하고 사회협동의 소유대상과 개인소유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³⁴ 또한 시장화 현상의 대외적 전이, 특히 외화벌이꾼의 상행위 등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 제36조 제1항을 개정을 통해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에서 탈피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등 다양한 경제 단위들이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³⁵ 시장화 이후 식량배급제의 와해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 간의 이동이 불가피했고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의

1
2
3
4
5
6

³³ 민경배,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시각,” pp. 124~125.

³⁴ 특히 헌법 제24조 제3항에는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화에 의한 광범위한 사적 경제활동으로 획득한 이득도 개인소유로 인정함으로써 사적영역의 확대에 따른 주민들 가치관 변화와 계층구조의 변화를 상품경제를 대비한 포괄적 규범근거가 되었다.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p. 181.

³⁵ 위의 글, p. 189.

이동의 자유 보장에 대한 결의안을 수용하여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거주·여행의 자유를 제75조에 신설하였다.

시장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진전될 대외교류의 확대와 본격적인 대외개방 과정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비난에 대비하면서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 존중과 보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8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의를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인권 존중과 보호의 대상은 ‘근로인민’이지 ‘국민’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적 의미인 북한국적을 가진 공민과 달리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며 실행하는 정치적 의미인 인민의 범위는 언제나 공민에 비해 좁을 수밖에 없다.³⁶ 이는 북한 당국이 근로인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남게 된다.³⁷ 그럼에도 향후 시장화의 심화로 요구되는 인권 관련 개별법들의 헌법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권존중보장’ 조항의 신설로 인권이 북한에서 일반권리에서 헌법적 권리로 격상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보완하는 기능과 함께 모든 기본권의 지도이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헌법적 강화는 시장화의 점진적 심화 과정에서 인권 관련

36. 민경배, “중국의 공산당정책(규범)과 국가법의 관계,”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4), p. 415.

37. 북한과 달리 중국은 헌법 제2조 제1항에 ‘중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中華人民共和國的一切權力屬於人民)’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3항에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國家尊重和保障人權)’고 규정되어 있어 마치 인권 존중과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3조가 중국헌법 제2장의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公民的基本權利和義務)’ 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공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개별 법제로의 수용을 더욱 가속화하게 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차원의 법제도적 확립이 빠른 시일 내 관련 개별법에서 현실적인 인권개선의 규범적 형태로 발전되리라 확신하기에는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인권존중보호조항의 신설을 제외하면 현행 2013년 북한헌법 제5장이 규정하고 있는 ‘공민의 기본적권리와 의무’의 내용은 변화가 없다.³⁸

4. 시민·정치적 권리의 개선과 한계

자유권 항목과 관련한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의 특징은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와 오히려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다분한 경우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화가 대외의존도 심화와 개인 권리에 대한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를 수반하면서 그 동안 지속적인 국제적 비판을 받아온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북한의 관련 국내법은 인권 친화적 혹은 인권 침해적 내용으로 변천해 왔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북한 국내법을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
3
4
5
6

³⁸ 북한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허만호, “북한의 인권정책,” 대한변협인권재단, 『2012 북한 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2), pp. 94~95.

표 4-2 유엔 B규약과 관련된 북한 국내법률³⁹

유엔 B규약	권리	관련 법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검찰감사법, 주민행정법
	평등권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여성권리 보장법, 수도평양시관리법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형법, 변호사법, 재판소구성법, 신소청원법, 판결·판정집행법
	법원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해사소송관계법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출입국법, 주민행정법
	참정권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국적을 가질 권리	국적법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출판법
	가족권, 재산권	가족법, 민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우선 인권 친화적 법제 변화의 백미는 1990년 채택된 형법의 2004년 전면적인 개정으로 시장화에 따라 나타난 신종 경제사범에 대한 임의적 처벌이 가능했던 유추해석규정 삭제와 죄형법정주의 채택이다. 또한 특별구성요건의 세분화와 명확화, 형벌 종류의 재정비, 법정형의 완화, 경제범죄의 도입 등 시장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자유권적 보장에 주목되는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2년 채택된 형사소송법은 그 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된다.⁴⁰ 2004년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인권보장의 원칙, 즉 동법 제6조가 “국가는 형사사건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피심자·피소자의 구금기간

³⁹ 황재욱, “북한의 인권정책,”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북한인권백서』, pp. 54~55.

⁴⁰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p. 82. 이하 북한 부문법의 개정 횟수는 이 보고서에 다른 것임을 밝혀 둔다.

단축, 기소 및 재판에 위한 구류기간의 명시 등과 같은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경향은 야간심문의 원칙적 금지(제162조), 강제 심문 및 유도심문의 금지(제166조), 피심자에 대한 권리통고(제168조), 법정에서의 피소자 구속금지원칙(제282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계급노선 관철원칙(제2조)과 군중노선 관철원칙(제3조)의 고수에 따라 인권보장의 근원적 한계는 엄존하고 있다.⁴¹ 특히 제271조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자성 보장을 선언하고 있지만 다양한 제도, 즉 판사의 자격, 인민참심원제 등에 의해 사법부독립원칙의 법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불법심문과 불법체포, 구속 및 수색의 경우 이전보다 형량을 낮추어 인권적으로 퇴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⁴² 특히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시장화가 북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규범적 대처와 법정형의 강화는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취지를 무색케 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통제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시장화에 대한 억제 정책과 시장화 과정에서 점증하는 경제범죄를 단죄하려는 취지에서 최악의 인권관련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는 2007년 북한 형법의 부칙 제정은 반국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유권 침해 가능성을 높였다. 예컨대 시장화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재산약취행위(제2조), 국가재산강도행위(제3조), 밀매행위(제6조), 나라자원비법판매행위(제8조)에서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법정형 최고인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기

1
2
3
4
5
6

⁴¹ 한명섭,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 실태,” pp. 78~80.

⁴²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년』, p. 121.

존 형법에 없던 범죄를 신설, 예컨대 비법적인영업죄(제18조) 중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반인권적인 규정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⁴³

그 외 2011년 행정처벌법⁴⁴을 개정하여 계약규율위반행위(제52조) 등 많은 경제 관련 위법행위가 신설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유형도 오히려 다양해졌다. 2010년 새로이 제정된 주민행정법은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리·읍·동사무소 지도 아래 인민반을 조직하여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감독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9년 제정되어 두 차례 개정한 살림집법, 2010년의 철도차량법, 2010년의 자재관리법, 2008년의 설비관리법 등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사실상 배급제가 폐지되고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살림집의 음성적 이용과 거래, 군대 물자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재, 설비 등에 대한 절취나 횡령 및 이들 물건의 매매가 시장화와 함께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새로운 법들의 제정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으로 보인다. 북한의 시장화 확대는 휴대폰 사용의 증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휴대폰 사용의 증가는 시장화 확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면 휴대폰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상품의 시장가격 조사와 그에 따른 상품의 이동이 활발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2011년 전기통신법을 제정하여 휴대폰 이용증가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이용신청과 명의변경 승인제도, 등록제도, 수입 및 매매승인제도 등 법

⁴³ 위의 책, p. 93.

⁴⁴ 행정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한명섭,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 실태,” pp. 82~84.

적 통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시장화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통신의 자유가 제한받게 될 여지가 많아졌다.⁴⁵

이처럼 시장화에 의해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현실적으로 개선되었다기보다 내부 통제의 강화로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처형의 증가, 외부정보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탈북행위 단속과 처벌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시장화의 지속적인 진전은 북한 당국의 수용과 제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경제난의 극복과 사회통제의 극대화를 견인하는 규범화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시장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의지와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시장화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는 결국 향후 관련 인권에 대한 법적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믿는 데에는 중국사례⁴⁶의 참고가 필요하다.

5. 사회권에 대한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

시장화에 의한 사회적 변화와 인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한 법제, 특히 근로권과 취약계층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이 2000년대에 들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최근 2010년 노동보호법의 제정,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의 제정 및 2011년 수정,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의 제정, 2003년 장애인 보호법의 제정 및 2013년 수정 등이 그 사례이다. 2013년 7월 3일에는

45. 한명섭,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인권환경과 법제도의 변화와 실태 토론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연구 중간보고회, 2014. 8. 6), pp. 3~4.

46. 민경배,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의 변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pp. 379~393.

1
2
3
4
5
6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을 함으로써 국제적 의지를 피력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북한 국내법을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유엔 A규약과 관련된 북한 국내법률⁴⁷

	권리	관련 법률
유엔 A규약	건강권	인민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광천법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연로자보호법, 장애인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근로권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 인민경제계획법, 물자소비기준법
	교육받을 권리(교육권)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문화생활 향유할 권리	문화유물법,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원림법, 자연보호구법, 광천법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권리보호	북조선남녀평등권에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보호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고난의 행군’과 그에 따라 가시화된 북한의 시장화는 1999년 사회주의노동법의 개정, 즉 해고금지 조항 신설(제34조 제2항)⁴⁸ 및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휴가 연장에 대한 개정(제66조)⁴⁹을 가져왔다. 조문 내용상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47. 황재옥, “북한의 인권정책,”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북한인권백서』, p. 55.

48. 제34조 제3항은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마음대로 제척할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로권을 철저히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49. 제66조는 기존 ‘여성근로자의 산전 35일, 산후 42일’을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휴가기간을 대폭 연장하였다.

권과 여성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화의 심화로 근로자들이 대거 사적 영역으로 이탈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면서 직장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와 여성에게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동시에 장기간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활용하여 새로 등장하는 여성의 신진 인력과 기존 잉여 인력의 일자리로 대체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⁵⁰

2010년 노동보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존 사회주의 노동법에 비해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동보호법 제정은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신설한 ‘인권존중 및 보호’ 규정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한 첫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⁵¹ 다만 그동안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노동보호용구 및 작업필수품이 무상 공급되던 것이 노동보호법은 노동보호 물자를 무상 또는 유상 공급으로 규정되어 유상의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인권 비친화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담고 있다.

사실상의 배급제의 폐지와 시장화의 심화에 따른 사유화의 확대 및 계층구조의 변화로 취약계층, 특히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봄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 등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서, 북한은 이들을 보장대상⁵²으로 한 사회보장법을 2008년 제정하여 두 차례의 수정 보충을 하였다. 본법은 이들 사회보장 대상자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주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시에 사회보장 대상자

1
2
3
4
5
6

50. 윤대규·민경배,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p. 13.

51. 이규창,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

52. 보장대상에는 이들 외에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 가족,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을 포함시켜 사회적으로 우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 제정 전에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면 사회보장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되었는데, 본 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장 신청을 공민이 속한 기관이나 기업소 또는 단체가 하도록 하여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이다(제10조). 뿐만 아니라 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사회보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의학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제11조), 거주지 이전 시 사회보장등록 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회에 보내도록 한 규정 등도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담겨있다.⁵³

국가가 주도해왔던 사회안전망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와해되고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문제제기로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연로자보호법, 장애인보호법 등이 제정되었다.

북한은 헌법과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민법, 형법, 가족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권리에 관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또한 구체화하고 동시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일부 반영하여 처음으로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하여 2011년 수정 보충하였다. 경제난으로 가중된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성권 침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난 해소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인권개선에 직결되어 있다. 특히 시장화 이후 북한 여성들이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면서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측면도 있다.⁵⁴ 하지만 전통적 가

⁵³ 한명섭,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인권환경과 법제도의 변화와 실태 토론문,” p. 4.

⁵⁴ 황재욱 외, “차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북한인권백서』, p. 187.

치관과 혈연에 기초한 가부장적인 인식, 남성에 비해 열등한 사회적 지위 속에서 경제활동 및 가사와 양육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과 형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사회안전법, 가족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일부 반영하여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북한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와 개선 촉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 아동들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면서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 배급체제가 무너지고 시장화의 심화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인권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⁵⁵

북한은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 의료법, 인민보건법 등에 산재해 있는 노인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여 2007년 연로자보호법을 채택하여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노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연로자보호법의 적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부양 및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 등도 현실에서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⁵⁶ 시장화 이후 자녀들이 노부모를 돌보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국가의 부양은 기대하기 어렵고 달리 생계를 유지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8년 발효되기 이전인 2003년 이

⁵⁵- 위의 글, pp. 192~193.

⁵⁶- 위의 글, pp. 204~205.

미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⁵⁷ 이에 2013년 7월 3일 동 협약에 서명을 하고, 동년 12월 6일 장애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으나,⁵⁸ 개정법 전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적용실태 조사에서는 개정 이전에 비해 장애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다른 개선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법현실이 법규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⁵⁹

결론적으로 북한의 시장화로 야기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관련법들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로 인해 북한 주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화의 진전과 강화로 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회, 즉 사적 영역의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으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권 보장의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7- 문제점은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 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pp. 9~10.

58-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p. 95.

59- 황재욱 외, “차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p. 214.

V. 마치며

북한 당국은 이미 정착된 시장화의 허용 혹은 억제라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처하면서 법제도적 대응을 병행해왔다. 시장화의 심화는 결국 대외 교류와 개방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시장화가 인권 환경과 그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중국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시장화는 결국 사회적 구조와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즉, 시장화는 대외의존도를 높이게 되고 주민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유화의 확대와 계층구조의 변화를 견인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와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인권의식이 고양되게 된다.

시장화에 의한 북한사회의 변화는 체제위협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이거나 선별적으로 유엔 인권법제의 내용을 수렴하는 전향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관련 국내법의 변화를 견인하였다.

시장화와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여 헌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권관련 법제적 변화는 인권 관련 개별 법제로의 수용을 가속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 관련 개별법들에서 현실적인 인권개선의 규범적 형태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장화의 지속적인 진전은 북한 당국의 수용과 제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경제난의 극복과 사회통제의 극대화를 견인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범화에 맞추어져 있지만 시장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의지와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시장화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시장화로 야기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관련법들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규범

1
2
3
4
5
6

과 법현실의 괴리로 인해 북한 주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화의 진전과 강화로 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회, 즉 사적 영역의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으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권 보장의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에서 북한 시장화의 진전과 확고한 구축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의 확실한 방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대북 경제 교류와 협력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시에 북한의 시장화가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개별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북한 시장화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면서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시장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법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학 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교육원, 2013.
- 이규창.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이금순·김수암.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평양: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통일연구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2. 논문

-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1
2
3
4
5
6

- 김창희.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한국동북아학회), 2009.
- 민경배.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의 변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_____.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_____. “중국의 공산당정책(규범)과 국가법의 관계.”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4.
-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_____.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_____.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공법학연구』. 제36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8.
- 윤대규·민경배.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 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 임상철. “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 제17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3.
-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4.
- 한명섭.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 실태.”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 한영서.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5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허만호. “북한의 인권정책.” 『2012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협인권재단, 2012.
- 홍 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의 사회적 구성.”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 황재옥·한명섭·오경섭. “차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3. 기타

『조선일보』.

한명섭.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인권환경과 법제도의 변화와 실태 토론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연구 중간보고회), 2014년 8월 6일.

1
2
3
4
5
6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김영규 (백석대학교)

I. 서론

II.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1. 헌법과 민법
2. 가족법과 상속법
3. 여성권리보장법
4. 보건의료법규
5. 노동법과 노동보호법
6. 형법

III. 북한의 시장화 이후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1. 가족법과 상속법
2.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아동권리보장법
3. 그 밖의 아동 인권 관련 입법

IV.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상관관계와 변화 가능성

1.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추이의 상관관계
2. 향후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동이든 성인이든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국가가 어떤 체제를 갖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지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특히 소유제와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나누는 전통적 분류기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각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 및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체제이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집단소유제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중국은 일찍이 1978년 이후 정경분리론에 따라 시장화 및 사유화를 진행해왔고, 1999년 3월 15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국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진 바, 특히 고난의 행군으로 인하여 아사의 위기에 빠지게 되자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개인적 경제활동을 허용하게 된 1990년 이후의 북한에서도 미약하나마 시장화 및 사유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인권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그간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² 그런데

¹ Abraham Bergson, *Productivity and the Social System - The USSR and the Wes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 3.

² 미 국무부가 2004년에 발행한 ‘2003년도 각국 인권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서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2003* (Washington D.C.: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04); 제성호, “북한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법연구』, 제7호 (북한법연구회, 2004), p. 266.

199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북한의 시장화 및 사유화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도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래 시장화 및 사유화는 각각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근간을 두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제활동과 본능적인 소유의식에 입각한 개인의 사소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아무리 북한이 극단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하지만 일단 시장화 및 사유화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되기 시작되면 인간으로서의 본능상 자유의식과 인권의식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시장화의 진행은 개방화와 국제화를 수반하게 되며, 국제화는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요구와 규범의 준수를 수반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도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비롯한 사회전반과 민법, 가족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등의 제·개정에 영향을 주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는 결국 사회나 가정에서 약자인 그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문제로서 실제로 북한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이 어떻게 향상되어왔나 하는 것은 그간의 입법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해 낼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1990년대 이후 20여년 넘게 진행된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의 인권환경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장화 이후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그 모습이 달라져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북한의 시장화가 과연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에서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된다면 여성 및 아동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를 대략이나마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북한의 시장화 이후 여성

및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변모되어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이를 토대로 북한의 시장화 및 사유화와 인권에 관한 입법추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및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1. 헌법과 민법

가.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시장화 이전 헌법의 인권 관련 규정

북한은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제11조에서 성별이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평등권을 누리게 됨을 선언하고 있고,³ 위 헌법(22조, 23조)은 가정 안에서의 여성과 자녀의 평등권, 혼생자와 혼외자의 법적 지위 평등 등의 인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⁴ 특히 1948년 북한 헌법

3. 북한은 헌법을 1948년 채택하면서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민의 기본권 중 일반적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4. 1948년 북한 헌법 제22조 본문은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고 규정하여 가정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있으며, 여기서 남녀평등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보다 먼저 1946년에 제정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위 헌법 제23조는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결혼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북한 헌법 제23조는 가정 안에서

1
2
3
4
5
6

제22조 단서는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의 ‘남녀평등의 원칙’과 더불어 북한이 가족법의 기본 원칙으로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헌법상 천명한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가족법 이론은 모성과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는 헌법에 고착되어 있는 가족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 밖의 가족 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제함에 있어서도 위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

이 밖에 1948년 북한 헌법(17조)은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⁶ 위 권리를 비롯하여 1948년 북한 헌법이 제2장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도 간접적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 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이 채택하였으며(4조, 89조), 위 헌법(62조, 63조)은 1948년 헌법과 같은 맥락에서 가정 안에서의 여성과 자녀의 평등권, 혼인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 등의 인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⁷ 또 북한의 1972년 헌법(23조)은 1948년 헌법과 달리

자녀의 법적 지위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 적출자(嫡出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인 서자(庶子)가 적서(嫡庶)의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과 혼인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⁵ 조일호, 『조선가족법』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p. 31.

⁶ 1948년 북한 헌법은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노쇠, 질병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고 하여(17조), 사회보험에 의한 의료·물질에 의한 방조의 실시를 통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밝히고 있다.

⁷ 1972년 북한 헌법은 주석제를 도입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자기 활동의 지침)로 표방하면서 김일성 우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51조에서 일반적인 평등권을 누리게 됨을 선언하면서 제62조 및 제63조에서 가정 안에서의 여성과 자녀의 평등권, 혼인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어린이와

‘어린이들의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와 무상치료제를 별도로 규정하면서,⁸ 무상치료제의 내용에 무상의 해산방조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막연했던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다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띠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화 이후 헌법의 개정

북한은 시장화가 진행된 1990년대에⁹ 1992년과 1998년 2번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중 1992년의 헌법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및 사유화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9월 5일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무역활동의 주체를 종래 ‘국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 등의 인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48년 헌법(11조, 22조, 23조)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72년 북한 헌법은 1948년 헌법이 단순히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만을 추상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는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 방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위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62조 2항).

⁸ 김일성은 사회보장제에 대하여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교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p. 82. 이에 따라 1972년 북한 헌법 제23조는 위의 사회보장제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를 그대로 법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⁹ 1990년대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를 가져오게 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개인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장화가 출현함에 따라 북한 주민과 더불어 북한 정권기관도 ‘새로운 무역체계에 따라 시장화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의 새로운 무역체계는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이고 내각 산하의 각 성, 위원회, 지역 행정단위인 도에 무역회사를 설치하여 다른 나라들과 직접 무역을 수행하는 체제로서, 1991년 위 체계가 도입된 이후 북한의 다양한 정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원천을 찾아 외화벌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무역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기관운영을 원활하게 되었다고 한다.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현상<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 44.

1
2
3
4
5
6

가 및 국가기구'에서 '사회협동단체'로 확대(동법 36조), 특수경제지대 안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창설운영 장려(37조), 집단소유권의 주체를 종래의 '협동단체'에서 '사회협동단체'로 확대(36조),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객체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면서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객체에 대하여 1992년 헌법¹⁰과 달리 '부림집승, 건물'을 제외시키고 '고기배'를 '배'로 개정하는(22조 2항) 등의 시장화 및 사유화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시장화가 다양하게 전개된 2000년대에 들어와서¹¹ 2009년, 2010년, 2012년 각각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그 개정내용은 통치이념과 권력구조의 개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¹² 그 중 2009년

¹⁰ 1992년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객체에 대하여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동법 21조 3항). 이에 대하여 1998년의 북한 헌법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객체에 대하여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개정하였다(21조 3항). 또 1992년 북한 헌법은 협동단체소유권의 객체에 대해서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2조 2항).

¹¹ 2000년 이후 북한의 시장은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그 후속조치를 주관하는 당·정·군을 포함하는 정권기관 및 그 산하의 지역 권력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중심이 되고, 현장일꾼이나 돈주, 생계를 위해서 북한 주민이 부분적으로 시장화에 같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 시장의 위계적 독과점 구조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시장전개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해온 정권기관의 무역회사들은 시장의 상층구조를 형성하여 상업적 하부구조를 직접 지배하거나 또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활동과 행위자를 포섭하여 하부구성요소로 종사시켰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p. 214.

¹²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 개정에서 종래 통치이념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추가해서 명문화하고 있으며(59조), 1998년 헌법(29조, 40조, 43조)에서 명시하고 있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면서 국가사업의 전반을 지도하는 등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강화하였다(100조~103조). 또 2010년 4월 9일 개정헌법(153조~168조)에서 북한은 국가기구와 관련하여 1998년 헌법(153조~168조)에서의 ‘중앙검찰소’를 ‘최고검찰소’로, ‘중앙재

의 헌법 개정에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8조 2항)과 ‘대외사업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으로 새롭게 인정하는 것(116조) 등은 인권 및 시장화와 관련한 개정이라 평가된다.¹³

나. 민법의 제정과 개정

(1) 1990년 민법의 제정

북한은 1990년 9월 5일 ‘반동적·반혁명적 사상’의 침투를 방지하는 ‘사상교양적 기능’과 ‘조직동원적 기능’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서 등가적 보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민법을 제정하였다.¹⁴

북한 민법(3조, 4조)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및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을 민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집단적 소유형태인 공유제(公有)와 계획경제를 지배적인 모습으로 하는 사회주의 민법으로서

판소’를 ‘최고재판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에게로의 권력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¹³ 2009년 북한 헌법(116조)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권한과 관련하여 종래 1998년 헌법에서 인정되던 ‘특사권’과 ‘중요조약에 대한 비준 및 폐기권’을 국방위원장에게 이전하면서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새로이 ‘대외사업권’을 상임위원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사업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으로 새롭게 인정하는 2009년 북한 헌법의 태도는 다양한 국가기관을 주체로 하여 무역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역을 매개로 한 시장화와 관련한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¹⁴ 본래 민법은 사적 자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1990년 북한이 민법을 제정한 이유는 기존의 계획경제체제 고수 입장을 법의 형식을 통하여 천명함으로써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붕괴 등으로 야기되는 체제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른바 ‘반동적·반혁명적 사상’의 침투를 방지하는 ‘사상교양적 기능’과 당면한 경제난에 대한 타개책으로 계획경제에 따른 국가적 통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직동원적 기능’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서 등가적 보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민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순문, “북한의 민법 그 실상을 밝힌다,” 『북한』, 제239호 (북한연구소, 1991), p. 106.

의 당연한 귀결이다.¹⁵ 그리고 위 원칙은 북한 민법(5조)이 밝히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있어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구현과 계약에 있어서 계획화에 따른 계획적 계약의 중시와 더불어 아직 시장화 및 사유화가 조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민법의 개정과정과 1999년 민법 개정

1990년 민법 제정 후 1993년, 1999년, 2007년 등 3차례 개정¹⁶이 있었는데 이 중 1999년의 개정에서 시장화 및 사유화와 관련이 있는 개정 내용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의 개정 민법은 1998년 북한이 새롭게 채택한 ‘김일성 헌법’의 소유권 등 재산관계와 관련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¹⁷ 특히 집단소유권의 주체로서 새로이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단체’는 종래 계획경제체제의 사회주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던 것으로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아래의 중국 물권법(69조)은

¹⁵ Abraham Bergson, *Productivity and the Social System - The USSR and the West*, p. 4.

¹⁶ 종래 북한 민법 제9조 제2항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3년의 민법 개정에 의하여 위 조문을 삭제하였다. 이는 실체법인 민법에 절차법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북한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분쟁은 민사재판 이외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문과의 충돌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동법 53조 1호 참조). 또 북한은 2007년 민법의 개정에서 법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종래 없었던 각 조문에 제목을 붙이는 개정을 하였다.

¹⁷ 1999년 북한 민법 2차 개정 내용은 1998년 북한이 새롭게 채택한 ‘김일성 헌법’의 소유권 등 재산관계와 관련하여 무역활동의 주체를 국가 및 국가기구에서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하고 있는 점(36조), 특수경제지대 안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창설운영을 장려하고 있는 점(37조),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객체와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객체를 수정하고 있는 점(45조, 54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주체를 ‘국가·협동단체’에서 ‘국가·사회협동단체’로 개정하고 있는 점(20조)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집단소유권의 주체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는데,¹⁸ 북한 헌법은 위 중국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특히 1999년 북한 민법은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객체를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¹⁹ 또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객체에 대하여 종래 북한 민법²⁰과 달리 ‘부림집승, 건물, 문화보건시설’을 제외시키고 ‘고기배’를 ‘배’로 개정하고 있다(54조).²¹ 여기서 1999년 북한 민법이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객체에서 부림집승을 건물과 더불어 제외시킨 것은 향후

18. 중국 물권법 제69조는 “사회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사회단체를 집단소유권의 주체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단체에 대하여 중국은 국무원에서 반포한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공민 혹은 단위가 지원으로 구성하여 회원의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고 정관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는 비영리성 사회조직으로서, 위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첫째, 50명 이상의 개인회원 또는 30개 이상의 단위회원이 있어야 하고 개인, 단위회원이 혼합하여 구성된 경우 회원 총수는 50명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규범적인 명칭과 상응한 조직기관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 넷째, 그의 업무활동과 상응되는 전문사업인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합법자산과 합법비용출처가 있어야 한다. 전국성 사회단체는 10만 위안 이상의 활동자금이 있어야 하고 지방성 사회단체와 행정구역의 사회단체는 3만 위안 이상의 활동자금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독립적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손한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 II: 중국의 물권법(법제처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p. 80.

19. 북한의 1999년 개정 민법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객체에 대하여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 제45조의 제2호와 제3호는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립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와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을 열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개정 북한 민법은 위 제2호를 중요 공장, 기업소로 정리하고 제3호에서 방송기관을 제외하여 “철도·항공운수·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으로 개정하고 있으며(45조 2호), 이는 북한 헌법 제21조 제2항 및 3항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20. 1990년 제정된 종래 북한 민법 제54조는 협동단체소유권의 객체에 대하여 “토지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을 열거하고 있었다.

21. 1999년 북한 민법 제54조의 개정은 북한 헌법 제22조 제2항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림집승’은 집에서 키우는 개·닭·토끼 같은 짐승인 ‘집짐승’에 대응하여 소·말과 같이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인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1
2
3
4
5
6

이것들이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이는 입법조치로서 이들에 대한 사유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정재산의 공동소유 규정을 명시화하고 있다. 즉 북한은 가정재산²²과 관련해서 1999년 민법(61조)을 개정하여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정재산²³을 공동소유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향후 개인 살림집같이 나눌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가정성원의 공동소유로 하도록 하는 입법조치로서 북한에서 개인의 재산권적 지위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⁴

셋째, 무상계약에 대한 유상성을 인정하고 개인소유권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즉 북한은 1990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공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임계약에 대하여 착취근절을 위해서 언제나 무상으로 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었으나,²⁵ 1999년 개정 때 위 원칙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상 위 계약들은 무상의 원칙을 취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는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2. 1990년 북한 민법 제61조는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을 ‘가정재산’으로 하고,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을 ‘개별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을 구분하고 있다.

23. 종래 북한 민법의 가정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사회주의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북한법의 독자적인 태도로서 일종의 공동소유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신영호, “북한 민법상 소유와 계약제도,” (북한법연구회 제75회 월례발표회, 2005.4.24), p. 8 참조.

24. 북한은 2002년 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상속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 개인살림집같이 나눌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12조), 1999년 민법 제61조의 개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25. 1990년 북한 민법은 계약을 통하여 개인이 이윤을 짜내는 도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팔고사기계약을 제외하고 꾸기계약, 빌리기계약, 보관계약 등 공민을 당사자로 하는 일반계약을 무상계약으로 제한하고 있고, 팔고사기계약에서도 전매차익을 가져오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다(155조 2항, 167조 2항, 179조, 221조).

이는 계약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로서, 이에 따라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개인소유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넷째, 인격권 침해 시 위자료책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1999년 개정에서 제248조 제2항에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민법(751조)과 같은 맥락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가정 안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등으로 인격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종래 위자료 자체를 부정하던 북한의 민법이론²⁶의 변화가 반영된 상징적인 입법으로서, 소유권 등 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법과 상속법

가.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1) 1990년 가족법의 제정

1990년 제정된 북한 가족법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먼저 제정되었던 1946년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및 그 시행세칙

²⁶ 종래 사회주의 민법이론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있으며, 예컨대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 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배상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野村好弘·淺野直人, 『中國民法の研究』(東京: 學陽書房, 1987), pp. 145~146. 북한의 민법이론도 이에 따른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투쟁이 자본가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강요한다는 억지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85), p. 145.

1
2
3
4
5
6

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원칙’(6조)을 밝히면서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 자유결혼의 원칙(8조 1항)과 일부일처제와 중혼금지(8조 2항), 등록에 의한 결혼의 성립(11조), 부부의 남녀평등권(16조), 부부가 각자의 성(姓)을 그대로 가지는 부부별성주의(17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행사의 원칙과 대리(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²⁷

다만 1990년 북한 가족법은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20조 2항)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²⁸에서와 달리 이혼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자유이혼 및 협의상 이혼을 부정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오히려 퇴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²⁹ 특히 이와 관련해서 2010년 제정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54조)은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5장)의 ‘리혼을 막기 위한 교양’에서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혼자유권을 제한하는 명문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27. 이 밖에 1990년 북한 가족법은 상속이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으로서 상속권이 보장됨을 밝히면서(5조), 남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상속의 몫에 대한 평등권 인정(47조)을 비롯하여 상속순위(46조), 상속권의 박탈(48조), 상속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49조), 유언상속(50조), 사망자의 진 빚에 대한 책임(51조), 상속기간(52조), 상속분쟁의 해결(53조) 등의 규정을 두어 상속권을 재산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8.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10조에서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협의에 의한 리혼서를 소관 시·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써 리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11조에서 “협의에 의한 리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는 소관 인민재판소에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었다.

29. 북한은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경솔한 이혼을 남발시켜 가정의 파탄과 자녀이익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1956년 3월 ‘리혼절차를 일부 변경할 데 관하여’(1956.3.8, 내각결정 제24호)와 ‘리혼사건 심리절차에 관한 규정’(1956.3.15, 사법성규칙 제9호)을 제정하여 ‘협의상 이혼’을 폐지하고 오직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서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북한의 가족법에도 없는 규정으로서, 가정 안에서의 아동의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이혼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인권침해적인 규정이 된 경우이다.

(2) 2004년 가족법의 개정

북한은 2004년 12월 7일 가족법을 개정(2차)하여 “이혼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동법 20조 3항). 이는 종래 재판상 이혼의 등록기간에 관한 해석론³⁰을 입법화 시킴으로써 이혼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이혼등록이 되지 않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소위 축출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반사적 효과를 가져 온다.

나. 상속법의 제정

(1) 2000년 상속법의 제정과 그 의미

북한은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으로서 상속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2002년 ‘상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북한 상속법의 제정은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 아래의 상속제도를 반영하여 1985년 상속법을 제정한 것³¹에 영향을 받은

30. 大内憲昭,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家族・社会・国家制度,” 『統一評論』(1991), p. 60; 신영호, “북한가족법의 내용과 특색,” 『북한법연구』(서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p. 243에서 재인용.

31. 중국은 1978년 이후 경제개혁·대외개방을 표방하면서 종래의 계획경제질서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제도와 상속제도의 변화를 보여 왔으며(河山·肖水, 『繼承法概要』(北京: 群众出版社, 1985), p. 12; 鈴木賢, “中國民法における民法通則の制定とその背景 1,” 『法律時報』, 第60卷 第3號(法律時報社, 1986), p. 72.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85년 4월 10일 중국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상속법의 제정은 그간의 진행과정을 포함하여 북한에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사영경제 및 개인소유권의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북한 상속법은 특히 시장화 및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띤다.

(2) 시장화에 따른 상속재산의 확대

종래 북한은, 재산권은 국가에서 정해진 한도 이외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을 의무를 수반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³² 이에 따라 상속제도에 있어서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금지와 착취관계의 청산 및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것³³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종래 북한 헌법과 민법상 개인소유권의 대상과 범위는 착취의 대상이 되는 사회주의적 소유(국가소유와 집단소유)와는 구별된다.³⁴

그러나 2002년 북한 상속법(13조)은 상속의 대상으로 ‘살림집’과 ‘개인부업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외에 북한 민법의 개인소유권의 범위³⁵보다 상속의 대상을 보다 확대

32. 김운용, “북한헌법질서의 이론과 실제,” 『북한법률체계연구(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총서 16)』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p. 81.

33.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p. 353.

34. 사회주의소유권과 개인소유권을 구별하는 사회주의민법의 태도는 “사회주의소유로는 국가소유(전민소유), 콜호즈 및 기타 협동단체와 그들의 조합체의 소유, 공공단체소유가 있다. 개인소유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된다”고 규정했던 1964년 러시아 민법에 기초한다(동법 93조).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구소련민법이론은 “사회주의소유 및 개인소유는 기본적 구분방법이다. 사회주의소유는 공공화된 재산을 말하는 반면에, 개인소유는 매개 시민의 공공화 되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사회주의소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를 배제하는 공공소유이다. 사회주의소유로는 대규모 생산수단을 포함한 모든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Братуль С.Н., Садилов О.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1982), § 93.

35. 개인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북한 민법(59조)은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³⁶ 이러한 북한 상속법의 태도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위해서 텃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번다거나 일부 주민들이 자기가 살림집을 지어 살기도 하는 등 이미 현실화된 개인부업경리를 실체로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에 의해 취득한 재산,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살림집에 대해서 개인소유권과 상속의 대상이 되는 개별재산을 법률적으로도 보장하는 입법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³⁷

(3)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 가능성

1990년 북한 가족법(11조 2항)은 사실혼을 부정하여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³⁸ 그러나 북한 상속법(56조)은 “재판기관은 상속시키는 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거나

있다”고 규정하여 ‘살림집’과 ‘개인부업경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을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나, 북한 가족법은 상속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³⁶ 2002년 북한 상속법은 제13조에서 상속의 대상과 관련하여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2.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3. 개인부업경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4.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료전기재, 5.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6. 그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³⁷ 북한의 시장화 및 사유화가 보다 진전되면 중국 상속법(3조 2호 및 5호)이 상속 대상으로 가족을 포함하여 ‘법률이 공민의 소유를 허가한 생산수단’으로 다루는 태도로도 나아갈 수 있는 과도기적 입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³⁸ 1990년 북한 가족법(11조 2항)은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실혼 관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종래 사실혼 등의 연고자에 대하여 상속권 등에서 특별히 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종래 북한이 사실혼 배우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폐쇄적인 통제사회인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사실혼 문제는 특별히 법적 관심사가 될 여지가 없었으리라고 판단된다.

1
2
3
4
5
6

또는 부양받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1057조의 2)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을 찾아 이동하는 북한 가족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에서 사실혼의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3. 여성권리보장법

가. 여성권리보장법의 제정과 법적 지위

북한은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³⁹ 동법은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가족법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가정에서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사항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법인 가족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띤다. 이밖에 여성권리보장법은 정치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띤다는 점에서 공법적 성격을 띤다.⁴⁰

³⁹ 2010년 제정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1조~10조),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11조~21조),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22조~37조),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38조~46조),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47조~56조), 제6장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지도통제(57조~62조) 등 6개장 6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⁴⁰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10조 2항)은 “녀성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관련법과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에 대한 권리, 교육, 보건에서의 권리 등과 관련해서는 위 권리를 규율하는 관련법규인 노동법,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인민보건법 등의 규정은 여성권리보장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 가족법과의 관계에서는 가족관계 중 특히 가정에서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사항만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가족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띠게 되며, 또 동법(52조)은 그 운용에 있어서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여성의 권리보장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장악지도하여야 하는 함을 고려할 때 공법의 성격으로

나. 여성권리보장법의 인권 관련 규정의 특징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의 인권 관련 규정의 특징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1조, 2조)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남녀평등에 입각한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정치적 권리보장(11조~17조)과 행정적·형사적 책임의 병존(55조) 등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띠고 있다.⁴¹

둘째, 여성권리보장법의 제5장(인신 및 재산적 권리) 및 제6장(결혼 및 가정의 권리)에서 상속권평등의 원칙(3조), 자유결혼과 일부일처제(8조) 등 가족법 및 상속법을 비롯한 종래 북한법의 관련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⁴²

셋째, 여성권리보장법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교육·문화·보건분야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18조), 입학 및 진학, 졸업배치에서의

서의 지위를 같이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⁴¹ 여성권리보장법은 제2장 사회정치적 권리에서 사회정치적 권리보장의 기본요구(11조), 선거권과 피선거권(12조), 국적취득, 변경, 보존의 권리(13조),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14조), 여성간부의 등용(15조), 사업분야의 보호(16조), 신소청원의 권리(17조) 등 사회·정치적 권리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을 위반한 공민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의 병존(55조) 등 정치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다.

⁴² 여성권리보장법은 상속에서의 남녀평등(43조), 결혼, 가정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44조), 자유결혼 여성의 자유결혼권(39조), 이혼시의 재산분할(48조)은 각각 북한 상속법의 상속권평등의 원칙(3조)과 북한 가족법의 상속 몫(7조), 결혼의 보호원칙(2조), 자유결혼과 일부일처제(8조), 재산분할(39조)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권리보장법의 가족관계에서의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위 규정들은, 기존의 가족법, 상속법 관련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을 띤다.

남녀평등(19조), 노동조건의 보장(26조), 사회보험제의 적용(26조) 등 교육·문화·보건의 권리 및 노동의 권리와 관련한 인권 규정을 다수 담고 있다.⁴³

넷째, 여성권리보장법은 인신의 불가침권(37조),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38조), 여성의 인격 및 명예존중(41조) 등 인격권 및 재산권과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인권 관련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⁴⁴

4. 보건의료법규

가. 의료법의 제정

종래 북한은 의료의 기본법이라는 법은 없었고, 인민보건법이 의료에 관한 추상적 규정을 일부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1997년, 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료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의료법은 앞서 제정된 인민보건법에서와 같이 완전하고 전반

43. 여성권리보장법은 제3장에서 교육·문화·보건과 관련해서 입학 및 진학, 졸업배치에서의 남녀평등보장, 여학생의 신체와 건강의 보호증진, 의무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권리의 무, 직업기술교육조건의 보장, 문화생활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 농촌여성의 교육 등에서의 권리보장 등 사회보장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18조~25조). 또 동법은 제4장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노동조건의 보장, 노력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여성에게 일종 직종분야의 노동금지, 노동보수와 기술 등에서의 남녀평등,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부당한 제적금지, 사회보험제의 적용 등 노동의 권리를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26조~35조).

44. 여성권리보장법의 인신 및 재산적 권리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련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을 띠며, 이러한 것들로는 인신의 불가침권(37조),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38조), 여성의 인격 및 명예존중(41조), 인신 및 재산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보장의 기본요구(36조)과 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은 각각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인권과 여성의 기본적 자유의 향유(3조) 및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와 여성의 차별금지(11조), 인신 및 재산권 등 법 앞에서 남녀평등권의 부여(15조)의 관련 규정을 들 수 있다.

적인 무상치료제(11조), 의사담당구역제 등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22조, 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건분야에서 자기 들만의 우수한 인권보호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⁵ 특히 북한은 무상 치료제에 대해서 치료를 위한 접수로부터 진찰, 치료 및 해산방조와 외 래치료, 입원치료, 완전치료, 요양치료 등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와 요 양소에 오가는 여비까지도 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다.⁴⁶ 그리 고 의료법(11조)은 물질적 방조가 필요한 산전산후의 여성과 부양가족 에 대하여 식량, 보조금, 분배 몫을 국가·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은 예방의학이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임을 밝히 면서,⁴⁷ 의사담당구역제에 기초한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가 주로 어린이와 산모의 건강권을 미리 예방하는 아동 및 여성에 관한 인권 관련 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 의료법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23조, 24조), 태아의 검사와 인공임신조작금지(28조), 구급환자의 우선치료(25조), 의료기관 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26조) 등의 규정도 임신부와 태아를 비롯 하여 여성 및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다.

⁴⁵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평양: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⁴⁶ 북한 인민보건법 제9조는 무상치료제의 내용에 대하여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실험검사·치료·수술·왕진·입원·식사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요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요양을 위한 왕복여비는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건강상담·예방접종 등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라고 하여 위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⁴⁷ 북한은 종래 자본주의사회의 의학에 대하여 의학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 착취를 가져오는 대상이 되는 임상의학이 중심이라고 비판하면서 질병의 근원자체를 없애는 예방의학이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다.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편, 『동의학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p. 727.

나. 의료법과 인민보건법의 개정

북한은 2000년에 의료법, 2001년 인민보건법을 개정하였다.⁴⁸ 이 중 후자는 종래보다 정치성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만 있었을 뿐이고,⁴⁹ 2000년의 의료법개정에서 의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규정(13조 3항)을 둬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및 보건권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⁵⁰ 이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환자의 동의권을 침해한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민법이나 손해보상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환자가 여성이나 아동인 경우에 건강권 및 보건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5. 노동법과 노동보호법

가. 1999년의 노동법의 개정

북한은 시장화 이전인 1978년 노동법을 제정하면서⁵¹ 여성의 노동

48. 2000년 이후 북한은 인민보건법과 의료법 이외의 다른 의료법규에도 많은 개편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은 마약관리법(2003년 8월 13일 제정, 2005년 5월 17일 개정), 전염병예방법(1997년 11월 5일 제정, 1998년 12월 10일 1차 개정, 2005년 12월 13일 2차 개정), 약초법(2004년 12월 29일 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6), pp. 657~705.

49. 북한은 2001년 2월 1일 인민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인민보건사업의 주요방침에 대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수행'을 '사회주의 위업수행'으로 개정하여 정치성과 혁명성을 종래 태도보다 완화하였다. 이 밖에 종래 인민보건법은 연설·교훈·설득하는 투의 표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비간결성'을 그 특징 및 한계로 하고 있었으나, 2001년의 개정 인민보건법은 종래 비간결한 법률용어를 보다 '간결성'을 갖는 규정으로 개선하고 있다(9조, 11조, 12조, 41조, 42조).

50. 북한은 2000년 의료법 개정에서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의료검사에서 사망 같은 불량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의를 받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설명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51. 북한은 노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제정하였으며(제9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채택), 이후 동법을 폐지하고

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관련 규정을 두었다. 북한 노동법은 국가가 여성이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며, 이에 발맞추어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들도 여성에게 개별 위생실을 꾸려주고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출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31조). 이 밖에 북한 노동법은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근로조건의 특별배려(59조), 여성근로자들의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휴가보장(6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² 그러나 북한 노동법은 집단주의원칙에 의한 사회주의 노동과 계획과제에 대한 정확한 수행의 원칙을 강제하는 규정을 뚝으로써(3조, 97조, 8조, 10조), 위의 여성근로자의 보호 규정이 사실상은 사문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20조).

나. 2010년 노동보호법의 제정

북한은 2010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 ‘노동재해와 사고심’의 규정과 ‘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 가족의 생활보장과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동법은 ‘노동재해와 사고심’을 다룸에 있어서

1978년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을 채택하였고, 이후 1986년 2월 20일과 1999년 6월 16일 각각 개정하였다.

⁵² 북한 노동법 제59조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근로조건의 특별배려와 관련하여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법 제66조는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보장과 관련하여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
3
4
5
6

‘그 재해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의무화하면서 ‘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63조 6호, 71조), 이에 따라 피해자나 가족은 위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⁵³ 이는 공민 개인이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6. 형법

가. 2004년 형법의 개정

북한은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매해 1차례 이상 형법을 개정해왔다. 특히 2004년의 형법 개정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범죄와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시장화를 뒷받침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 즉 2004년 북한의 개정 형법은 ‘개인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던 것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개정(301조, 302조)하는 등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범죄와 형벌을 강화하고 있다.⁵⁴ 그러나 2004년 이후 북한 개정 형법은 거간죄, 대부거래질서 위반죄, 암거래죄 등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⁵³ 북한 노동보호법(71조)은 ‘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로동대책을 세우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⁵⁴ ‘개인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범죄’ 이외에도 2004년 북한 개정 형법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범죄와 형벌을 강화한 것으로는 절도, 공갈, 사기, 횡령, 파손 등 개인의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 점(동법 296조~300조), 불법적으로 상표 및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상표권 침해범죄’를 신설한 점(동법 113조) 등을 들 수 있다.

신설하거나 기존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상반된 모습⁵⁵을 같이 담고 있다.

나. 그 밖의 형법의 개정

위에서 살펴본 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의 이중적 태도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와 형벌에 대한 최근 형법의 개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과 시장화 이후 여성이 가족부양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특히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범죄인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의 형벌에 대하여 북한은 2012년 형법(280조)에서 종래(2009년 형법)의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서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으로 형벌의 기준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⁵⁶

⁵⁵. 2004년 북한 형법이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는 ‘거간죄’(114조),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건설죄’(132조),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150조) 등을 들 수 있고, 기존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 것으로는 ‘살림집 비법매매죄’(149조), ‘주체 농법대로 지도하지 않는 죄’(150조), ‘생산제품 비법처분 죄’(161조) 등을 들 수 있다. 또 2012년 북한 형법은 ‘대부거래질서 위반죄’(104조), ‘암거래죄’(111조)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⁵⁶. 다만 2012년 형법 개정시 노동단련형 자체를 종전 ‘6월~2년’이던 것을 ‘6월~1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의 형벌에 대하여 2012년 형법(280조)에서 종래(2009년 형법)의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서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으로 개정된 것일 뿐이고 이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범죄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이 노동단련형의 형벌 기준 자체를 도리어 강화하지 않고 약화시킨 것은 분명한 입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Ⅲ. 북한의 시장화 이후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1. 가족법과 상속법

가.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1) 1990년 가족법의 제정

1990년 제정된 북한 가족법은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원칙’(6조)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혼의 효과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의 결정과 양육비의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의 구체화(22조, 23조),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조혼의 금지(9조), 혼생자와 혼외자의 법적 지위평등에 따른 적서(嫡庶) 차별의 금지(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0년 북한 가족법은 이전까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인권 관련 규정으로서, 계자녀와 계부모의 관계 및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모두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법적 지위가 평등한 것으로 하고 있고(29조, 33조), 부모의 이혼 시 3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성기능보다 모성기능을 중요시해서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도록 강제하여(22조 2항) 종래보다 가정 안에서 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중 전 배우자 소생 자녀인 계자녀와 계부모 사이를 법정친자관계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가족법과 상이한 법적 태도이다. 이에 대해 북한 가족법 이론은 어린이를 특별히 귀히 여김으로써 아동 인권에 치중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⁵⁷

⁵⁷ 북한의 가족법 이론은 계부모와 전배우자 소생 자녀 사이에 법정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에 관하여 종래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부정하고, “가족법에서 계부모

그 실재는 사회주의 대가정건설을 위한 의도적인 가족관계의 창출을 유도하는 규정으로서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2) 1993년 가족법의 개정

북한은 1993년 9월 23일 가족법을 1차 개정하면서,⁵⁸ 자녀 양육비(23조)에 관한 규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자녀양육비와 관련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직권주의로부터 당사자의 합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주의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북한은 1993년 가족법 개정에서 후견인의 선정조건에 관하여 종래⁵⁹와 달리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로 수정하였다. 이는 후견의 대상과 관련해서 종래 모든 ‘미성인’을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미성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⁰

와 제자녀 관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어린이를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어주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p. 122.

⁵⁸ 1993년 개정된 북한 가족법의 주요내용은 자녀 양육비(23조), 자녀교양의무(27조),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의 부양(37조), 후견인의 조건과 자격(40조, 41조) 등에 관한 것이었다.

⁵⁹ 북한은 1990년 가족법을 제정하면서 후견인의 선정조건을 규정한 제40조에서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⁶⁰ 1990년 북한 가족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규정한 제41조 제1항에서 “미성인에 대한

(3) 2007년 가족법의 개정

북한은 2007년 가족법을 개정(3차)하면서 혼인무효와 재판상이혼과 관련하여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바꾸었다.⁶¹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관련하여 혼생자와 혼외자의 법적 지위의 평등을 다루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한 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23조 2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혼외자의 인지등록이 창설적 등록임을 명문으로 밝히는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혼외자인 아동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상속법

북한은 2002년 상속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상속 몫은 같다”고 규정하여(동법 19조) 1990년 북한 가족법(47조)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은 남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아동에게도 상속분의 법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상속법(17조 1항)은 제1순위의 상속권자에 대해서 “상속 받는 자로는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직계비속인 자녀와 직계존속인 부모’를 그 범위로 하면서 자녀의 경우에 친생자와 법정친자(양친자, 계

후견인으로서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개정 가족법은 위 내용을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미성인’을 후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⁶¹ 북한의 2007년 개정 가족법은 ‘결혼의 무효’와 관련해서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는 규정(13조 2항)과 이혼의 효과 중 ‘자녀양육비’와 관련해서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는 규정(23조 2항)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결혼의 무효인정 및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친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경우에도 친생부모와 법정부모(양부모, 계부모)를 구별하지 않고 상속권의 법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상속법은 위의 규정(17조 1항)에서 제1순위의 상속인인 자녀의 범위에 ‘출생할 자녀’인 태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1990년 북한 가족법과 달리 상속법이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민법(1000조 3항)이 태아보호를 위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종래 학설⁶²에서만 인정하던 태아의 상속능력을 해제조건설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⁶³ 북한이 종래보다 출생 이전의 태아에 대한 인권보호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아동권리보장법

가.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개정

북한은 1999년 어린이보육교양법을 개정하면서 다산(多産)을 한 산모와 어린이에 대한 특별보호의 규정(21조)을 종래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⁶⁴ 그리고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62. 북한 상속법의 제정이전에도 북한의 가족법 이론은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신영호, “북한가족법의 내용과 특색,” p. 263.

63. 북한 상속법 제48조는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출생할 자의 몫을 남겨놓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문건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단 사건 발생 당시에 태아의 상속분을 남겨놓아야 하고, 이를 남기지 않고 상속을 집행한 경우에는 출생 후 그 몫에 대해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태아보호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 ‘해제조건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64. 1999년 3월 4일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다산(多産)을 한 산모와 어린이의 보호와 관련해서 종래보다 구체화하여 “국가는 한 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 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일터 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와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40조)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1999년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개정내용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보장과 어린이 보육교양을 연결시켜서 어린이의 교육권 및 건강권, 여성의 모성보호와 경제활동권을 다룬다는 점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아동권리보장법의 제정

(1) 아동권리보장법의 제정과 법적 지위

북한은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⁶⁵ 동법은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가족법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가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사항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족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이밖에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치관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젖 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금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21조). 이 밖에 북한은 1999년 어린이보육교양법을 개정하여 종래 5개장 58개조를 6개장 60개조로 개편하고 제5장과 제6장의 제목을 ‘혁명의 후비대(後備隊)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교양원’과 ‘어린이 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각각 ‘어린이보육교양과 보육원·교양원’과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바꾸면서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다.

⁶⁵ 2010년 제정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1조~10조),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11조~21조),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22조~37조),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38조~46조),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47조~56조), 제6장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지도통제(57조~62조) 등 6개장 6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계를 규율하는 특성을 띠는 점에서 공법적 성격을 띤다.⁶⁶

(2) 아동권리보장법의 인권 관련 규정의 특징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의 인권 관련 규정의 특징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1조, 2조)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공고히 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아동중시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⁶⁷ 다만 동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아동중시에 입각하여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동을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라고 정의하는(2조) 등 정치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띤다.

둘째, 아동권리보장법의 제4장(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종래 북한의 가족법 및 상속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⁶⁸ 예컨대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44조)은

66.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10조 2항)은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관련법과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노동에 대한 권리, 가족권, 교육 및 보건에서의 권리 등과 관련해서는 위 권리를 규율하는 관련법규인 노동법, 가족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등의 규정은 아동권리보장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법(2조 2항)은 아동을 ‘사회주의적 건설의 후비대’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정치이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아동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통치관계로 규율하는 근거로서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법은 공법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띤다.

67.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중시원칙’이 동법의 기본원칙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 보건, 가정, 사법 등 각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과 물질적 보장원칙을 그 파생원칙으로 다루고 있다(4조~8조). 여기서 아동중시원칙은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4조), 이는 종래 북한이 어린이 보육교양법 및 가족법에 의한 ‘어린이특별보호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68.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의 규정 중 기존의 가족법과 상속법의 규정을 상당 부분 그대로

1
2
3
4
5
6

후견인의 선정과 관련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아동의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북한 가족법(41조)의 후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권리보장법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11년제 무료의무교육(5조, 23조), 아동교육기관(24조), 아동의 입학과 졸업보장(25조), 아동의 인격존중(26조), 장애아동의 보호(30조),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양육(31조), 아동의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33조) 등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아동의 인권 관련 규정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⁶⁹

넷째, 아동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성명권과 발전권(11조), 이름을 가질 권리, 보살핌을 받을 권리(12조), 출생등록과 국적 취득권(7조) 등 아동의 인격권 등의 인권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⁷⁰의 관련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보장법의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39조), 후견인의 선정(44조), 아동의 수양, 립양(45조), 아동의 양육비(56조)는 각각 북한 가족법의 자녀교양의무(27조), 후견인의 자격(41조), 립양의 권리(30조), 자녀 양육비(23조)의 관련 규정을 들 수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의 아동의 상속권(46조)은 북한 가족법의 상속 몫(47조)과 북한 상속법의 상속권평등의 원칙(3조)의 규정을 들 수 있다.

⁶⁹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아동의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11년제 무료의무교육, 아동교육기관, 아동의 입학과 졸업보장, 아동의 인격존중,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 장애아동의 보호,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양육, 외진 지역의 아동의 교육조건보장, 아동의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아동병원과 병동의 배치, 요양시설을 통한 아동의 권리증진, 영양제와 영양식품 및 생활 보장용품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22조~37조).

⁷⁰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성명권과 발전권(11조), 이름을 가질 권리, 보살핌을 받을 권리(12조),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권리와 출생등록(13조~14조), 사생활, 가족, 서신, 명예, 인격보호(17조)는 각각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생명권과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6조), 성명권, 양육을 받을 권리, 출생등록과 국적 취득권(7조),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명예 등 인격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16조) 등의 규정들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 그 밖의 아동 인권 관련 입법

북한에서는 식량난과 시장화 이후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 15세 미만의 여성 꽃제비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범죄와 형벌은 다루는 ‘미성인 성교죄’에 대해서 2012년의 형법 개정(281조)에서 2009년 형법의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서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으로 오히려 그 형벌의 기준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2001년 시장화 이후 재산권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손해보상법’을 제정하면서,⁷¹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였거나 인격,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도 손해보상책임을 진다”는 규정(40조 2항)을 둬으로써 위자료를 인정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⁷² 이는 자연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개인의 권리구제를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인권보호에 접근하는 입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⁷¹ 북한이 2001년 손해보상법을 제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시장화 현상이 만연됨에 따라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소유의 대상이 확대되고 경제난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재산권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북한은 기존의 민법과 별도로 불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송인호·이승은,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 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p. 257. 따라서 북한에서 재산권,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⁷² 김영규, “북한 계약법의 내용과 특색,”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6,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9·20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 법원행정처, 2007), p. 136.

1
2
3
4
5
6

IV.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상관관계와 변화 가능성

1.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추이의 상관관계

가. 여성·아동에 대한 인권 관련 입법의 다양성과 혼재성

북한의 시장화 이후 진행된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가 시장화와 과연 연관이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시장화와 여성·아동의 인권환경 및 입법이 삼각 축으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입법과정에 있어서 입법자인 북한정권과 인권환경 사이에 호응관계와 긴장관계가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추이의 상관관계는 꼭 ‘이렇다’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측면이 혼재하고 있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첫째, 북한에서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와는 관계없이 그야말로 명목상으로 인권에 관한 입법을 단행한 측면, 둘째 시장화 이후의 법규범과 법현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그간의 입법추이에는 인권을 고양시킨 긍정적인 요소와 오히려 후퇴시킨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측면, 셋째, 시장화 이후 이루어진 입법이 인권보호와 더불어 인권침해를 수반하기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측면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위의 첫째의 모습에 따른 입법의 변모는, 북한에서의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의 실제상황에 대한 반성의 자각 없이 그야말로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적당히 응대하는 차원에서 인권에 관한

규정 및 법을 정비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권 규정의 체계화·상세화’에서 살펴본다.

둘째의 모습에 따른 입법의 변모는, 시장화 이후의 법규범과 법현실의 상호관계와 관련해서 입법의 변모가 단순히 장식품적인 성격으로 전락한 부정적인 요소(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와 실제 여성 및 아동의 인권에 긍정적인 요소(가부장적 사회주의의 둔화, 국가의 부양의무 약화와 인권의 제고)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장화 이후 인권 관련 법규범과 법현실의 상호관계’에서 살펴본다.

셋째의 모습에 따른 입법의 변모는, 시장화 이후에 발생한 인권상황이 북한정권에 호응관계와 긴장관계를 같이 수반하여 입법 사이에 인권보호의 순기능과 인권침해의 역기능을 수반하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같은 법규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장화에 따른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적 입법태도’에서 살펴본다.

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권 규정의 체계화·상세화

북한의 시장화는 어느 정도 대외개방과 이에 따른 국제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는 종래보다 국제적인 인권 관련 규약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북한은 실제로 시장화가 진행된 1990년 이후 아동인권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인권 관련 조약에 가입했으며, 이에 따른 협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인권 협약의 원칙과 요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⁷³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1990년 제정

⁷³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1996년 2월과 2002년 5월에 제1차

된 민법 및 가족법과 1997년, 2001년 및 2002년 제정된 의료법, 손해 보상법, 상속법 등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을 수차례 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10년 각각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및 노동보호법을 제정하여 사회생활, 정치적 권리, 교육·문화·보건의 권리, 가정에서의 권리의 보장 등을 중심으로 국내법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권 규정을 체계화 및 상세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위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시장화가 진행된 이후 여성 및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다수의 입법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위 입법 중 2010년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등의 인권 관련 규정 등은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의 압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또한 1998년, 1999년의 헌법 및 민법의 개정과 2002년 상속법 제정 등의 인권 관련 규정은 시장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관련 입법을 하는 것에 주된 이유가 있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및 제2차 아동권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12월 제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414, 446.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고 치부하고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던 종래와 달리 인권을 개선하는 듯 한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와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인권탄압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제성호, “북한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p. 282.

다. 시장화 이후 인권 관련 법규범과 법현실의 상호관계

(1)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북한은 시장화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권 규정을 체계화·상세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북한에서 대부분 장식품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타당성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제도로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⁷⁴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의 상징으로 무상치료제를 자랑하면서 인민보건법과 의료법 등 인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입법을 제·개정해왔다. 그러나 재정이 파산에 이르러 1990년대 이후 무상치료제는 장식품에 불과할 뿐 도리어 의료서비스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의 시장화 경향으로 인해 보건의료는 실제로는 유료로 이루어지고 있다.⁷⁵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상교육제 역시 ‘법전 속의 법’으로서만 남아있을 뿐이고, ‘생활 속의 법’으로서는 형해화(形骸化)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⁷⁶

74.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력갱생으로 건강과 식량을 해결해야 하는 현실과 2002년 경제개선행동계획 이후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시장화가 더욱 이루어진 반면, 북한법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가져왔다. 따라서 법제와 입법이 갖추어 있다하더라도 그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 법집행자들의 철저한 준법정신 등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큰 변화가 가져오기 어려운 북한법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75. 법무부, 『2011 북한실태 연구보고(법무자료 제296집)』 (과천: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pp. 78~79.

76.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가중된 경제난으로 1990년 이후 생활난과 생활고 및 교과서와 학용품공급이 중단되어 이를 학생 스스로 구입하고 학교 건물관리, 학교건축, 땔감용나무의 구입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져 무상교육제 역시 허울뿐이라고

(2) 가부장적 사회주의의 둔화

북한은 1990년 제정된 가족법 등에서 봉건적 가족관계를 개혁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과 남녀평등의 원칙을 가족법의 지도원리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의 가정생활은 남존여비와 부(夫)와 부(父)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주의의 모습을 띠어왔다.⁷⁷

그러나 장마당에서 주로 여성이 장사를 하는 등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실질적인 경제력을 갖게 됨에 따라 실제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발언권이 점차 강해지고 남편의 위상도 종래의 실질적인 권위자에서 형식적인 권위자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⁷⁸ 또한 북한이 2002년 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살림집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인정하고 태아에게 상속능력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가정 안에서 여성과 자녀를 상대적으로 무시하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점차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다. 이러한 변모들은 북한의 가족법의 지도원리인 남녀평등의 원칙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특별배려원칙이 형식적인 법원칙에 불과했던 것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법원칙으로 실제 운용(해석, 적용)될 수 있는 변화의 조짐으로 평가된다.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p. 196.

77. 형식적인 남녀평등의 법제에도 불구하고 종래 북한에서 여성이 생존권, 경제활동권, 가족권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독자적인 여성운동과 여성주의 의식이 아직 미발달한 것에 그 원인을 찾는 견해도 있다.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p. 186.

78.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이후 여성의 지위 및 가치관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가 62%를 보이고 있고, 남편의 위상도 53.8%가 종래의 실질적인 권위자가 아닌 형식적인 권위자로 변화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p. 421~422. 이는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남성의 무력화, 부부의 법적 평등의 실질화 등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서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종래의 형식적 부부공동친권행사로부터 실질적인 부모공동친권행사로의 변화조짐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국가의 부양의무 약화와 인권의 제고

북한은 가족법(38조)과 어린이보육교양법(39조) 등에서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 등 경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부양의무를 규정하면서, 사회보장적인 위 입법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이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더불어 점차 확대된 시장화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따른 배급제 폐지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물질적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어린이의 상당수가 기아와 영양실조로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⁷⁹

특히 1990년대 출현한 북한의 꽃제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⁸⁰ 이러한 북한 꽃제비의 현실은 아동의 상당수가 건강권·생명권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은 부모가 없는 아동 등 경제능력이 없는 북한

⁷⁹-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물질적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6.1%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3월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발표한 ‘2012년 북한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총인구(2,449만 명) 중 5세 미만 북한 어린이는 6.96%(170만 5천만 명)로서 그 중 15.2%(26만 2,160명)가 저체중이고 전체 어린이의 29%가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p. 192.

⁸⁰- 1990년대 북한 식량난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등의 이유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집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북한의 꽃제비는 그 연령이 대체로 13세부터 18세 사이가 가장 많은 아동으로 배급제 폐지와 화폐개혁실패 등 경제난이 심화된 2009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북한 당국이 이들을 위한 보호·수용시설을 운영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위 시설도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p. 454~456;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p. 194.

1
2
3
4
5
6

주민에 대하여 국가의 부양의무를 나타내는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자력갱생을 위해 식량을 구하려 움직이는 여성과 아동에게 국가적 간섭이 약화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권 등 인권이 보다 제고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시장화에 따른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적 입법태도

북한은 시장화가 진행되어 온 그간의 사정을 반영하여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경제 관련 범죄의 형벌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여성과 아동 등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도모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⁸¹ 그러나 북한은 2004년 이후 형법을 개정하면서 ‘거간죄’, ‘대부질서위반죄’, ‘암거래죄’ 등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신설하거나 ‘살림집 비법매매죄’ 등 체제유지를 위해서 기존 범죄의 형벌을 강화하여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는 이중적 입법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화 이후 특히 북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성폭력이 많아지고 있으나,⁸² 이와 관련한 ‘북종관계에 있

⁸¹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여 ‘개인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던 것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개정(동법 301조, 302조)하고, 불법적으로 상표 및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상표권 침해범죄’를 신설(동법 113조)하는 등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범죄와 형벌을 강화하여 종래보다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⁸²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종래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하는 여성의 성상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장마당 보안원, 열차승무 보안원, 군인 등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이 자주 일어났음은 물론이고, 장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발급, 열차표 구매 및 검열의 과정에서 법기관 및 당기관 사람들에게 드물지 않게 성폭행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p. 426~428;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p. 189.

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의 형벌에 대하여 2012년 형법(280조)을 개정하여 종래의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형벌의 기준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 북한에서 꽃제비 등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이나, 이와 관련한 '미성인 성교죄'에 대하여 북한은 2012년 형법(281조)에서 종래보다 형벌의 기준을 약화시키고 있다.⁸³

위와 같이 북한에서는 시장화 및 식량난 이후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인권침해의 현실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도리어 이를 규율하는 형법상의 형벌은 약화되고 있어서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⁸⁴ 이러한 현상이 시장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예전의 형벌이 너무 과도했다는 반성적 자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장마당 등에서의 여성활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뒤의 것이 이유라면 부정적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여성 및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에 영향을 준 경우라 할 수 있다.

⁸³ 북한에서 꽃제비 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등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확대로서 아동권리협약(34조, 35조)과 아동권리보장법(18조)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⁸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 427.

1
2
3
4
5
6

2. 향후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가. 헌법 또는 민법상 인권에 관한 규정의 보완가능성

북한은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된 2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⁸⁵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2010년 12월 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⁸⁶ 또 북한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4년 9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⁸⁷

위에 비추어보면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 및 아동권리보장법에서 명시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상적 규정들에 대하여, 향후 북한은 국제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내법의 조화를 꾀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에 따라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상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상적 규정들을 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헌법을 비롯한 민법·가족법 등 기본법상의 기본권·인격권·재산권 등에서 여성 및

⁸⁵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권의무 및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같은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는 제도로서 '보편적 정례검토'라고도 일컬어지며, 북한은 2014년에 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UNHRC,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PRK, 30 January 2014; 이규창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통일과 법률』, 제19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4), pp. 14~15에서 재인용.

⁸⁶ 이규창, 위의 글, pp. 16~17.

⁸⁷ 주 97) 참조.

아동의 인권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나. 인권 관련 추가 입법의 필요성 내지 가능성

북한은 2차 UPR에서 유엔 북한 인권이사회의 권고 중 83개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나머지 185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뒤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유보하였다. 여기서 입장을 표명을 유보한 것 중에는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의 개선뿐만 아니라 입법을 촉구하는 권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⁸⁸ 이 중 북한은 최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퇴치, 어린이에 대한 폭력 방지 등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였다.⁸⁹ 따라서 1990년대 북한의 시장화 이후 여성 및 아동의 인권 관련 법규정들이 변모한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이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시장화가 개방화 및 국제화를 수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입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⁸⁸ 2차 UPR에서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중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실시 지속,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여성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보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수감자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 철폐와 여성폭력에 대한 법에 따른 처벌, 강제낙태 금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전개, 아동에 대한 신체형 부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및 이행, 고아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규창, 위의 글, p. 32. 이 중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실시 지속,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여성폭력에 대한 법에 따른 처벌, 강제낙태 금지, 아동에 대한 신체형 부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및 이행 등 대부분의 것은 법의 제·개정을 수반하는 권고들이다.

⁸⁹ “유엔,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지 등 권고 보고서 채택(종합), 『연합뉴스』, 2014년 9월 20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17692&year=2014>>.

첫째,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 가능성이 예측된다. 북한은 2010년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46조)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반권고⁹⁰를 수용하여 가정폭력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처벌규정이 없으며,⁹¹ 또 실제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⁹²

그러나 북한에서는 식량난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남편의 심한 구타로 부인이 가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 대해서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여성의 보호 및 구제, 가해자를 기소 및 처벌 하는 등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을 도입하도록 북한에 권고한 바 있다.⁹³ 이에 따라 북한에서 시장화와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속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이 형법 등에서 가정 안에서의 폭력방지를 위한 범죄 및 형벌 규정을 두거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단행법으

90.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반권고 19:24.(r)’는 “가족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로 “가정폭력의 경우 민사 구제와 필요한 형사 처벌, 여성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에 관하여 명예 변호를 막기 위한 입법, 가족 내 폭력 피해자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피난처 제공, 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 위 협약 ‘일반권고 19:24.(b)’는 “당사국은 가정폭력, 학대, 강간, 성폭력, 기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법이 모든 여성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완전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책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1.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은 “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찰지역 또는 자기 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2. 북한에서는 실제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정문제라고 하여 관여하지 않거나 신고하여도 남편에게 충고 정도를 할 뿐,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p. 433~434;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p. 189.

9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 435.

로의 입법이 요청되며, 그 가능성도 예측된다.

둘째, 여성의 장마당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현실과 이를 위한 관련법이 마련될 필요성이 시급하며 또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시장화에 중요한 매개수단인 장마당은 상당 부분이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는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장마당활동을 하는 여성은 열악한 장마당의 장사 환경과 과도한 노동부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여 건강을 더욱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⁹⁴ 위에서 여성의 장마당 활동과 관련하여 열거한 모습들은 여성권리보장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⁹⁵ 위 여성들의 건강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며, 북한에서 장마당이 없는 경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추가적 입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동권리보장법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아동권리협약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가능성도 예측된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으나 일부 협약에 대해서는 유보해왔는데,⁹⁶ 2014년 9월 아동 매매와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 등을 목적으로 한

94. 위의 책, p. 441; 뿐만 아니라 장마당활동을 하는 여성은 장사 길에서 마주친 보안원, 군인 등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p. 189.

95. 여성의 장마당활동과 관련하여 열거한 모습들은 북한이 2010년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의 인신의 불가침권(37조),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38조), 여성의 인격 및 명예존중(41조) 등을 위반하는 인권의 실상이다. 따라서 북한이 장마당활동을 하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은 여성권리보장법을 위반하는 것들이다.

96.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으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14조), 국내외적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15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의 이용방지(33조), 무력 분쟁과 15세 미만 아동의 징병불가(38조) 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었다. 임순희 외,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통일정세분석 2011-08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21;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p. 191.

1
2
3
4
5
6

아동권리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인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⁹⁷ 이에 따라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 중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규정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나,⁹⁸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앞의 협약상의 권리들은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꽃제비 등 10대 소녀들에 대한 성매매와 마약거래가 상당히 행해지는 등 아동이 마약과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⁹⁹ 따라서 북한이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2014년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듯이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의 이용방지 등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그 태도를 변경함은 물론 아동권리보장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성 내지 가능성이 예측된다.

97. “북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 『미국의 소리』, 2014년 9월 11일,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445328.html>>.

98.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사회생활가족관계에서의 아동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성명권과 발전권(11조), 이름을 가질 권리, 보살핌을 받을 권리(12조),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권리와 출생등록(13조~14조), 사생활, 가족, 서신, 명예, 인격보호(17조)는 각각 아동권리협약의 생명권과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6조), 성명권, 양육을 받을 권리, 출생등록과 국적 취득권(7조),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명예 등 인격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16조) 등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99.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물질적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6.1%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3월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발표한 ‘2012년 북한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총인구(2,449만 명) 중 5세 미만 북한 어린이는 6.96%(170만 5천만 명)로서 그 중 15.2%(26만 2,160명)가 저체중이고 전체 어린이의 29%가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p. 192.

V. 결 론

이상에서 199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북한의 시장화 및 사유화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해보았다.

먼저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시장화와 관련해서, 1998년 북한 헌법(24조, 36조, 37조)은 무역활동의 주체를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하고 개인소유권의 주체 역시 ‘공민’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의 시장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1999년 개정된 북한 민법의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재산의 공동소유 규정의 명시화, 꾸기계약 등 무상계약에 대한 유상성의 인정과 개인소유권 범위의 확대, 인격권 침해 시 위자료책임 근거 규정의 신설 등 변모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은 1990년 가족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원칙’(6조)을 밝히면서 기존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원칙의 여성의 인권 관련 규정을 수용하였고, 1997년 가족법을 개정하면서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직권주의를 당사자주의로 변경하였다. 북한은 2002년 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상속권자의 평등과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가능성 등 여성인권의 보호 관련 규정을 두었다. 또 북한은 2004년 가족법(20조 3항)을 개정하여 이혼판결 후 이혼의 등록기간(3개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혼의 효력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 북한은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여성

1
2
3
4
5
6

차별철폐협약의 인권 관련 규정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가족법 등 종래 북한법의 관련 규정을 수용하는 인권보장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이면(裏面)에서는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어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입법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수반하는 규정(54조)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1997년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인민보건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11조), 의사담당구역제 등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22조, 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 태아의 검사와 인공임신조작금지(28조) 등을 규정하여 여성 및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시장화 이후 아동의 인권과 관련해서 1999년 어린이보육교양법(40조)을 개정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보장과 어린이보육교양의 보장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육권 및 건강권, 여성의 모성보호와 경제활동권을 도모하는 인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북한은 2002년 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상속권자의 평등과 태아의 상속능력의 인정 등 아동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아동권리협약과 가족법 등 종래 북한법의 인권 관련 규정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런 반면 북한은 2012년 형법(281조)을 개정하면서 미성인 성교죄에 대해서 종래보다 그 형벌의 기준을 약화함으로써 오히려 인권보호에 역행(逆行)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되어져왔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이 변모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 현상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권 규정의 체계화·상세화’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화

이후 법규범과 법현실의 상호관계에서 특히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가부장적 사회주의의 둔화’, ‘국가의 부양의무 약화와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인권의 제고’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시장화에 따른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적 입법태도’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북한의 시장화와 사유화는 북한사회의 모든 영역과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는 여성 및 아동의 인권과 그 입법의 변모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북한의 시장화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 ‘직접 변수’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배경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향후 북한에서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여성 및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할 것인지 그 필요성 내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여성권리보장법 및 아동권리보장법상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상적 규정들을 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헌법을 비롯한 민법 및 가족법 등 기본법상의 기본권·인격권·재산권 등에서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이 밖에 향후 북한은 시장화가 진행될수록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 ‘여성의 장마당활동과 건강권 등 인권침해 현실과 이를 위한 관련 입법’, ‘아동권리보장법에 미반영된 아동권리협약 규정의 추가 도입’ 등과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 내지 가능성이 예측된다.

1
2
3
4
5
6

참고문헌

1. 단행본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편. 『동의학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법무부. 『2011 북한실태 연구보고(법무자료 제296집)』. 과천: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법제처 편. 『북한법제개요(법제자료 제157집)』. 서울: 법제처, 1991.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85.

손한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 II: 중국의 물권법(법제처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현상(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임순희·김수암·이규창.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통일정세분석 2011-08 (통일연구원), 2011.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6.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평양: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조일호. 『조선가족법』.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조진제. 『북한법연구 IV』. 서울: 법무부, 198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河山·肖水. 『繼承法概要』. 北京: 群衆出版社, 1985.

野村好弘·淺野直人. 『中國民法の研究』. 東京: 學陽書房, 1987.

Abraham Bergson. *Productivity and the Social System - The USSR and the Wes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2003*. Washington D.C.: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04.

Братусь С.Н., Садиков О.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1982.

2. 논문

김영규. “북한 계약법의 내용과 특색.” 『남북교류와 관련한 문제점 6: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9·20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 법원행정처, 2007.

김운용. “북한헌법질서의 이론과 실제.” 『북한법률체계연구(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총서 16)』.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사순문. “북한의 민법 그 실상을 밝힌다.” 『북한』. 제239호 (북한연구소), 1991.

1

2

3

4

5

6

- 송인호·이승은.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 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신영호. “북한 민법상 소유와 계약제도.” 북한법연구회 제75회 월례발표회. 2005.4.24.
- _____. “북한가족법의 내용과 특색.” 『북한법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 이규창.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통일과 법률』. 제19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4.
- 제성호. “북한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법연구』. 제7호 (북한법연구회), 2004.
- 최달곤. “남북한 민법의 비교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 鈴木賢. “中國民法における民法通則の制定とその背景 1.” 『法律時報』. 第60卷 第3號 (法律時報社), 1986.
- 大内憲昭.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家族・社會・國家制度.” 『統一評論』, 1991.

3. 기타자료

UNHRC,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PRK, 30 January 2014

『연합뉴스』.

『뉴시스』.

『미국의 소리』.

1

2

3

4

5

6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식(권리의식)의 재발견

김신 (배재대학교)

I. 서론

II. 인권과 북한의 시장화

1. 북한과 인권
2. 북한의 시장화 개관
3. 북한경제와 북한 주민의 적응력
4. 시장화와 인권(권리)의식의 변화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북한체제 내부에서 진행 중인 경제의 역동성(dynamics), 즉 시장화가 야기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시장과 인권을 관련지어 바라보는 것은 시장화가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 접근이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을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라는 명제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도 다른 인간존재와 유사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북한 주민 역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욕망하는 인간(homo cupiens)’이라는 보편인간론을 토대로 하는 ‘분석 작업’이기도 하다.

북한체제 시장화에 관한 기본인식은 체제 내부의 시장화 실태 및 변화추이, 그리고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가시적·비가시적 추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접근이라 한다면, 특별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현상의 객관적 지표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인민의 ‘의식변화’를 포착함으로써 경제통계의 분석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경제 혹은 경제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증대 및 태도변화,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돈이 주는 ‘편리함’이 북한인민들의 ‘의식’과 ‘행위’를 실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바로 이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시장화는 비단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특히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시장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지속되어왔다.¹ 결국

¹-Paul Liem, “Peace as a North Korean Human Right,” *Critical Asian Studies*,

북한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은 필연적으로 북한체제 내부에 자본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시장화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며 산발적으로 발생한 북한의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일정부분 시스템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² 현재 북한체제 시장화의 추세는 초보적 수준을 넘어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접어들었고,³ 2013년 기준 북한 정부의 대(對) 시장 정책기조는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허용, 나아가 부분적으로는 촉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 한편 시장화와 관련한 국내외 학계의 분석 가운데 북한의 붕괴와 시장화를 연결 지어 바라보는 관점 역시 일부 상존하고 있다.⁵

북한체제 내부의 경제활동, 즉 사적이익의 추구는 이제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배급제가 이미 안정성을 상실한 현 경제여건하에서 개별인민의 경제활동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⁶ 다시 말해 계획시스템의 비효율성, 시장시스템의 확산, 계

Vol. 46, No. 1 (February 2014), p. 116. Market have always existed in North Korea, but they proliferated as a mass means of survival during 1990s' famine, a period of extreme hardship that North Korea refers to as the Arduous March (gonanui haenggun, 고난의 행군).

² 비록 회령이라는 국지적 한계는 있지만, 정은이는 북한시장(market)의 역동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1990년대 회령시장이 자생적(spontaneous) 힘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면, 2000년대 시장은 제도적인 힘에 의해 규격화·표준화되어 발전하였다. 특히 이러한 발전은 한곳에 고착되지 않고 공간이동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태적 역학 관계는 시장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격차(gap)와 차이(difference)에 의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9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p. 273.

³ 정은이,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 평화』, 제1권 1호 (서울대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p. 165.

⁴ 양문수, “2013년 북한의 시장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p. 21.

⁵ Byung-Yeon Kim and Roland Gerard, “Scenarios for a Transition to a Prosperous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Economy Journal*, Vol. 26, No. 3 (August 2012), p. 513. We do not know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a regime collapse may happen in North Korea. It will surely come as a surprise.

획주체의 대중동원 대(對) 시장주체의 자발성, 공적 부조의 결여 대 사적 부조의 강화, 지배담론의 지속 대 신념의 변화 등은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시장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결국 시장 확대 이전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⁷ 덧붙여, 북한체제 시장화와 관련해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시장화라는 주제로 북한을 분석하고자 할 때, 시장과 북한정권을 이분법적으로 고착화 한 후 시장의 확대가 곧바로 북한의 정치체제 붕괴로 인식하는 등식은 과도한 주관적 판단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사회주의 체제의 비공식적 시장기능을 단지 체제외해의 직접적 징후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체제 진단과정에서 시장이 양적으로 확대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북한 당국의 대 시장정책이 통제와 완화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⁸

궁극적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권리의식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사적소유에 대한 집착이 이른바 권리의식으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둘러싼 인권이슈를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은 탈북자의 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사적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북한체제 내부의 역동성과 현장의

⁶ 경제위기 속에서 대규모 암시장이 등장하게 된 것은 국영상업망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비재의 공급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며 특히 식량배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 하에서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에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 본격적 시장화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15권 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48.

⁷ 박영자, “북한의 시장화와 노동일상,”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p. 246.

⁸ 진정미, “중국과 북한에서 시장: 자본메카니즘의 변용과 지속,” 『한중사회과학연구』, 제30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p. 17.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

II. 인권과 북한의 시장화

1. 북한과 인권

인권(human rights)은 인류보편의 언어이자 모든 사람이 그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⁹ 유엔세계인권선언(1948)에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 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적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¹⁰ 동시에 인권은 원칙적으로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달리 말해 인권에 대한 존중은 이념, 문화, 종교, 지역의 한계를 넘어 인류공통의 규범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특정국가에 속한 개인이 소위 반인륜적 범죄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 개별국가의 주권(sovereignty)과 국제사회규범은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개별국가의 주권과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사이에는 필연적 긴장관계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국가들은 국제조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일정부분 자국의 통치권을 제한하고 있다. 덧붙여 국제법의 적용범위 밖의

⁹ 장은주, 『인권의 철학: 자유주의를 넘어, 동서양이분법을 넘어』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10), p. 367.

¹⁰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 258.

상황이었던 것을 국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은 이미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기도 하다.

국제인권법은 일반인권법과 특별인권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인간의 자유와 육체적·도덕적 완전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A규약, 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 유럽인권협약, 아메리카인권협약, 아프리카인권헌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별인권법으로는 특정한 대상과 상태 하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들로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194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1965년),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1989년), 무력충돌 시 인권의 보호를 위한 4개 제네바 협약(1949년) 및 추가의정서(1977년) 등이 있다.¹¹

한편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가운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이다. 완벽한 ‘인권의 추구’라는 이상적 접근은 물론 전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명백히 힘의 논리가 실제 작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역학구조 하에서 실천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권이 지향하는 이상과 현실사이에는 괴리(乖離)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만일 무분별하게 특정국가나 대상에 대해 인권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권이 가진 보편적 가치는 결국 훼손되고 만다. 또한 이 같은 선택은 국제사회가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위험성도 있다. 한마디로 보편인권의 본래적 가

1
2
3
4
5
6

¹¹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인권법』 (서울: 아카넷, 2000), p. 55.

치와 인권의 특수성, 이 둘의 조화 내지 조정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딜레마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권의 절대가치가 상대화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적인 인권의 보장이라는 대전제로 인해 현재 ‘인권진공상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 역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즉 구조적 한계로 지적 할 수 있다.¹²

현재 북한 주민은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상당부분 봉쇄되거나 제한되어 있다. 소위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이 포함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북한체제의 인권상황을 검증한다면, 실제 북한의 인권실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채택한 결의 22/13호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설치를 결의한 후 일 년여의 조사기간을 거쳐,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2014년 2월 7일 유엔 총회에 보고하였다.¹³ 북한체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는 불순한 ‘내정간섭’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인권은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체제를 초월하는 보편인류의 문제이며, 따라서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며 북한에 대한 현지

¹²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Martin Scheinin, “Access to Justice bef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Reflections on the Practice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ancesco Francioni (ed.), *Access to Justice as a Human Ri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147 이하를 참조.

¹³ 통일연구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p. 11.

방문조사가 실행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불완전한 내용으로 제출되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현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이 처한 어려운 현상을 타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북한이 일관해온 체제의 안정성 및 통치자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불순한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북한이 완벽한 인권을 실현하는 체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언제나 불필요한 과장과 선전을 조장하고, 결국 기만적 모순에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상기 보고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북한인권 문제와 직간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 가운데 중국의 입장이 주목되는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북한인권 실태조사과정에서 중국은 소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자국의 인권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북한에 대해 일정수준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인권을 이유로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공화국 주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입국하는 자들로 난민이 아닙니다. 이들의 불법입국은 중국 국내법 위반이며 중국은 이들을 처벌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 우하이 타오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별 인권사안을 포함한 인권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2013년 12월 30일자로 조사위원회 측에 보낸 서한에 명시하였듯이 중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조사위원회에

1

2

3

4

5

6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을 거부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제네바¹⁴

최근 들어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 특히 주권국가가 가진 개별적 주권을 초월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에 접근하고 있는 이른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 하에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동시에 책임져야 할, 이른바 전 인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인간안보는 냉전 종식 후 전통적 국가안보만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국제사회가 개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 확대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개발계획은 1994년 인간안보 개념을 처음 발표한 이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군사적 이슈가 주가 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 기근과 질병, 억압 등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안보개념의 확대를 시도해오고 있다.¹⁵

현재 북한은 과거와 달리 대외적으로 북한인권 이슈에 전에 없이 적극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수단 중 하나인 북한인권 문제는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회부가 추진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물론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 회부를 위한 기소추진여부는 유엔 결의과정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예견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징적 조치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¹⁴ 위의 책, p. 45.

¹⁵ 이승열, “인간안보론의 형성과 발전,” 서보혁 엮음,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서울: 아카넷, 2013), p. 19.

체제가 자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즉시 국제사회에 대응해 반론을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유엔회원국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문건으로 회람(回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가 초래한 미국 주도의 대북 고립정책하에서 또 다른 대북제재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인권이슈의 확대는 점진적 경제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그보다 중요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아직은 불안한 3대 세습 통치체제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호적 외부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노력중인 북한정권의 입장으로는 최고통치자가 책임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인권이슈가 체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과거와 달리 북한정권이 인권 문제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또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인권관련 일부사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을 적극 활용, 유럽연합과 같이 다자적 성격을 갖는 협의 당사자가 북한과 개별적 회담 등을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과 이를 감시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 타협 등을 통해 현안별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접근할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 같은 개별적 합의·해결이 누적되어 일반적 구속력(general binding force)이 확보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다.¹⁶

2. 북한의 시장화 개관

북한의 시장화는 주로 비공식적 경제, 다시 말해 과거 사회주의권과 유사한 2차 경제(second economy)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현상

¹⁶ 허만호,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 318.

을 지칭한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주의를 기반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경제지표의 호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민생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상당기간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암울한 경제현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체제 내부에 비공식적 시장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로 작용한 지 오래다. 북한경제 위기의 원인은 소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 라는 과거 북한의 경제정책이 과도하게 중공업에 치중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 그리고 외부로부터 효율적 생산재의 투입 없이 지나치게 빈약한 내부적 역량에 의존해 자립경제를 시도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북한이 단기간에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1970년대 말까지 한국보다 우월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1980년대 외채위기와 함께 전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생산성 감소는 폐쇄적 자급자족경제체제의 한계로 귀결되었고, 이어서 발생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교역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사회주의국가 간 교역에서 존재했던 우호가격(friendly price) 교역량의 축소 등 대외여건이 극도로 불리해짐에 따라 북한의 경제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게 된다.¹⁷ 그러나 북한은 주지하다시피 동구와 소련연방의 해체과정에서 다른 사회주의권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때 역으로 체제의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 체제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동시에 이 같은 고립은 역설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체제내부에 자생적 시장화 세력이 등장할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근간으로 인민의 삶을 통제해 온 북한체

¹⁷ 박현선,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p. 105.

제로서는 부분적일지라도 자본주의식 경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다가올 리 없었다. 인민들이 각종 비공식적 수입원을 창출하는 상황은 인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조직화된 의존관계’를 약화시키고, 당 지배(party leadership)의 정치적 기반을 침식시키는 요인임에 분명했다.¹⁸ 따라서 북한은 권력상층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장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마당’의 폐쇄를 시도 하곤 했다. 그러나 대 인민 생활정책이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여건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엄연한 현실은 시장의 발생을 무조건 억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다다르게 했고, 북한은 시장을 용인하되 대신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조금은 ‘어정쩡한’ 타협을 시도 하게 된다. 마침내 북한은 이 같은 이중적 상황하에서 자생적으로 난 무하는 시장경제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¹⁹

한편 고질적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경제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김정일 정권은 1997년 나진, 선봉지대에 시장경제 기능의 도입을 결정한 이후,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소유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일련의 제도정비 과정에서 북한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대외무역에 의한 경제자립의 한계를 지적하는가 하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하는 등 구조적 모순을 노출하곤 했다. 그리고 2002년에 이르러 시장경제 도입을 시도한 7·1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이 역시 선군경제 발전전략과 같은 계획경제의 안정화

¹⁸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 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 191.

¹⁹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공법 연구』, 제36권 3호 (한국공법학회, 2008), p. 171.

1
2
3
4
5
6

를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 원칙은 지키면서 ‘실리,’ 곧 이윤은 추구한다는 정책기조는 부실한 경제체질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7.1 조치는 단지 우리식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개량형’에 불과했으며, 체제의 본질적 변화와 관계없는 단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개혁조치였다. 소위 실리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개혁을 시도하지만, 형식적 틀은 온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며 동시에 실리를 추구한다는 북한체제 상층부의 이중전략으로서 이점은 북한체제가 가진 이데올로기의 긴장, 즉 내재적 한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²⁰ 결론적으로 선군경제 발전전략은 국방과 핵 유지에 경제의 일차역량을 집중하고, 민생경제는 자력갱생에 맡긴다는 모순된 정책으로 현 정부는 정권에서도 좀처럼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다.

경제문제의 타개가 당면과제이나 체제적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북한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지만, 가능한 민간기업의 출현과 같은 자본주의 색채를 배제하고자 노력하며, 대신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제활동을 장려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군(軍)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화벌이 기업이 국가의 하위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저마다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각개약진(各個躍進)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을 토대로 스스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북한의 이른바 ‘무역회사’는 권력기관의 자회사로서, 정치권력의 배려에 의해 독과점의 특혜와 초과이윤을 보장받고, 정권유지에 필요한 사업에 자금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한 기업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²¹

20.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2004), p. 122.

21. 박형중, “북한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5호 (한국정치

현재 북한은 광물과 같은 1차 자원을 중국 등 외부에 수출하고 러시아와 동구유럽, 중동에 노동인력을 파견하는 등 북한이 가진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고질적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 제로 촉발된 유엔의 경제제재지속, 그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투자제약 등 북한에 불리한 대외여건의 고착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경제지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여건은 특히 대외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음성적 거래의 증가와 같이 지극히 초기 자본주의형 경제활동의 발생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변수’가 초래되고 있다.

3. 북한경제와 북한 주민의 적응력

경제현상의 독특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adaptation)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만고의 경제법칙은 북한체제 내부, 경제적 역동성의 일차 추동(推動) 원인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이동의 자유제한과 같이 체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성은 경직된 체제에서만 가동되는 내부의 특수한 적응력, 즉 북한체제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고유한 방식’을 통해 일정부분 극복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²²라 할 수 있는 북한경제의 내재적 한계성은 외부의 우려와 달리 상당 수준 극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북한이 가진 체제 내부의 경직성은 새로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나름의 적응력을 보여주

학회, 2012), p. 214.

²² Hyung-Min, Joo, “Visualizing the Invisible Hands: The Shadow Economy in North Korea,” *Economy and Society*. Vol. 39, No. 1 (April 2010), p. 115.

1
2
3
4
5
6

고 있다. “위에서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라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담론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당국의 반(反)시장 정책과 현장단속을 회피하고 있다.²³

1990년대 계획경제가 마비되면서 북한의 ‘모든 주민’이 장마당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잡, 소매치기, 꽃제비 등 각종 사기행위가 장마당의 새로운 풍경으로 등장하며 과열과 혼란이 초래됐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주민들은 스스로 시장관행과 관습을 터득해 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맞저울’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뢰가 형성되고, 시장은 서서히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삶의 터전으로 변모해갔다.²⁴

북한 내부의 시장화는 음성적 형태가 점차 관습화·안정화되며, 북한만이 가진 고유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시에 판로가 확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발달은 생산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 생산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됐고, 이들 소상공 생산자들은 자신들만의 전문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자 상호 간 연계가 발생하고, 이것이 생산자 시장의 형성 및 발전으로 이어졌다. 시장의 발달은 이른바 상인층의 형성과 확대, 나아가 분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초기 도매와 소매의 병행형태가 시장의 발달에 따라 도소매상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전개된 후, 더욱 발전되어 특정 물품만을 취급하는 전문상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분화과정은 필수적으로 창고업, 운수업과 같은 ‘관련산업’의 등장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으로 까지 발전하

23.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p. 118.

24.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 p. 193.

게 된다.²⁵

한편 고도로 수직화 된 통치구조하에서 소수에 집중된 국가의 공권력(公權力)은 경제행위 과정에서 한계효용(限界效用)이 더욱 극대화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마치 자본주의 체제의 카르텔(carte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원칙적으로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 각종 인허가(認許可) 결정과정의 개입 등, 자본과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향후 북한체제 내부에 소위 북한식 ‘독점경제 권력’의 등장으로 실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북한의 권력기관은 공권력의 편의적 이용, 즉 단속을 통해 사적 부(富)를 축적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시장의 단속은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 단속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살찌우게 하는 방향으로 시장화의 구조를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다.²⁷

<구술면담자료1>

- 연구자: 뇌물을 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 C: 주택부에서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돈 좀 찢어주고 원래 살던 주인하고 가서 내 이름으로 바꿨지요. 그게 서류 다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지만, 그 돈을 내가 다 뽑았다 생각하지.
- 연구자: 2005년에 살던 집은 말로만 국가 소유였는데, 성동리

25.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pp. 224~225.

26.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홍민은 합법과 비법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북한의 경제주체를 회색지대로 설명하고 있다. 홍민,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위상학적 이해의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12), p. 80.

27.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 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pp. 99~100.

에서 회령시로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소련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바꾸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사실상 집을 바꾸는 것처럼...

- C: 나는 내가 원래 살던 집은 누구한테 팔지를 않고 판다 하면 또 소리가 나서 그냥 뭐라 해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고 사는게 먼저 주택부에 다 담배라도 찢어주고 아 이걸 이름을 조금 바꾸지요. 거기에도 또 돈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유화(privatization)는 소유제도에 있어서 사적소유권의 부활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여 사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 자본주의화라고도 할 수 있다. 소유제도의 변화는 사적소유권의 확대와 함께 사회적 공동소유권의 개념을 완화시키며 소유제도의 다양화, 사유재산의 인정, 사회적 경제활동의 허용, 농업 부문에서 개인책임생산제 도입 등을 그 결과의 예로 들 수 있다.²⁸

<구술면담자료2>

-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소토지가 개인의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의 땅이라 생각하세요?
- B: 국가 땅이죠. 내가 임시로 가꾸어 먹는 거지요. 북한에 어디 내 땅이라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현재 사유재산권 내지 사유화와 관련, 북한이 가진 근본적 딜레마는 사적소유에 대한 인정여부이다. 만약 일정부분 사적소유를 인정한다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이를 인정할 것인지,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사적권리의 존재여부 및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실재한다고 볼 수 있

²⁸ 김일기,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 개방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6), p. 102.

다. 실제 북한에도 개인의 권리규정, 개인 간 권리 다툼, 즉 사적권리를 조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민법(民法)이 존재한다. 민법의 존재여부는 북한체제에서 사적소유에 대한 태도를 기능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準據)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민법에서 발견되는 특이점은 북한의 민법은 권리당사자로서 개인뿐 아니라 국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⁹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소유를 우선시하고, 사적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향후 북한체제 내부와 공동체의식의 내적 변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구술면담자료3>

- 연구자: 선생님, 협동농장과 소토지를 비교한다면,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협동농장이 30%라면 소토지는 70% 이럴까요? 아니면 실제 어느 정도일까요?
- B: 소토지하고 협동농장 면적이요? 아마 소토지 면적이 더 많을 거예요.
- 연구자: 그러니까 100%라면, 5:5인지, 7:3인지, 6:4인지?
- B: 그저 한 6:4 정도….
- 연구자: 소토지가 60%이면 소토지가 더 많은 건가요? 그렇다면 협동농장하고, 소토지중 어느 쪽이 더 수확이 많이 나오요?
- B: 소토지가 더 많지요. 당연히
- 연구자: 구체적으로 몇 배정도?
- B: 몇 배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사람이 소토지는 내 땅이니까 국가땅보다도 더 힘을 넣고, 농장에 비료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넣는 한이 있더라도 다 그렇지요. **개인이 살아야하니 국가에서 내게 준게 뭐냐 내 새끼 내가 살자는데, 소토지에다가 더 힘을 넣는거지요.** 국가가 체면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마다 보안원들이 있잖아요. 안전부 여기로 말하면 파출소 이런데 안 오면 또 찾아다니면서….
- 연구자: 농장 받을 무시하고, 소토지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

²⁹ 양재모, “북한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법률행위,” 『부동산법학』, 제12권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지 않나요?

- C: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죠. 농장원들은 목에 매였죠. 그렇지 만 협동농장일은 대충하고 자기 소토지 일에 전념하죠. 거의 억압적이죠. 농장 일을 해봤자 분배를 거의 안주는데... 그래도 나가야지 안 나가면 그냥 찾고 다니고, 피할 수가 없죠. 농장원들도 단련대 보내요.

차츰 본격화되고 있는 시장화가 초래하는 북한 내 소득격차의 불평 등은 체제 내부에 과거와는 다른 사회현상, 구체적으로 ‘빈부격차’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위 ‘돈주’로 상징되는 신흥자본계급과 돈주에 기생하는 ‘테꼬(중간상인)’의 존재는 다분히 북한 상업자본가의 맹아(萌芽)로 성장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³⁰ 실제 점진적으로 북한사회에서 시장화는 경제력에 기반한 계층의 ‘재분화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 과거 출신성분과 당성이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던 시대로부터 경제력의 정도가 체제내부의 사회적 지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계층을 결정하는, 영향력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향후 북한체제 내부에 시장화가 지속적인 탄력을 받게 된다면, 경제수단이 사상을 대체하고, 이마저 압도하는 방향으로 가치의 전도(顛倒)가 발생할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³¹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북한 주민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다. 인민경제인들은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북한식 시장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다. 결국 북한인민에게서

30. 이종겸, “북한 신흥 상업자본가의 출현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4권 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8), p. 161.

31. 시장화로 인한 계층분화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사연구소, 2013)을 참조.

발견되는 새로운 경제인식(economic recognition)은 경제활동의 결과로부터 파생된 ‘경제적 풍요’가 주는 편리함의 직간접적 경험 등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사적소유에 집착하는 조건반사(conditioned reflex)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서서히 사적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인민은 개인적 권리의 발견과 더불어 개인의 권리의 합(合)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요구로 증폭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체제의 시장화가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곧이어 여론의 증폭으로 이어진 후 궁극적으로 시민운동과 같이 공론화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과거 동구의 개혁은 정권의 공식적 담론과 별도로 존재했던 일반 민중들의 여론이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수행했으나, 현재 북한에서 다양한 층위의 시장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정치체제에 대한 저항담론으로 전환되는 뚜렷한 전조는 아직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4. 시장화와 인권(권리)의식의 변화

우리가 가진 하나의 가설(hypothesis)은 북한체제의 시장화가 직·간접적 방식으로 북한인민의 의식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체제 내부의 시장화 진전, 즉 경제주체로서 개인의 경제활동 증가는 인민들에게 다양한 층위(層位)에서 사적소유(private property)에 대한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구술면담자료4>

- 연구자: 북한에서 현재 소토지가 많아 굶어죽거나 하는 사람은 없나요?

1
2
3
4
5
6

- A: 96년도 이전에는 딱 배급에만 매달려 사니까 매우 힘들었지요. **머리가 트이고 하니까 썩 나아졌지요.** 이게 밭에서 나오는 게 석 달, 네 달, 여섯 달 내가 땅을 많이 가꾸면 적게 가꾼 사람은 두 달, 세 달, 넉 달 채우기가 힘들고 근데 국가가 대주는 것도 석 달, 많아야 넉 달, 나머지는 개인이 해야 하는데 진짜 생활이 힘들지요. 아무리 땅을 뒤지고 해도 식량이 석 달, 넉 달치는 비지요.

위 구술면담자료에서 “머리가 트인다”는 표현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 주민들이 경제와 경제활동에 반응하는 태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사적소유가 철저히 금기시되었던 때와 달리, 공공연한 개인의 경제활동은 이른바 ‘인민경제인’이라 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경제주체들에게 소유(possesion)에 적극 대응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현재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행위의 주체이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일반대중에게 돈으로 상징화 되고 있는 ‘경제’와 ‘경제력(經濟力)’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귀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기업이나 광산 등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먹고살기 위해 본업 외에 실제 다양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구술면담자료5>

- A: 일단 광산에 출근을 하고 거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송이 따러 가기도 하고 작업이 없으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거지요.
- 연구자: 그 지휘관이 “너 송이를 따라.” 하면 어디에 바치게 되나요? 개인이 가져가는 건가요?
- A: 그 송이는 경제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 조직에서 한 거예요. 기업소 당에서 딱 통제해요. 뒤 뒷 기관에 시장이면 시장에 낸다고 하는데 그게 뭐 내겠어요.
- 연구자: 지휘관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해서 송이를 따서 위에다 내고 그럼 예를 들어서 2kg를 땀는데 1kg는 내가 갖고 1kg만 내도 돼요?

- A: 그럴 수도 있지요. 하루에 송이를 2kg를 땀다. 그러면 한 30kg이면 내가 먹고 공장에다 내는 것은 한 15kg 정도예요.
- 연구자: 그렇다면 채집한 송이 중 50%는 자기가 가져가는 건가요?
- A: 그래야지요. 이 송이라는 게 산을 타야 하니까 힘들지요. 이렇게 하면 송이꾼들이 없어요. 10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그것도 환한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밤 시간에 가는 거거든요. 지표면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 있거든요.
- 연구자: 그럼 예를 들어서 50%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돈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송이로 가져가는 건가요?
- A: 송이로 가져가지요. 옛날에는 송이를 팔지를 못하게 했어요. 송이 먹는 것은 역적이라고 했어요. 당적으로 수매기관이 있었어요. 수매기관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점점 더 쪼들리니까 그 돈덩이를 보면서 국가에 내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굶으면서 그러니까 자연히 개인 거래가 되면서 송이를 점유하기가 힘들었지요.
- 연구자: 소토지 생산물은 어디에서 판매하나요? 시장에서 판매하나요?
- B: 회령장에다 팔아야 해요. 유선보다도 회령에 내다 팔아야 2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라진으로 나가서 회령에 가져다가 팔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힘들면 유선에다가 팔고….
- 연구자: 혹시 이웃사람들이 소토지를 팔기도 혹시 그런 경우를 들어 보신적은 있나요?
- B: 팔지요. 예 팔아요.
- 연구자: 혹시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사례 좀, 누구누구네 소토지를 팔았는데, 얼마 주고 팔았다. 그런 소문이라든가?
- B: 그러니까 그 집이 우리 아래 동네인데,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중국으로 달아나니까 엄마가 농사짓기 바쁘니까 옆집에다가 그 집 밭은 우리 집보다 조금 못한 조금 괜찮은 한 700평짜리 강냉이 10kg 주라하고 700평에 강냉이를 심으면 더 나왔지요. 엄마도 조금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 연구자: 혹시 순시원이나 산림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토지 하나? 제지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나요?
- B: 대개 와서는 말은 하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불탄 산이니까 괜찮은데, 혹시 생나무 벤 거 무조건 말을 하지.

1

2

3

4

5

6

북한이 센 것 같으면서도 또 술이랑 이런 거 해주면 봐주죠. 또 그렇게 해서 살짝 넘기고 그런 거지요.

- 연구자: 순시원이 와서 그런 적 있으세요?
- B: 저희는 순시원이 저희 시아버지 친구여서 그냥 눈감아주고….
- 연구자: 그럼, 요즘에는 소토지에 대해서 세금같은 것을 낸다고 하던데, 국가에 그런 것을 낸 적이 있으요?
- B: 제가 있을 때는 안냈어요. 2005년까지는 안냈어요. 땅세를 내야한다. 불탄지가 몇 년이 됐고, 너희도 농사를 몇 년을 해 먹었기 때문에 땅세를 낸다 말은 있었어요. 제가 2004년도 초반에는 그래서 농사가 해마다 안됐는데, 국가에서 받아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나? **배급도 안주면서 농사까지 받아먹으면 어떻게 살겠나? 의견이 분분하다가 시시해지고 말은 것 같아요.** 저는 낸 생각은 안나요.

구체적으로 시장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 가운데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시장화로 인해 재발견 내지 강화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권리(인권)의식의 변화 가능성이다. 그런데 권리의식의 ‘재발견’이라는 테제가 곧 현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 권리의식으로부터 면역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체제가 가진 체제속성장 상당기간 북한내부에 사적소유, 즉 재산권(財産權)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비대칭적 방식으로 북한 주민의 자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시장화를 통해 북한체제 내부에 새로운 권리(인권)의식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 등의 증언 등에 따르면 장마당에서 하급관리들과 시장의 노점들 사이에 빈번하게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과 국가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인 북한의 체제특성장 비록 사소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개별 주민의 공권력에 대한 반발과 양자사이 공공연한 충돌은 북한체제 내부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에도 당국에 사적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우리의 민원과 유사한 ‘신소청원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신소제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기대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또 개인적 불만이 표출되어 소문으로 회자되곤 하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시민적 저항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사적이익에 대응하는 일반 주민들의 태도는 과거와 대응양상이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안전원이 골목장마당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집행하기 위해 상인들을 단속하게 되면, “안전원 동지, 돈 달라요. (돈 주면) 매일 우리 (시장에) 안 나가요. 개고생하면서 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 비사회주의라면, 대체 어떤 짓이 사회주의란 말이야?”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다. 안전원이 단속과정에서 노인을 폭행하기라도 하면, “너는 이 새끼, 어미도 없냐? 너는 무슨 밥을 처먹기에 노인을 팔시하고, 여기 와서 우리 장사질 하는 거 이렇게 하냐?” 하고 항의 한다. 이러한 항의에서 사용되는 어휘들 역시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예컨대, 하급간부에게 하는 “너는 무슨 밥 처먹기에”라는 말은 “너는 따로 배급을 받아먹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국가가 배급을 주지 않는데 대한 항의 표시이자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인 것이다.³² 이와 같은 갈등 양상은 당과 최고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과는 별개로 개인의 권리, 다시 말해 개인차원의 사적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사적권리에 대한 자기방어기제로서 권리(인권)의식이 공고한 체제내부의 구조적 권력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³² 조정아, “일상의 저항과 북한체제의 변화,”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3), p. 74.

<구술면담자료6>

- 연구자: 만약 국가에서 경작하시는 소토지를 압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B: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반란이라도 일어나겠지요. 큰일 나지요. 정말 큰일 나지요. 그때는 시위라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소토지를 마구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급을 못 주니까 그렇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기까지 너희가 해 먹어라 조금 봐 주겠지요.

한편 북한의 시장화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적용과 순수한 재화의 교환뿐 아니라 새로운 담론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북한사회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등 과거와 현재 통치자의 담론이 반복되는 ‘잉여담론체제’이다. 그런데 언어의 ‘과잉’ 혹은 ‘포화’ 상태는 언어의 창조적 해석이 개입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이 같은 언어과잉 사회에서는 불행하게도 언어가 가진 ‘은유의 미학’이 발현되기 어렵다. 비틀어 말하기 즉 ‘말의 횡단성’이 전적으로 거부된 언어공동체는 결과적으로 획일화된 사유와 행동을 강요하게 된다. 언어의 자율성, 창조성, 임의성이 가동되지 못하는 사회는 시장(市場)과 같은 다층위적 ‘수다’가 발붙이지 못하는 곳이다. 말 그대로 언어의 다양함이 무계획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장의 담론’은 언어의 확장성과 다양성이 드러나는 대표공간이다. 특정사회의 하위·고급문화가 교차하며 공감각적 표현으로 재현되는 ‘시장의 담론’은 개별사회의 역동성을 확인시키고, 인간이 가진 언어욕망을 배설하는 카타르시스의 장이기도 하다.³³

³³ 김신, 『김일성 신드롬: 북한체제 지속의 원인분석』 (고양: 세인커뮤니케이션, 2014), p. 104.

Ⅲ. 결론

북한체제에서 인권은 의사소통의 장(場)에서 배제된 사어(死語)와 유사하다. 분명 존재하지만, 인권이라는 현상이 기표(signifier)로 포섭되지 못했고, 설사 포섭됐다 해도 그 같은 기표가 기의(signified)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일 뿐, 인권이라는 거대담론은 결국 주체, 곧 개별 인민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오늘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느냐? 당국의 단속으로부터 벗어나 얼마를 손에 움켜질 수 있느냐가 북한의 주민에게는 진정한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체제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위 ‘인권문제’는 정치적 해법과 함께 비대칭적 방식 및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실마리는 통치의 토대로서 기능하는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 즉 정치사상 쪽 보다는 이데올로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경제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초코파이’라는 과자 하나가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한 정부나 학계의 북한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초코파이는 원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닌, 생산력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된 간식, 즉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점차 북한체제 내부에 초코파이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간식거리였던 초코파이의 역할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잉여물인 초코파이가 하나둘 장마당에 풀리고 난 뒤, 우선 초코파이에 쓰여진 정(情)이라는 한자(漢字)의 이미지는 중국제라는 선입견을 주

1
2
3
4
5
6

있지만, 곧 초코파이라는 한글표기는 북한인민에게 “미제과자인데 조선어로 쓰여져 있네!”라는 호기심을 유발시켰고, 여기에 더해 친절한 제품설명은 그들이 접해보지 못한 생경한 경험으로 다가가게 된다. 마침내 초코파이가 남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체제 내부에 공공연히 유통되기 시작하며, 북한 내부에 초코파이가 가지는 의미와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초코파이는 맛있다” “초코파이는 남조선 과자다” “초코파이를 만들고 공짜로 주는 남조선의 경제력이 부럽다.” 결국 세련된 과자, 초코파이가 남조선 자본주의의 상징이 된 것이다. 나아가 초코파이를 둘러싼 인민의 질문은 더욱 확대되어, 우리는 왜 이런 걸 만들지 못할까?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선군체제에서 인민의 낙후된 ‘먹거리’ 생산수준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 즉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도록 만들었고, 북한 당국은 결국 초코파이 판매를 금지시킨다.

향후 북한의 시장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현상과 내용으로 북한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 북한경제의 분석방법론으로 보다 세밀한 미시적 통계와 거시적 분석이 북한경제, 나아가 북한체제의 전개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유효한 판단근거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통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경제가 가진 또 하나의 속성, 경제의 비예측성(unpredictability)이다. 북한의 시장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경제적 파동(波動), 즉 자체의 역동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 같은 역동성은 북한이라는 소위 ‘특수한 체제’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적응력’으로 재현되고 있다. 나아가 시장화는 단순히 경제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북한 주민의 생활과 정신영역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소유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해 권리의식의 발현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서서히 전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 신. 『김일성 신드롬: 북한체제 지속의 원인분석』. 고양: 세인커뮤니케이션, 2014.
- 박현선.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인권법』. 서울: 아카넷, 2000.
- 장은주. 『인권의 철학: 자유주의를 넘어, 동서양이분법을 넘어』.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10.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 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2004.
-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통일연구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허만호.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서울: 명인문화사, 2008.

2. 논문

-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사연구소), 2013.
- 김 신. “북한체제 내재적 복종현상에 대한 종교학적 고찰.” 한국학중앙원

1

2

3

4

5

6

- 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일기.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 개방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6.
- 박영자. “북한의 시장화와 노동일상.”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 박형중. “북한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5호 (한국정치학회), 2012.
- 양재모. “북한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법률행위.” 『부동산법학』, 제12권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 _____.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15권 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_____. “2013년 북한의 시장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공법연구』. 제36권 3호 (한국공법학회), 2008.
- 이종겸. “북한 신흥 상업자본가의 출현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4권 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8.
- 이승열. “인간안보론의 형성과 발전.” 서보혁 엮음.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서울: 아카넷, 2013.
- 정은이.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 평화』. 제1권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p. 165.
- _____.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
- _____.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사장

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9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조정아. “일상의 저항과 북한체제의 변화.”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3.

진정미. “중국과 북한에서 시장: 자본메카니즘의 변용과 지속.” 『한중사회과학연구』. 제30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홍 민. “북한의 국기와 시장 관계: 위상학적 이해의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12.

Joo, Hyung-Min. “Visualizing the Invisible Hands: The Shadow Economy in North Korea.” *Economy and Society*. Vol. 39, No. 1, April 2010.

Kim, Byung-Yeon and Roland Gerard. “Scenarios for a Transition to a Prosperous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Economy Journal*. Vol. 26, No. 3, August 2012.

Liem, Paul. “Peace as a North Korean Human Right.” *Critical Asian Studies*. Vol. 46, No. 1, February 2014.

Scheinin, Martin. “Access to Justice bef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Reflections on the Practice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ancesco Francioni (ed.). *Access to Justice as a Human Ri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

2

3

4

5

6

〈면담조사 탈북자 인적사항〉

면담자	이름	성별	출생년도	출신지역	탈북년도	입국년도
면담자1	김○○	남	1964	회령 유선	2009	2010
면담자2	박○○	여	1966	회령	2008	2009
면담자3	유○○	여	1968	회령	2007	2008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근, 양갑웅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웅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통일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기 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e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장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장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2014)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편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1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비매품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47,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일자	
		입금자 (가입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기입)	
소속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E-Mail
	핸드폰		FAX
Mailing Service	수신 () 수신거부 ()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p>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 (인)</p>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시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E-Mail: books@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통일연구원

 9 3340
9 788984 797789
ISBN 978-89-8479-778-9